

I. 訂正報道請求事例

姓氏만 보도해도 독자가 識別可能하면 被害者の 訂正報道文을掲載해야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9. 3.자 판결(82카18633)

事實概要

報道記事 중 姓씨만 지칭하고 姓名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편견없는 讀者나 그 記事에 관심이 있는 讀者라면 별 어려움없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을 경우 言論社는 訂正報道를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는 判決이 선고되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1982년 9월 3일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단법인 京鄕新聞社(週刊京鄕)를 상대로 한 訂正報道請求申請事件에 관해 피신청인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 중 「...광주시 북구 건축과 모씨...」라는 내용은 비록 그 성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편견없는 상당수의 讀者나 또는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별 어려움 없이 임모씨가 신청인임을 알 수 있도록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週刊京鄕에 신청인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週刊京鄕(1982. 4. 4자 발행, 제686호)에 『섰다판서 결재도장 찍고 여직원과 놀아난 실성 공무원』이란 제하기사로, 「...光州市 北구 건축과 모씨, 시청하수과 모씨, 동구청 모씨, 서구 건축과 모씨, 도로과 모씨, 고용원 모씨 등은 6개월 전부터 민원처리를 아예 뒷전으로 미룬 채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는 여관으로 직행해서 동료끼리 도박판을 벌이기에 정신이 팔렸던 공무원들, 그것만으로 모자랐던지 심지어는 부하 여직원을 여관으로 불러들여 탈선에정행각까지 일삼다가 민원인들의 진정으로 달미를 잡혔다...」는 내용의 記事가 보도되자 신청인 은 토요일 일과를 마치고 점심식사

를 하려다 이들 동료직원들을 만나 토요일 오후(1981. 10. 24. 17:00)부터 다음날 아침(09:00)까지 식사내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6개월간씩이나 여관에서 결재를 하면서 화투놀이를 상습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부하 여직원과의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週刊京鄕이 허위의 사실을 과장 보도하여 신청인의 名譽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週刊京鄕은 「광주시청 자체조사결과 전 광주 시 북구청 건축과장 씨는 여관방에서 민원서류를 결재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여직원과의 탈선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는 정정보도 청구신청서를 1982년 5월 18일에 法院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週刊京鄕)은 「신청인을 포함한 8명이 도박사건으로 입건되어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가 계속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징계 관계문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도박판을 벌인 공무원 중에는 부하 여직원과의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조사결과 나타났고, 또한 기사내용이 ‘...이들 노름 공무원의 뒀에 빠져 이들 중 몇몇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온 여직원만도.....’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바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도한 기사는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청인의 訂正報道請求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82년 9월 3일에 피신청인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 중 「...광주시 북구 건축과 코씨...」라는 내용은 비록 그 성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편견없는 상당수의 讀者나 또는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별 어려움 없이 코씨가 신청인임을 알 수 있도록 보여지며 또한,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거나 부하 여직원과의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言論基本法 시행 이후 법원이 내린 訂正報道請求申請事件에 관한 첫번째 판결인데, 신청인 씨는 週刊京鄕(1982. 4. 4자 발행, 제686호)에 『섰다판서 결재도장 찍고 여직원과 놀아난 실성 공무원』이란 제하기사가 보도되자 1982년 4월 28일에 사단법인 京鄕新聞社(週刊京鄕)를 상대로 言論仲裁委員會에 訂正報道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82년 5월 4일에 그 중재가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 4호 86면 참조).

씨는 중재가 불성립되자 1982년 5월 18일에 법원에 訂正報道請求訴訟을 제기하여 1982년 9월 3일에 1심에서 勝訴判決을 받았다.

判 決 文

사 건 : 82카18633 정정보도

신 청 인 : 임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태 선

피신청인 : 사단법인 京鄕新聞社 발행인 겸 편집인 정 구 호

서울 중구 정동 2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순 우

변론종결 : 1982. 8. 2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경향」의 앞 표지 우측 중앙 부분에 3호활자로 「정정보도문 게재」라고 세로로 표시하고, 위 주간경향의 23면 전면(全面)에 걸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라는 제목은 상단 중앙부분에 가로로 1호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중 1항은 세로로 5호활자로, 2항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세로로 4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1982. 4. 4.자 제686호 주간경향의 앞 표지 우측 중앙부분에 『여직원과 불륜극, 실성 공무원』이라는 제목이 게재되고 위 제목에 관한 기사로서 위 주간경향의 23면 및 24면에 걸쳐서 광주시 복구 건축과 근무 공무원 모씨를 비롯한 6명의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출근부에 도장만 찍어 놓고 광주시 소재의 여관방에 틀어박혀 도박만을 일삼고 있었으며, 민원서류는 도박 중 잠깐 틈이 난 사이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서류를 읽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도장을 찍어 결재를 하였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부하 여직원들을 여관으로 불러들여 탈선 애정행각까지 벌이다가, 이들의 불륜관계를 보다 못한 복구청 여직원 일동이 위 비행을 상급기관에 진정

함으로써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직위해제처분 사유서 및 설명서) 및 갑 제5호증의 1, 2(징계처분 사유서 및 설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1968. 10. 16. 전남 순천시청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1980. 12. 22에는 광주시 북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됨으로 인하여 1982. 3. 19.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1982. 3. 26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이 사건기사의 가운데에 「광주시 북구 건축과 근무 공무원 모씨」라고 지칭된 사람이 비록 그 성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가리키는 것임은 편견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또는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를 별 어려움없이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인 주간경향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는 기사내용이나 신청인을 비롯하여 도박을 한 여러 공무원들이 부하 여직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견 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기록검증결과 부분(아래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신청인이 1981. 10. 24(토) 17: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광주시 북구 중흥동 소재 용봉장 여관에서 화투놀이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신청인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거나 부하 여직원과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9. 3.

재판장	판사	노	승	두
	판사	양	삼	승
	판사	이	종	찬

정정보도문

1. 지난 1982. 4. 4자 주간경향 제23면 및 제24면에 『섰다판서 결재도장 찍고 여직원과 놀아난 실성 공무원』이라는 제목하에,

가. 광주시 북구 건축과 근무 공무원 모씨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출근부에 도장만 찍어 놓고는 여관으로 직행해서 도박판을 벌였다.

나. 민원서류는 도박 중 잠깐 틈이 난 사이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서류를 읽는 동안 마는 동안 하면서 도장을 찍어 결재를 하였다.

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부하 여직원들을 여관으로 불러들여 탈선 애정행각까지 벌이다가 민원인들의 진정으로 털미가 잡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표되었었다.

2. 그러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즉 광주시의 조사결과 광주시 북구청 과장이었던 은,

가. 1981. 10. 24.(토)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동료직원들과 화투놀이를 했을 뿐, 출근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여관에서 도박을 한 일이 없고,

나. 여관방에서 도박을 하면서 민원서류를 결재한 일도 없으며,

다. 부하여직원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일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광주시장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정정보도 신청인

□

申請人の 見解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다른 學者의 見解를 記事化한다고 하여
著作權을 侵害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10. 21.자 판결(81카36289)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1982년 10월 21일 신청인

씨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사부분이 신청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事實的 主張의 기사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東亞日報 1981년 9월 2일자 3면에 게재된 『피곤한 독도시비』 제하의 기사 중, ‘한국이 사실상 일본제국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간 때’를 삭제하고, 대신 ‘대한제국이 1900년(광무 4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제2조에 죽도, 석도의 관할을 선포한 후 평화적인 주권을 침해하기 시작한 때’로 訂正하고, 또한, ‘동경 한국연구원장 씨는 19세기초 일본에서 만든 변계 지도들이 한결같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음’ 다음에 ‘이는 일찌기 씨가 본보 1957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 까지 연재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지도들은 이미 씨가 발견하였던 것인데, 금반 또다시 최 씨가 일본에서 이러한 지도들’의 문구를 삽입한 기사를 보도하라는 내용의 정정보도청구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사부분이 신청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의 記事라고 볼 수가 없다. ‘신청인이 著作權을 侵害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신청인이 침해당한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다른 학자의 견해를 기사화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신청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토문제연구실 발족 세미나에서 밝힌 최 씨의 독도에 관한 자료 중 일부를 東亞日報(1981년 9월 2일자 3면 『피곤한 독도시비』)가 인용보도하자 신청인 씨는 東亞日報가 『피곤한 독도시비』 제하의 기사 중, 「일본측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1905년 1월 각의의 시마네현 고시가 모두 손아귀에 들어간 때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일본의 독도 트집은 큰 덩어리의 식민잔재임에 틀림없다」라고 報道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본 각의의 결정을 사실인 양 기사화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합리화시키는 표현일 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독립국 형태를 고의적으로 격하시켜 대한제국의 주권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이를 사실대로 訂正해야 하며, 또한, 이 기사 중 「동경한국연구원장 최 씨는 19세기초 일본에서 만든 변계지도들이 한결같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음을 밝혀내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일이 있다」라고 報道하고 있는 바 이같은 사실은 이미 신청인이 탐구하여 밝힌 바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최 씨가 밝혀 낸 것처럼 표현하여 결국 이 기사내용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

라고 주장하고, 1981년 9월 3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문제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기사는 국내 사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인용보도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1981년 9월 8일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1년 9월 15일 주식회사 東亞日報社 발행인 金相璵씨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1982년 10월 21일 1審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判 決 文

사 건 : 81카36289 정정보도

신 청 인 : 황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발행인 김 상 기

변론종결 : 1982. 10. 7.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1981. 9. 2(수요일)에 발행한 동아일보 3면에 게재된 『피곤한 독도시비』라는 제호하의 기사 중 「일본 각의의 독도취득 결정」 부분을 취소하고 동 기사 중 「한국이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간 때」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대한제국이 1900년(광무 4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2조에 죽도, 석도의 관할을 선포한 후 평화적인 주권을 침해하기 시작한 때」로 정정하고 동 기사 중 「동경한국연구원장 최 씨는 19세기초 일본에서 만든 변계지도들이 한결같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음」 부분 다음에 「은 일찌기 황 씨가 본보 1957년 2월 28일부터 동년 3월5일까지 연재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지도들은 이미 황 씨가 발견하였던 것인데 금반 또 다시 최 씨가 일본에서 이러한 지도들」의 문구를 삽입한 기사를 보도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함.

이 유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건 정정보도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정정보도청

구사건 심판규칙 제2조 소정의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구하는 시기 및 회수와 게재부위, 이의대상인 보도문과 당해 중재사건에 관한 중재신청기각 또는 중재불성립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1호증(중재불성립증명신청서), 갑3호증(결정),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동아일보 1981. 9. 2.자 신문기사임이 인정되는 갑2호증(신문)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본건 정정보도청구를 하면서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 이의의 대상이 된 보도문, 당해 중재사건에 관한 중재 기각결정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한편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시기 횟수 및 게재부위는 당사자의 주장과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경중, 사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심판청구가 정정보도청구사건 심판규칙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신청인의 본건 신청의 요지는 첫째, 피신청인이 1981. 9. 2(수요일) 발행한 일간지 동아일보 3면에 게재한 『피곤한 독도시비』라는 제호하의 기사 중 「...일본측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1905년 1월 일 각의의 독도 취득 결정...」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일본각의가 1905년 1월경 독도의 영토취득을 위한 어떠한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본 각의의 위 결정을 사실인 양 기사화함으로써 허구의 사실을 보도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합리화시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둘째, 피신청인은 동 기사 중 위 1905년 1월의 일본 각의 결정과 「같은 해 2월의 <시마네>(島根)현 고시가 모두 한국이 사실상 일본 제국 주위의 손아귀에 들어간 때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는 바, 비록 1904. 2. 23. 한일의정서가 이루어지고 동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1910. 8. 29. 일본에 의하여 병탄될 때까지 대한제국은 엄연히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내용은 대한제국의 독립국 형태를 고의적으로 격하시켜 대한제국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셋째, 피신청인은 동 기사 중 「...동경 한국문제연구원장 최 씨는 19세기 초 일본에서 만든 변계지도들이 한결같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음을 밝혀내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일이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는 바, 위 최 씨의 위 업적은 이미 신청인 자신이 탐구하여 밝힌 바 있는 사실인데도 그와 같은 업적

이 성취되어 나온 경위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것이 위 최 씨의 독창적인 발견, 업적인 양 표현함으로써 결국 동 기사내용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인 바,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기사의 3부분 중 어느 부분도 신청인의 구체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의 기사라고 볼 수가 없다(신청인이 그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신청인이 침해당한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다른 학자의 견해를 기사화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신청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1981. 9. 2자 동아일보 제3면에 게재된 위 기사의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신청인의 본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1.

□

재판장 판사 지 홍 원
판사 양 삼 승
판사 이 종 찬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이며,
訂正報道請求內容이 虛偽임이 명백하면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1983. 2. 9.자 판결(82카768)

事實概要

보도내용이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이며, 訂正報道請求 內容이 虛偽임이 명백할 때에

는 신청인은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判決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983년 2월 9일 신청인 金 씨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江原日報社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신청사건에 대해, 江原日報의 보도는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申請人의 정정보도청구 내용이 虛僞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학교재단측의 말만 듣고 報道한 일방적인 허위기사라고 주장하는 江原日報 1982년 11월 6일자 7면에 게재된 『여중 校長 수사』, 『용지, 獎學金 등 公金橫領 혐의』 제하의 기사는 그 기사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新聞社側의 의견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는 신청인의 혐의사실을 간접적으로 보도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건의 피해자등 관계인들의 진술, 기타 수사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임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기사가 학교 재단측의 말만 듣고 보도된 일방적인 기사로 虛僞報道임이 교육위원회나 검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거나, 학교법인 裕鳳學院이 각종 등록금에서 유용, 횡령한 것이 金 1억4천만원에 이른 것이 확인된 일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 내용은 虛僞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 교사들과의 대출보증관계와 3천여만원 횡령사건 등에 대하여는 그 혐의 내용이 밝혀졌다는 기사가 江原日報 1982년 12월 11일자에 충분히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인은 「江原日報 1982년 11월 6일자 7면에 게재된 『여중 校長 수사』, 『용지, 獎學金 등 公金橫領 혐의』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보도로서, 위 기사는 학교재단측의 말만 듣고 보도한 일방적인 기사임이 교육위원회 감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각종 공금 3천여만원을 횡령 유용한 것은 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장 김 가 교장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몰래 임의 유용 또는 횡령한 것이다. 학교재단이 각종 등록금에서 유용한 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이 사실은 교육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되어 현재 춘천지검에 입건, 조사 중임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신청인 金 씨는 위 기사가 보도되자 1982년 11월 13일 피신청인 주식회

사 江原日報社를 상대로 言論仲裁委員會 강원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7호 94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江原日報의 보도는 허위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1982년 11월 26일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2년 12월 6일 주식회사 江原日報社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 1983년 2월 9일 1審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判 決 文

사 건 : 82카768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김

강원도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일보(江原日報)

발행인 강 표 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53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석 명

변론종결 : 1983. 1. 26.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강원일보의 제7면 중앙 상단부분의 5단기사로 제목은 활자의 크기를 특호활자로 하고 『정정보도문 게재』라고 새로운 표시를 하고 좌측에 특호활자로 『전 여중 교장 수사보도는 사실과 상이』라는 특호활자의 부제를 하고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내용 중 1항은 가로로 5호활자로, 2항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가로로 4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

이 유 : 신청인은 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2. 11. 6자 강원일보 7면의 기사란 중 중앙 상단부근에 주제를 『전 여중 교장 수사』(특호활자), 부제를 『용지, 장학금 등 공금횡령혐의』, 『춘천지검』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에 대하여 3호활자 5단기사로 「(전략) 춘천지검 수사과는 전 여중 교장

인 신청인이 지난 해 조모 교사등 7,8명의 교사들로부터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직접 돈을 빌린 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피해교사들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신청인이 학부모들이 거둬준 용지대와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도 잡고 수사 중이며 교원접대비조로 엉터리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축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략) 신청인 자신이 학교장으로서 문서소각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 데다, 3천여만원의 세출예산이 부당인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중략)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인 노 여인이 채무관계에 사문서를 위조 행사했으며, 학교 서무과 여직원들에게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잡혀 사문서 위조, 동 행사,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춘천지검에 송치됐었다. (후략)」라는 등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 단서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강원일보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게재가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일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청구를 함이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만을 거친 신청인의 이 사건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4항의 규정조항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월 이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한 후 그 게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문제된 기사공표 후 1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또 그 중재불성립 후 법정기간내인 14일 이내에 이 신청에 이르렀음이 명백하여 거기에 신청요건불비등 흠결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문제된 기사는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이고 신청

인이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제2호증의 1, 2, 소을제2호증의 5, 소을제2호증의 29(각 기록표지), 소을제2호증의 3(공소장), 소을제2호증의 4(구속영장), 소을제2호증의 8, 소을제2호증의 32(각 의견서), 소을제2호증의 9, 소을제2호증의 35(각 범죄인지보고), 소을제2호증의 10, 소을제2호증의 33(각 내사 지휘), 소을제2호증의 13, 소을제2호증의 16 내지 28(각 진술조서), 소을제3호증의 1, 2(징계처분결과보고 및 징계처분요구), 위 각 서류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소을제2호증의 11, 12, 34(각 진정서) 증인 한영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소을제1호증(신문)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사 내용의 진위와 그 수사과정 및 기사의 보도과정 등을 살펴보면,

1.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자체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여자중학교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갱지대금 협찬금 1,800,000원 중 224,400원을 스스로 횡령한 외에, 위 학교 서무과장인 신청외 김 가, 80학년도 이전분의 위 학교회계장부등을 소각하고, 위 학교가 보관 중인 학교돈 중 은행예치 구좌 16건 금 32,139,625원, 정기예금 9건 금 38,531,920원, 교과서대금 4,012,920원 등을 일시 유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나머지 위 학교경영자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신청인의 징계처분(징계요구량 파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위 학교법인은 교장 징계위원회를 거쳐 1982. 9. 29. 위 학원 이사장 명의로 신청인을 교장직에서 파면 처분한 사실,

2. 위 학교 교사인 신청외 , 학부모인 신청외 석 외 2인 및 서무과 직원인 신청외 박 , 김 등은 (1)신청인이 교장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조 등 7인의 부하 교사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어 신청인의 보증을 서게 하여 은행 및 농협 등으로부터 많게는 금 3,000,000원으로부터 적게는 금 570,000원을 차용한 뒤 이를 제 날짜에 갚지 않아 피해를 주고 있다. (2)신청인이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찬조받은 갱지대금, 학교체육기금 및 체육장학금 등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3)신청인과 그 부인인 신청외 노 은 합세하여 위 박 , 김 에게 강제로 인수보관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와 진정서들

을 각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강원도 경찰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기사가 공표되기 직전 무렵인 1982. 11. 4.부터 같은 달 6일 사이에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진정인, 피해자, 기타 관계인 등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 바, 그 진정인이나 기타 참고인들은 모두 위 진정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는 신청인이 이미 교장직에서 파면된 데다 그 교사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사회의 이목을 받게 되자 그 사회부 기자 이 으로 하여금 위 검찰청의 수사관, 강원도 교육위원회 담당공무원 등의 인터뷰 결과와 위 수사기록 등의 취재원으로부터의 취재등을 종합하여 그 수사 제1보로서 위 의 기사를 작성케 하고 이를 앞서본 바와 같이 1982. 11. 6.자 석간 신문에 게재하게 된 것인 사실,

3. 그 후 신청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어 1982. 12. 10.에는 신청인이 위 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인 1981. 5. 16.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전후 15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기부받은 학생들의 학력제고용 갱지대금 1,239,000원, 1982.4. 23.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역시 외부인사로부터 기부받은 학교 체육장학기금 금 650,000원, 1981. 6. 4.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에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보관금 중에서 금 1,280,000원, 같은 해 7. 3.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돈 중 1,501,000원, 1982. 6. 12.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돈 1,800,000원 등 도합 금 9,424,321원의 학교돈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구속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는 다시 1982. 12. 11.자 석간에 신청인이 위와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된 사실을 게재하면서 「신청인이 교장으로 재직시 학교공금을 횡령하고, 조모 교사등 7,8명의 교사들로부터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직접 돈을 빌린 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피해교사들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나 교사들과의 채권채무관계는 민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루지 않았다.

또한 도교육위의 감사과정에서 부당인출된 것으로 지적된 세출예산 3천여만원도 신청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는 기사를 결들임으로써 교사들의 진정내용 및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3,000여만원 부당인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없어졌음을 명백히 보도한 사실,

4. 그 후 검사는 1982. 12. 15.자로 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구속영장범죄사실과 그

밖에도 신청인이 1982. 6. 10.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중학교 교장 사무실에서 위 김 , 박 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달 12일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박 을 협박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고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노 에 대하여는 1981년 3월 1일자 불상 10:00경 이 경영의 거북당제과점에서 김 명의의 금 3,000,000원짜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행사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들은 제1심공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기사내용(갑 제1호증)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신문사측의 의견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는 신청인의 혐의사실을 간접적으로 보도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내용 중, 기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세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의 피해자등 관계인들의 진술 기타 수사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임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기사가 학교재단측의 말만 듣고 보도된 일방적인 기사로서 그 허위보도임이 교육위원회나 검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거나 학교법인 유봉학원이 각종 등록금에서 유용횡령한 것이 금 1억4천만원에 이른 것이 확인된 일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내세우고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학교 교사들과의 대출 보증관계나 3천여만원 횡령사건 등에 대하여는 이미 그 혐의없음이 밝혀졌음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혐의사실 수사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도로서 1982. 12. 11. 자 강원일보 지상에 충분히 보도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9.

□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판사 전 봉 진
판사 김 순 갑

論評이나 批評하기 위한 寄稿文을 게재한 것이므로 事實的 主張에 의해 被害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5. 24.자 결정 (83카7933)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5월 24일 신청인 윤 씨가 피신청인 장로회보사를 상대로 한 訂正報道請求申請事件에 대하여, 장로회보에 게재된 바 있는 『산업선교정책협의회 참관기』란 題下의 기사 가운데 신청인에 관한 事實的 主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자료에 의하여 소명이 되었고, 그밖의 부분은 산업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필자가 그 회의에서 보고 느낀 바를 논평 내지 비평하기 위하여 쓴 寄稿文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게재한 것이므로, 申請人은 장로회보에 게재된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하여 被害를 입은 바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산업선교정책협의회 참관기』 題下의 기사가 장로회보(1983년 1월 20일자 2면)에 게재되자, 신청인 윤 씨가 장로회보사 발행인 서석호 씨를 상대로 1983년 2월 19일 言論仲裁委員會에 仲裁를 신청했으나(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8호 91면 참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1983년 3월 3일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신청인은 중재가 불성립되자, 1983년 3월 18일 법원에 訂正報道請求申請을 냈으나, 1983년 5월 24일 기각되었다.

決 定 文

사 건 : 83카7933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윤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인 철

피신청인 : 장로회보사

서울

대표자 발행인 서 석 호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의 본건 신청의 요지는,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1983. 1. 20.자 장로회보에 신청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의 상임간사로서 1982. 11. 29.부터 동년 12. 1.까지 사이에 연례행사로 개최한 바 있는 공식적 세미나인 산업선교정책협의회에 참관한 신청의 유 이 참관 소감으로 쓴 『산업선교정책협의회 참관기』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는 바, 동 참관기 중 신청인에 관한 부분을 간추려 보면, 첫째, 간사 윤 는 회의기간 중 주먹을 불끈불끈 쳐들고 액손액손 하였는데, 이는 정부나 언론을 몰아부치는 성토를 하자는 뜻인지 가두시위라도 벌이자는 것인지 매우 아리송하였다. 둘째, 기관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경화시킬 염려가 있는 이야기라면 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셋째, 회의장면을 계속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비용이 상당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혹시 더블유.씨.씨.(W.C.C.)에 자금을 타내기 위한 보고용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사전에 산업선교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금규모나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간사란 심부름꾼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빙자하여 독단으로 무슨 일을 꾸미거나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회의와는 상관이 없는 산업선교수호를 위한 결의문이 유인물로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는데, 이 유인물의 작성자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나돌고 있는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경거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아무리 생각해도 더블유.씨.씨.에서 돈 타내기 위한 연극에 놀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등의 내용인

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간사인 신청인 윤 목사는 동 산업선교위원회의 유일한 집행기관으로서 동 선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주제 아래 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며 특히 회의주제에 맞도록 각계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하였으며 위 산업선교위원회는 산업화사회에 있어서의 선교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그 선교임무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현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제공하여 선교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매년 연례행사로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왔고 1982. 11. 29.부터 동년 12. 1.까지 열린 회의 역시 연례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것으로 위 산업선교협의회가 아무런 근거나 책임 없이 신청인 목사 독단으로 개최하고 집행한 회의가 아니며, 더구나 더블유.씨.씨.에서 자금을 타내기 위한 회의도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른손 주먹을 불끈불끈 쳐들고 액손액손하고 외친 일도 없으며 회의현장에서는 산업선교정책협의회 토의보고만이 있었을 뿐 결의문이 작성, 배포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게재한 참관기는 사실을 왜곡되게 표현하여 신청인을 모함하면서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기본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이 장로회보에 게재한 위 참관기 중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첫째, 간사 윤 목사는 회의기간 중 주먹을 불끈불끈 쳐들고 액손액손하였다. 둘째, 기관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셋째, 회의장면을 계속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넷째, 회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산업선교수호를 위한 결의문이 유인물로 제작되어 유포되었다는 항목이라 하겠고, 위 각 항목의 사실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의 자료에 의하여 대체로 소명이 되는 바이나,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신청인을 모함하고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성질의 보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위 참관기 중 신청인에 대한 그밖의 기사는 사실상의 주장이 아니라, 동 기사의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신청의 유

이 동 협의회에서 보고 느낀 바를 논평 내지는 비평하기 위하여 쓴 기고문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게재한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장로회보에 게재한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신청비용은 패소

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3. 5. 24.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종 찬

다른 기관의 公文이 피신청인의 新聞을 통하여
公表된 이상 이는 同新聞의 사실적 주장이므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8. 19.자 판결(83카9145)

事實概要

다른 기관의 公文에 따라 게재한 기사일지라도 피신청인의 신문을 통하여 公表된 이상, 이는 同紙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8월 19일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협회장 이 씨가 한국기독교공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본건 기사들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 의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에 따라 게재된 것이더라도, 공표된 이상 이는 동 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필요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신청인은 韓國基督公報 1983년 2월 19일자 3면에 『文 집단의 異端性 폭로』, 『이탈간부 김 씨 강사로 28일 새문안서』 제하로 「文 집단에 대한 비판강좌가 새문안 교회당에서 개최되어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단성에 대해 폭로하는데 강사는 문 집단의 협회장 및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던 김 씨」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申請人は「김 란 자는 통일교 협회장이나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리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범죄자 김 를 통일교협회장이라 인상지워 독자로 하여금 통일교회가 범죄단체라는 인상과 해석을 하도록 유도, 통일교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8호 96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된 기사가 모두 사실이며, 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 이 배포한 公文을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1983년 3월 2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韓國基督公報社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勝訴判決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韓國基督公報 1983년 10월 1일자 3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判 決 文

사 건 : 83카9145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서울

대표자 협회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홍 수

피신청인 : 한국기독교공보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46

법률상 대표자 발행인 안 경 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변론종결 : 1983. 8. 5.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끝나지 아니한 「한국기독교공보」 제3면 기사란 중 상단 중간부분에 세로 4단 가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1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고, 별지 정정보도 내용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4단으로 게재하고, 정정보도 신청인의 명칭은 2호활자로 위 정정보도 내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우선당사자 정정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에 신청인 협회는 1983. 3. 9. 명의로 언론중재 신청을 하고 동년 3.16. 피신청인과 사이에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동년 3. 29. 신청인 협회의 대표자인 「이 」 명의로 본건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 다음 동년 4. 8. 당사자 표시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협회장 이 」으로 정정하였다가 동년 6. 30. 다시 이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협회장 이 」으로 정정하였음이 분명하다.

피신청인은 원래 중재신청을 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자연인인 「이 」이나 「유지재단」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위 당사자표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신청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신속·엄정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사자 표시정정의 경우에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호증, 소갑3호증의 1 내지 3, 소갑4호증의 각 기재와 본건 신청서 및 이에 붙여 제출된 신청인협회의 위임장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본건 신청서 앞부분의 신청인 표시에는 「이 」으로 되어있으나 신청서 뒷부분에는 중재신청을 대리하였던 동협회의 국내과장 김 의 기명날인과 동 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김 에 대한 위임장은 동 협회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당초부터 신청인 협회 명의로 본건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뒤 이를 법인격이 있는 「유지재단」으로 일응 정정하였다가 다시 신청인 협회로 표시정정을 한 것은 위 「유지재단」은 신청인 협회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실상 양자는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는 동일한 사회적 활동개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본건 당사자표시 정정은 앞서 본 정정보도청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3. 2. 19.자 한국기독교공보 제3면 기사란 중 상측 중간 부분에 『문 집단의 이단성 폭로』 『이탈간부 김 씨 강사로, 28일 새문안서』라는 제목 아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소장 탁)가 주최하는 문 집단에 대한 비판강좌가 동년 2. 28 오후에 새문안교회당에서 문 집단의 협회장 및 재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던 김 씨를 강사로 하여 통일교의 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의 6가지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5단, 가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소위 김 는 과거 신청인측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종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서 통일교회협회장 또는 재단 이사장의 직무대리로서 종사한 사실이 있는 등 위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 의 증언은 채택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사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보도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본건 기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 의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일단 그 주장과 같은 공문이 피신청인의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동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필요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본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한국기독교공보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19.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종	찬

정정보도문

지난 1983. 2. 19. 자 한국기독교공보 제3면에 『문 집단의 이단성 폭로』라는 제목 아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소장 탁)가 주최하는 문 집단에 대한 비판 강좌가 동년 2. 28. 새문안교회당에서 문 협회장 및 재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던 김 씨를 강사로하여 통일교의 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의 6가지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위 강사 김 는 통일교협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고 평신도로 있다가 탈퇴한 자이며, 또한 통일교 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의 강연 제목은 50년대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 허구의 것으로서 통일교가 마치 비윤리적인 집단인 것처럼 묘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다른 기관의 公文이 피신청인의 新聞을
통하여 公表된 이상 이는 同新聞의
사실적 주장이므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8. 19.자 판결 (83카9146)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8월 19일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협회장 이재석 씨가 기독교신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본건 기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 의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일단 그 주장과 같은 공문이 피신청인의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동 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됨은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본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피신청인은 기독교신보 1983년 2월 19일자 3면에 『統一敎 비판 강연회』, 『赤裸裸한 實像 파헤쳐』, 『강사 前統一敎協會長 김 씨』 제하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통일교 비판강좌가 개최되는데, 강사는 통일교 협회장 및 재단이사장 직무대리로 있다가 탈퇴한 김 씨로 이번 비판강좌는 통일교의 적나라한 실상과 교리적인 이단성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申請人은, 「김 란 자는 통일교회 협회장이나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虛偽事實을 報道하여 범죄자 김 를 통일교 협회장이라 인상지워 독자로 하여금 통일교회가 범죄단체라는 인상과 해석을 하도록 유도, 통일교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8호 94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된 기사가 모두 사실이며, 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 이 배포한 公文을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1983년 3월 2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기독교신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 勝訴判決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독교신보 1983년 10월 8일자 3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判 決 文

사 건 : 83카9146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서울

대표자 협회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홍 수

피신청인 : 기독교신보사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의 14

대표자 발행인 김 정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변론종결 : 1983. 8. 5.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독신보」 제3면의 좌측 상단 부분 중 5단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좌측에 5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우선 당사자 표시 정정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에 신청인협회는 1983. 3. 9. 신청인협회 명의로 언론중재신청을 하고 동년 3. 16. 피신청인과 사이에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동년 3. 29. 신청인협회의 대표자인 「이 」 명의로 본건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한 다음 동년 4. 8. 당사자 표시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협회장 이 」으로 정정하였다가 동년 6. 30. 다시 이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협회장 이 」으로 정정하였음이 분명하다.

피신청인은 원래 중재신청을 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자연인인 「이 」이나 위 「유지재단」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위 당사자 표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신청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신속·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사자 표시 정정의 경우에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호증, 소갑3호증의 1 내지 3, 소갑4호증의 각 기재와 본건 신청서 및 이에 붙여 제출된 신청인협회의 위임장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본건 신청서 앞부분의 신청인 표시에는 「이 」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서 뒷부분에는 중재신청을 대리하였던 동 협회의 국내과장 김 의 기명날인과 동 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김 에 대한 위임장은 동 협회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당초부터 신청인협회 명의로 본건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뒤 이를 법인격이 있는 「유지재단」으로 일응

정정하였다가 다시 신청인협회로 표시정정을 한 것을 위 「유지재단」은 신청인협회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실상 양자는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는 동일한 사회적 활동개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본건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은 앞서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2. 19.자 「기독신보」 제3면 기사 중 우측 상단부분에 『통일교 비판강연회 적나라한 실상 파헤쳐 전통일교 협회장 김 』라는 제목 아래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연회가 동년 2. 28. 오후에 새문안교회당에서 통일교 협회장 및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던 김 씨를 강사로 하여 통일교의 적나라한 실상과 교리적 이단성을 파헤치고 동 교회의 극비혼음 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에 관하여 강연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7단, 가로 약 15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소위 김 는 과거 신청인측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종사건의 처리등에 있어서 통일교회협회장 또는 재단이사장의 직무대리로서 종사한 사실이 있는 등 위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 의 증언은 채택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사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보도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본건 기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 의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일단 그 주장과 같은 공문이 피신청인의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동 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본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기독신보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신청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19.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종 찬

정정보도문

기독신보사가 1983. 2. 19자 발행 동사 기독신보의 3면 머릿기사로 게재한 『통일교 비판강연회 강사 전통일교협회장 김 』 제하의 7단 기사에서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통일교회 비판강좌가 통일교회 협회장 및 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로 있다가 탈퇴한 김 씨를 강사로 하여 개최하는데 동 강연회에서는 통일교의 적나라한 실상과 교리적인 이단성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통일교의 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이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강사로 보도된 김 는 통일교 협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직무를 대리한 바가 없고 평신도로 있다가 탈퇴한 자이며 「통일교 극비혼음의 내막과 계보」등 기사는 50년대 보도된 것을 인용한 사실무근의 것으로서 통일교회가 마치 비윤리적인 집단인 양 묘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原稿를 修正・削除해 게재한 경우는
訂正報道請求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8. 26.자 판결(83카17754)

事實概要

잡지를 통해 原稿를 公表한 경우, 비록 그 내용이 본래의 원고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 言論基本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언론기본법상의 訂正報道請求權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8월 26일 신청인 金 씨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사회발전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雜誌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事實的 主張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이나,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내용이 본래의 原稿內容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言論基本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民法 또는 著作權法 등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申請人은 주식회사 사회발전연구소 발행 월간지 「한국인」(1983년 4월호 57~59면)에 『집단지향성 및 일본인의 우상』이란 제하의 글을 「한국인」측 원고청탁에 의해 써주었는 바, 피신청인 「한국인」측이 당초 신청인이 쓴 原稿를 신청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삭제, 변경, 첨가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그 著者로 되어 있는 申請人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본전문가로서의 사회활동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신청인 명의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사건개요에 계속해서 신청인의 본래의 原稿 全文을 수정, 삭제없이 게재하라고 요구하며, 1983년 4월 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신청을 냈다.

그런데 신청인 金 씨는 위 글이 公表된 후, 1983년 4월 13일 피신청인인 월간 「한국인」지 발행인 심 씨를 상대로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8호 102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원고 재제재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社告만을 게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되었다.

신청인 金 씨는 1審 판결에 불복하고 抗訴한 후, 당사자간에 화해하여 金 씨는 訴를 취하하였고(1983. 11. 24.), 피신청인은 「한국인」 1983년 11월호에 金 씨의 『일본인의 상황주의와 책임의식』이란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83카17754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사회발전연구소(월간잡지 「한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대표이사 장 덕 진, 심 용 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연

변론종결 : 1983. 8. 12.

주 문 : 1.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본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잡지 「한국인」에 별지1 내용의 정정보도를 별지 2 기재의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 1. 신청인은 당초에 소외 을 상대로 본건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하였다가 피신청인측에서, 그 당사자 적격에 대한 이의를 하자, 피신청인 표시를 주식회사 사회발전연구소로 정정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 바, 우선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당사자 표시 정정의 경우에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다 넓게 허용된다고 볼 것인데, 본건에서 월간잡지 「한국인」에 관한 정기간행물등록증에는 그 발행인이 피신청인 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잡지상으로는 그 말미에서 사회발전연구소가 이를 발행하며 회장은 장덕진, 발행 겸 편집인은 심용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정정보도청구심판절차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은 1983년 2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잡지 「한국인」에 실을 원고청탁을 받고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300자원고지 20장 분량의 원고를 써 주었는데 그후 발간된 한국인 4월호 56면부터 59면까지에 실린 신청인 명의의 같은 제목의 글은 당초에 신청인이 쓴 원고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삭제, 변경, 첨

가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그 저자로 되어 있는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본전문가로서의 사회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 즉 그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자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잡지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 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내용이 본래의 원고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언론기본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법 또는 저작권법(예컨대 동법 제16조의 원상유지권) 등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 선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26.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종 찬

〈별지 1〉 정정보도 및 사과문

본지 「한국인」 1983년 4월호 김 교수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56면부터 59면까지)은 집필자에게 일언반구의 의논·통보도 없이 본사 편집진들의 자의로 원고를 삭제·날조하였던 기사로서 그 개작방법이 조잡하고 개작의 지적 수준이 천박하여 집필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조성하고 한일 양국 우호증진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필자의 항의를 받고 이번 호에 본래의 원고를 수정없이 게재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김 교수께서 사회정의감과 교육자적 양심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저희들의 과오를 시정하여 주신 교훈에 대하여 저희 편집인들과 이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들은 송구스럽고 또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재삼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1983년 월 일
사회발전연구소 회장 장
「한국인」 발행인 심

〈별지 2〉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1. 정정보도 및 사과문은 「한국인」(판결 후 최초 발간)월호의 기사본문이 시작되는 첫면에 (한면 전부를 할애하여) 게재할 것.
2. 첫면의 3분의 2 상단에는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나머지 3분의 1 부분인 하단부터 다음면에 계속해서 사건개요를 게재할 것.
3. 상단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은 강조효과가 나도록 4각형의 박스를 치고 4면에 여백을 둘 것.
4.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사건개요에 계속해서 신청인의 본래 원고 전문을 수정, 삭제 없이 게재할 것.
5. 본래의 원고 및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게재지면이나 간지에 광고나 기타 고지사항을 게재하지 말 것.
6. 정정보도 및 사과문 및 원고의 본문 활자크기는 「한국인」의 기타 보도문의 본문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할 것.
7. 원고제목의 크기 및 활자의 크기는 「한국인」의 기타 제목의 크기와 동일하게 할 것.
8.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이란 제목과 「사회발전연구소 회장 장덕진」 및 「발행인 」이란 활자의 크기는 2호활자로 할 것.
9.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원고는 일반독자가 읽기 불편하지 않도록 띄어쓰기 및 편집의 재반사향을 「한국인」기타의 보도문과 동일하게 할 것.
10.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사건개요」의 본래 원고 정본 사이에는 2단 내지 3단의 공백을 두고 게재함으로써 각각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부각되도록 할 것. ☐

公表된 기사에 대한 立證資料가 없다면 그 기사에 의해 被害를 받은 申請人の 訂正報道文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11. 4.자 판결(82카27454)
서울고등법원 1983. 11. 17.자 판결(82나4188)

事實概要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신문은 신문에 공표된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東亞日報은 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不具도 서러운데... 장애인 기술 가르쳐 준 다며 會費 착복』 제하의 기사를 통해 「 협의회가 장애인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장애인 수강생과 교사들 30여명이 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들에 의하면李 회장이 장애인들에게 동양매듭, 동양화, 피아노, 일어 등 재활 기술을 가르쳐 취직을 보장한다며 회원을 모집, 입회비와 월회비 등을 받고도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취직도 시키지 않았으며, 이회장이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을 찬조받아 판매대금을 착복하는 등 장애자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해왔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허위날조된 불법기사이며,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5호 118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중재기일에 출석치 않아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東亞日報에 공표된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판결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고 항소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東亞日報 1982년 12월 11일자 1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승진 부장판사)는 신청인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회장 李 씨가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주장을認容한 원심판결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일부 부당한 내용까지도 게재를 命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1審 判決文

사 건 : 82카27454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東亞日報社

발행인 김 상 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종결 : 1982. 10. 21.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하단부분에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세로로 1호활자로 우측에 3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 협회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은 세로로 4호활자로 3단에 걸쳐서 게재하고, 별지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6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하

단부분에 『불구(不具)도 서러운데…… 장애인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會費)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협회의 회장이 1981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심신장애자들에게 동양매듭, 동양화, 피아노, 일어 등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한 다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와 월회비 등을 받고도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취직도 시키지 않았으며, 심신장애자강사들에게 급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활선도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을 찬조받아 그 판매대금을 착복하는 등 장애자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30여명의 장애인 수강생과 강사들이 4일 동안 위 협회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3단 8센티미터 크기의 기사가 3단 11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언론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그 게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로소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함이 없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기본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월(제4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와 피해자가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인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조항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월 이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

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한 후 그 게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와 월회비 등을 받고도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취직도 시키지 않았으며, 강사들에게 급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부받은 찬조금이나 그림의 판매대금을 착복하여 말썽이 생겼기 때문에 30여명의 심신장애자들이 4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신청인이 청구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확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견 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 같은

의 형사기록검증 결과(각 아래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여 심신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기 위하여 1981. 7. 15.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었던 바, 위 협회에 장애자들이 찾아오면 우선 상담을 한 후 그 희망에 따라 일어, 초상화, 동양매듭, 양복재단, 표구 등 재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서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영어, 초상화 등 일부과목에 대하여서만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 강의도 심신장애자나 기타 본인이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무료로 이루어지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져서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자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도 여의치 못하여 그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투자한 500여만원의 사재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으나, 그밖에 위 협회를 찾아오는 장애자들 중 스스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자청하는 자 37인으로부터 5,000원 또는 10,000원씩 합계 250,000원 정도를 납입받아 일부는 강의실 구입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이 현재 보관 중인 상태에 있으며, 1982. 3. 21에는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서울 중구 수표동 소재 대화다방에서 일일찻집을 경영하여 117,500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는 협의 회 사무실의 임대료로 지급하였고, 1982. 5. 13.부터 15일까지 사이에는 서울 영등포

구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심신장애자 선도를 위한 부흥회를 개최하여 그 참가자들로부터 819,090원의 현금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위 부흥회 준비를 위한 경비에 충당되어 버렸으며 또한 서울 흑석동 소재 배들교회 장로 김 로부터 찬조금으로 30,000원을 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 및 평소 위 협회의 운영이 원활치 못하여 재활기술의 강의가 희망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이루어진 강의의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취업알선의 실적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가진 장애자들 중 일부가 1982. 5. 27. 위 협회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러한 점의 시정과 협회 운영방법등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신청인이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보장하는 대가로서 심신장애자인 회원으로부터 입회비나 월회비 등을 받고도 재활기술을 제대로 강의하지 아니하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지 아니하여 회원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재활기술을 강의하는 강사에게 강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거나, 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받은 현금, 대화다방에서 일일차집을 경영해서 얻은 이익금, 김 장로로부터 기부 받은 찬조금을 신청인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거나 또는 신청인이, 유명 동양화가등으로부터 장애자들을 위해 기증받은 동양화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각 증인 및 당원의 기록검증 결과 부분은 당원이 이를 채용하지 않는 바이므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4.

재판장	판사	지	홍	원
	판사	양	삼	승
	판사	이	종	찬

정정보도문

< 협회에 관하여 >

지난 1982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협회 회장 이

은 1981년 3월부터 YMCA빌딩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고도 강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신장애자 강사들에게 급료도 주지 않았으며 또한 장애자를 위한 선도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판매대금을 착복하는 등 장애자들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는 내용의 장애자 회원들의 주장이 기사로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위 협회의 회장 이 은 심신장애자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1981년 7월 15일 위 협회를 창설한 이래 위 사무실의 임대비용 및 대부분의 운영비용을 사재로 충당하여 왔으며, 재활기술의 강의 및 취업의 알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되지 못하여 강의가 대부분 장애자 강사의 무료봉사에 의할 수 밖에 없었던 등의 사정에 기한 때문이었고, 관계기관의 수사결과 이 이 장애자들에 대한 강의 및 취업을 미끼로 회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은 없음이 밝혀졌고, 더우기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자를 위해 기증받은 그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한 사실은 없다.

정정보도 신청인

決 定 文

사 건 : 82타20095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채 권 자 : 이

서울

채 무 자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발행인 김상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82카27454 정정보도 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

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채무자가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하단부분에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세로로 1호활자로 우측에 3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협회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은 세로로 4호활자로 3단에 걸쳐 게재하며, 별지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6호활자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하루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982. 12. 10.

재판장	판사	지	홍	원
	판사	이	종	찬
	판사	김	오	수

2審 判決文

사 건 : 82나4188 정정보도

신청인, 피항소인 : 이

서울

피신청인, 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발행인 오 재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종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11. 4. 선고, 82카27454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판결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발간의 동아일보 제11면에 4단 16센티미터 크기로 『정정보도문(訂正報道文)』이라는 제목은 0호활자(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본보 82. 5. 27.자 사회면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회장/

)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세로로 1호활자로 4단에 걸쳐 게재하며, 별지 제 2 정정보도내용은 5호활자로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하단 부분에 『불구(不具)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會費)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30여명의 신체장애자들이 같은 달 23일 이래 협회의 이 회장이 1981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심신장애자들에게 동양매듭, 동양화, 피아노, 일어 등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와 월회비 등을 받고도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취직도 알선하지 않았으며, 심신장애자 강사들에게 급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활선도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을 찬조받아 그 판매대금을 착복하는 등, 장애자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4일 동안 위 협회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3단 8센티미터 크기의 기사가 3단 11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날

협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 협회에 가입하는 장애인들에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어, 일어, 초상화, 매듭, 양복재단, 표구 등 자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서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로 있어 제반 준비의 미비로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홍보를 했던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영어, 초상화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였으나 그 강의도 심신장애자인 강사나 그밖에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무료로 며칠동안만 행해져서 그 내용이 부실하였고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도 되지 못하여 그 실적이 극히 미미했던 사실, 위 협회에 출입하던 일부 신체장애자들이 신청인의 협회운영에 불만을 품고 1982. 5. 25. 위 협회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위 기사내용과 같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수사와 협회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시위를 벌이고 경찰서에 신청인을 고소까지 한 사실, 신청인이 위 협회를 찾아온 30여명의 장애인들로부터 자발적인 후원회비 명목으로 1인당 금 5,000원 내지 금 10,000원씩을 징수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이회명의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 밖에 신청인이 고의로 위 교육과 취업알선등의 댓가로 장애인들로부터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들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강사들에게 강의료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기독교단체등으로부터 위 사업명목으로 찬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기증받은 그림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위 증인의 각 일부 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채용했던 증거들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협회의 설립 이래 사무실 임대 비용등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온 사실이 엿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격침해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의 절차로서 이에 의하여 당해 언론기관이 무상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강요되어 그 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정보도사유에 대한 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준부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기준에 맞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기준의 확정에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

는 언론자유와 보장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익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고 언론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상충되는 요구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첫째 보도내용에 있어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는 이상 지엽적인 내용에 일부 사실 아닌 기재가 있더라도 언론기관은 그 책임이 없고, 둘째 언론기관이 보도과정에 있어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는 비록 사후에 보도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이 없으며, 셋째 언론기관이 고의로 또는 그 진위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으로 언론기관에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언론기관에 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일부 장애자들이 신청인의 비위를 규탄하면서 농성을 벌였다는 기사의 주요부분은 모두 객관적 진실이고 가사 장애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사기, 횡령, 착복 등의 내용이 사후에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이를 취재, 보도함에 있어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또 위 보도에 있어 피신청인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 어느점으로 보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장애자들을 팔아 사기, 횡령 등을 하였다는 기사 부분이 위 기사의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더러 위 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현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거나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므로 그 요건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의 기준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점은 정당하나 위 별지목록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게재할 것을 명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17.

재판장 판사 김 승 진
판사 유 현
판사 이 기 현

〈별지 1〉 정정보도문

『 협회에 관하여』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이라는 제목으로 위 협회 회장 이 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2. 5. 23. 수명의 장애자들이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이 이 장애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농성을 벌인 바 있고, 위 협회는 그 설립취지로 내세운 재활기술교육과 취업알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30여명의 장애자들로부터 후원비로 5,000원 내지 10,000원씩 받은 바 있으나 관계기관의 수사 결과 위 이의 형은 협회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왔음이 밝혀졌고 동인이 위 사업취지를 미끼로 회비를 받아 편취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횡령하고 화가들로부터 기증받은 그림들의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정정보도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내용

제 목 : 1982. 5. 27자 협의회(회장 이)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내 용 : 본보 82. 5. 27자 11면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 제하의 기사는

협회(회장 이)는 장애자회원들로부터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은 바 없고, 자원봉사자들인 강사들을 통하여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왔으며, 이 회장이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았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을 착복하는 등 사기행각을 한 사실이 없으며, 30여명의 장애인회원 및 강사들이 항의 농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협의회는 세계심신장애자선도전 시장 및 희망의 전화(723-9088)를 통하여 출소자, 미혼모, 가정파탄자, 불우청소년, 고독한 노인, 심신장애자,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밝은 사회, 복지국가건설에 일익을 담당케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82. 9. 30.

신청인



소속교회의 숫자가 敎團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도 社會生活上 하나의
單位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訂正報道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11. 25.자 판결(83카22003)

事實概要

民事訴訟法上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當事者능력이 인정된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民事地方法院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11월 25일 신청인 성결회 총회장 이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韓國福音新報社를 상대로 한 訂正報道請求申請 사건에 대하여, 「言論基本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被害者의 권리구제를 신속, 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訴權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라도 그 당사자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기사내용을 바로 잡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被害를 입은 자에 대하여 反論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報道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韓國福音新報에 공표된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韓國福音新報 1983년 6월 5일자 광고란에는 성결회 실행위원회 명의
의로 된 성명서가, 1983년 6월 12일자 3면 광고란에는 성결회 명의
로 된 성명서가, 1983년 6월 19일자 1면에 『갬블 宣教師 告發당해』 제하의 기사로 각
각 게재되었다. 신청인은 위 성명서와 기사는 허위이며, 나 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씨는 「 성결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韓國福
音新報의 발행인임을 기화로 신청인이 총회장으로 있는 성결회와 宣
教師 갬블 씨를 비방하는 성명서와 허위 기사를 게재하여 교단과 선교사 갬블 씨의 명
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1983년 7월 4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중
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0호 72면 참조).

중재결과,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3년 7월 20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
구송을 제기, 1983년 11월 25일 勝訴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않자 다시 1983
년 12월 5일 法院에 訂正報道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출, 법원에서 1984년 1월 12
일 정정보도이행에 관한 결정이 나자 피신청인은 1984년 1월 22일자 韓國福音新報 1면
에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83카22003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성결회

서울 관악구

대표자 총회장 이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복음신보사

서울 동대문구 면목6동 12

법률상 대표자 발행인 나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 중 삼

변론종결 : 1983. 11. 4.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국복음신보」 제1면의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성결회(이하 한국오성이라고 한다)의 원교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목사 수명의 집단으로서 소속교회의 숫자가 아직 교단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미국 오크라호머주에 있는 성결회(이하 국제오성이라고 한다)의 승인하에 국제오성과 교리를 같이 하는 서울 시내 신림중앙교회등 11개 교회의 담임목사등이 조직한 종교단체로서 하나의 단일한 사회적 활동개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6. 5.자 및 같은 달 12.자 각 한국복음신보 3면 하단 광고란과 같은 달 19.자 같은 신문 1면 중앙에 『갬블 선교사 고발당해』라는 제목 및 같은 해 7. 3.자 같은 신문 7면 중앙에 『피소된 갬블 선교사 급거 귀국』이라는 제목 아래, 이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오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단은 국제오성으로부터 나운몽 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한국오성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나 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한국오성에서 제명당한 목사 수 명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정식교단으로 조직됨이 없이 위 한국오성이라는 명칭을 도 용하고 있는 유령교단일 뿐만 아니라 위 신청인측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위 나 목 사의 한국오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혈뜯는 갖가지 허위선전을 일삼고 있어 위 한국복음신보의 성명서 및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청구 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부합하 는 듯한, 소을제7호증(호소문), 소을제8호증(경고문), 소을제13호증(실행위원회 회의 록), 소을제17호증(신문), 소을제25호증(편지)의 각 일부 기재와 중인

국내언론관계판례집 59

이 1979. 3. 30 서울시내 위커힐 세라톤 호텔에서, 1) 한국기독교 독립교회연맹은 향후 「한국오성」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한국에 있는 국제오성의 일부로 하며 오순절성결교회의 교리를 따른다. 2) 한국오성은 국제오성세계선교국 지시 아래 그 실행이사과 아시아지역 감리사를 통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한국오성 감독은 그에 대한 국제오성 총감독의 특권과 우월권을 인정한다. 3) 국제오성은 한국오성의 일동일교회운동에 대한 영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라는 등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기독교 독립교회연맹을 모체로 하여 국제오성의 승인하에 창설된 종교단체로서 위 교회연맹의 실권자이던 나 목사(가)가 교단 감독으로 선임되어 그 창설 이래 계속하여 위 교단을 운영하여 왔던 사실 그러나 위 교단내에 위 나 목사의 교단운영이 독단적이고 그 교리가 오순절성결교회와는 맞지 않는 이단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나운몽에 반대하는 목사들이 생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나운몽과 국제오성으로부터 위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갬블과의 사이에도 같은 이유로 마찰이 계속되자, 국제오성 세계선교국 실행이사비. 이. 언더우드와 아시아지역 감리사 존 파카는 1982. 10. 4. 나운몽의 교단운영상 독단으로 인한 교단의 비성장 및 분열 및 교리상의 이단 등 이유를 들어 앞서 본 합의약정의 조항을 근거로 위 나운몽의 한국오성 감독 및 교단 내에서 안수받은 목사로서의 지위에 대한 국제오성의 승인을 철회하고 나운몽과 국제오성과의 모든 공식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국제오성 세계선교국 정례이사회가 같은 해 12. 1., 국제오성 최고실행이사회가 같은 달 10. 각 이를 승인한 뒤 국제오성 총감독 레온 스투어트가 1983. 4. 26. 나운몽에게 더이상 오순절성결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통보함으로써 국제오성과 나운몽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사실, 한편 위 한국오성내에서 이, 김 등 나운몽의 교단운영 및 교리에 반대하여 왔던 위 교단의 목사들이 1983. 1. 24. 국제오성 한국지부로서 한국오성의 조직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같은 달 31. 서울 성동구 자양동 소재 동서울교회에서 신림중앙교회등 11개 교회 담임목사 11명, 장로 1명, 위 레온 스투어트 국제오성 총감독, 비.이. 언더우드 세계선교국 실행이사, 존 파카 아시아지역 감리사, 제임스 갬블 선교사 등이 참석하여 한국오성조직에 관한 총회를 갖고 이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뒤 국제오성이 위 교단을 한국오성으로 승인함으로써 신청인 교단이 형성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나운몽 목사가 1983. 8. 22. 미국으로 건너가 국제오성 간부들과 회합한 결과 국제오성이 다시 나운몽을 한국오성의 감독으로 인정하고 나운몽과의

관계단절결정을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 교단은 결국 유령교단으로 될 수 밖에 없으니 위 한국복음신보의 기사내용은 진실에 합치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을제16호증(신문), 소을제18호증(통지서), 소을제21호증의 1,2, 소을제22호증(각 서신), 소을제23호증의 1,2(각 신문), 소을제24호증의 1,2(회의록), 같은 호증의 3(사진), 소을제26호증(번역문공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국제오성이 위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나운몽과의 관계 단절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 신청인 교단이 유령교단으로 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기사내용을 바로잡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보도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한국복음신보에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25.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여 상 규
판사 이 형 하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한국복음신보사 발행의 1983년 6월 5일자 및 같은 달 12일자 각 한국복음신보 3면 하단 광고란과 같은 달 19일자 같은 신문 1면 중앙에 『갬블 선교사 고발당해』라는 제목 및 같은 해 7월 3일자 같은 신문 7면 중앙에 『피소된 갬블 선교사 급거 귀국』이라는 제목하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기사가 보도되었다.

즉 이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성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단은 성결회로부터 나 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성결회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갬블이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의 12 소재 대연빌

쳐 세로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하루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984. 1. 12.

□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여 상 규
판사 이 형 하

報道事實을 인정할 證據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5. 25.자 판결(84카1598)

서울고등법원 1985. 8. 16.자 판결(84나2524)

대법원 1986. 1. 28.자 판결(85다카1973)

事實概要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새한신문(1983년 12월 5일자 3면)은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 제하로 「복지고등학교 교장 安 씨가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 발부과정에서 평균 60점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지원서를 발부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자, 노 교감등 3학년 담임 4명이 안교장에게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안교장은 당초 방침대로 강행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학부형들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발급하도록 하자, 학교측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감사가 노교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나 노교감이 이에 불응하자, 노교감을 직위해제 처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 복지고등학교장 안 씨는 저학력학생에게 응시지원서를 발부하지 말

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노교감의 징계사유는 직무이탈, 인사발령에 항명, 현직교사로서의 배임행위, 소속상관에 대한 신상모독행위 등이지 결코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한신문은 노교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신청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1983년 12월 21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 12호 94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2차 중재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4년 1월 16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4년 5월 25일 「피신청인은 노 교감이 복지고등학교 교장 安 의 84년도 대입학력고사원서 발부 제한 지시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한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신청인은 1984년 6월 14일 항소하고서 새한신문 1984년 7월 16일자 3면에 1심판결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1985년 8월 16일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피신청인은 다시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재판장 정기승 대법관)는 1986년 1월 28일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 확정하였다.

1審 判決文

사 건 : 84카1598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신 청 인 : 안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신창동

피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새한신문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5

대표자 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류 형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수

변론종결: 1984. 4. 27.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새한신문」 제3면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복지고등학교나 복지고등학교장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에 공용된 영조물 시설 또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1984. 1. 16.자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의 신청인은 복지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연인 안채란임이 명백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겠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12. 5.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 같은 사태를 노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교련은 노교감의 교련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약 5 내지 16센티미터, 세로 6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교법인 복지학원으로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받고 교권침해를 당한 신청외 노 교감의 정식절차를 거친 교권침해진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증빙자료와 교권과장 조 을 1983. 10. 7. 및 8. 양일간 복지고등학교에 파견,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 사건발생의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후 진상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84년도 학력고사 원서발부 제한 지시에 대하여 노 교감이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노교감을 파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소을3호증(재심청구서), 소을6,7호증(각 진정서), 소을8호증(진상조사실시), 소을9호증(진상조사보고), 소을23호증(증인신문 조서등본)의 각 기재 내용, 증인 노 의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름이 없는 소갑14호증(처분사유설명서, 소을2호증과 같다.), 소갑16호증(통지서, 소을4호증과 같다.), 소갑17호증(재심청구서, 소을3호증), 증인 김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4호증(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소갑5호증(제청승인), 소갑6호증(이사회 회의록), 소갑8호증(결과보고), 소갑9호증(징계요구서), 소갑11호증(징계 의결서), 소갑12호증(징계회의록), 소갑15호증(결과보고), 소갑18호증(재심회의록), 소갑19호증(징계재심결정문)의 각 기재 내용, 증인 김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노 교감은 1983. 10. 4. 신청외 학교법인 복지학원으로부터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대한교육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복지중고등학교장을 비방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된 사실, 이에 신청외 복지학원은 1983. 10. 24.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바, 노교감의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위 노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을 결정하였고, 노교감의 재심청구 역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 발행의 정기간행물인 새한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5. 25.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이 상 규
판사 이 형 하

정정보도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발행의 1983년 12월 5일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하에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 사태를 노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거부당하자 학교 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교육연합회는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노교감은 1983. 10. 4. 학교법인 복지학원으로부터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도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대한교육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복지중고등학교장을 비방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에 복지학원은 1983. 10. 24.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바, 노교감의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위 노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을 결정하였고, 노교감의 재심청구 역시 각하되었으므로, 노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안교장이 저학력 고3생에 학

력고사 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그 부당함을 항의한 노교감을 파면한 것인 양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984. 5.

정정보도 신청인

2審 判決文

사 건: 84나2524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신청인, 피항소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신창동

피신청인,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5

대표자 이사(새한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박 일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하죽봉, 이정훈, 김두식

변론종결: 1985. 7. 12.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4카159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새한신문」 제3면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인 복지고등학교나 복지고등학교장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에 공용된 영조물 시설 또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 건 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신청인은 복지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연인 안채란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본다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학교는 사회생활상 하

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하겠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12. 5.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 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 같은 사태를 노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교련은 노교감의 교련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약 5 내지 16센티미터, 세로 6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도기사에 적시된 복지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위 보도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위 기사 중 교장인 신청인 개인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부당한 파면」이란 내용의 기사부분에 의하여도 위 학교 교장직에 있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위 신문에다 신청인의 반박문(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보도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함에 대하여, 첫째로, 피신청인은, 위 보도기사는 공공단체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산하 교련옹호위원회의 공개회의를 충실히 보도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보도기사의 내용과 형식 자체를 검토해 보더라도, 위 기사는 위 위원회의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신청인은, 위 보도기사는 진실한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신청인측 소명자료인 소을제3,6,7,8,9,10호증, 제11호증의 1,2,3, 제12호증의 1 내지 7, 제14, 15, 21, 2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노 , 당심증인 의 증언과 그 반대증거인 신청인측 소명자료인 소갑제4,6,9,11,12,14,15,18,19호증, 제21호증

의 1 내지 13, 제22호증의 1, 2, 제23, 24호증, 제26호증의 3, 4, 5의 기재,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 그리고 당원의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등을 대비, 검토하여 보면, 반드시 위 보도기사가 진실에 합치되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선뜻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새한신문에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이 건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있어 당원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8. 16.

재판장 판사 노 승 두
판사 성 기 창
판사 이 창 구

정정보도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발행의 1983년 12월 5일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란 제목하에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평균 60점 이하의 저학력 고3생에게는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가 9월 28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자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는 바, 안교장은 이 사태를 노교감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한 후, 학교측은 10월 3일자로 동인을 직위해제하고, 10월 22일 징계위원회에서 동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안교장이 저학력 고3생에게 지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은 학생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노교감의 파면도 교장에게 항의한 것을 사유삼은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직무태도불량등을 사유삼은 것이므로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985. 8.

정정보도 신청인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85다카1973

신 청 인 : 안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창 동

피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새한신문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5

이사 박 일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즉 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 8. 16. 선고 84나2524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언론기본법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 등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인 안 은 피신청인이 설치 경영하는 새한신문의 왜곡된 사실보도로 말미암아 복지고등학교장으로서의 신청인의 명예와 권위가 훼손 추락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새한신문의 사실보도내용은 자연인인 신청인이 아니라 복지고등학교라는 단체에 관한 것이어서 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복지학원 또는 복지고등학교가 될지언정 신청인 개인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보도내용은 소론 주장과는 달리 복지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에 관한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가사 신청인이 위 사실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흠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니 위 논지는 이유 없다.

(2)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12. 5.자 새한신문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자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는데 안교장은 이러한 사태가 노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나 동인이 불응하자 학교측은 동인을 직위해제하였다가 파면에 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보도기사에 적시된 복지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위 보도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된 복지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부당하게 학력고사 지원서 발부를 제한하고 이에 항의한 교감을 학교측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직위해제 및 파면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으니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원심판시는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 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회의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해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소론주장과 같이 교권

옹호위원회의 공개회의 내용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 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반드시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목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며, 그 판단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년 1월 28일

□

재판장	대법관	정 기 승
	대법관	전 상 석
	대법관	이 회 창

判決内容대로 報道했다면 變更된 請求趣旨를 記事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訂正報道를 要求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13.자 판결(84카17261)

서울고등법원 1985. 1. 18.자 판결(84나3255)

事實概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바가 없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1984년 4월 15일자 11면)는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심증 있으면 책임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로 **李 씨**가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李 씨**는 자신이 패소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이었고, 그 전에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는 1, 2심 모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일보가 자신이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1984년 4월 19일 言論仲裁委員會에 한국일보를 상대로 중재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3호 80면 참조).

중재결과, 한국일보사가 言論仲裁委員會의 중재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 중재가 불성립되자, **李 씨**는 1984년 5월 1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4년 7월 13일 **李 씨**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는 법원의 판결 그대로 발췌 게재한 것이다. 訴名 내지 사건명은 당해 사건을 특정하기 위

한 명칭으로서 한번 정해지면 청구원인의 내용 및 그 변동에 관계없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본건기사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사건명은 정정보도이나 그 내용은 잘못된 기사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것임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본건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전반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李 씨는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은 1984년 6월 29일 신청인이 이 사건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84카17261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자 발행인 홍 유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병 기

변론종결 : 1984. 6. 29.

주 문 :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6단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訂正報道文)이라는 제목을 특호활자(한자)로 우측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 중앙에 이 심장협회장 승소 확정(李 心障協會長 勝訴 確定)이라는 대 제목을 세로 「컷」(한자)으로 6단에 걸쳐 게재하며, 그 좌측에 『본보 84. 4. 15. 한국 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회장 이 ()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을 1호활자로 2줄로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별지목록 기재의 본문내용

을 5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4. 4. 15.자 한국일보 11면에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심증 있으면 책임 없다』는 제목하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14일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인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 제목의 기사(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에 게재된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이며 그로 인해 침해당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과문을 게재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내용 외에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판단기준이 되므로 제목, 기사배치, 활자크기, 사진의 유무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나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진실성이 증명되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사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문제의 기사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된 것이 명백하고 보도기관이 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보도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10 내지 7.5센티미터, 세로 7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본건 신청원인으로서, 피신청인은 본건기사에서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 8부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그 소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이었고, 신청인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심(당원 82카27454) 및 2심(서울고등법원 82나4188)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양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신청위치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기사는 당원 합의 제8부 판결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하등의 피해를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3호증(각 신문), 소갑2호증, 소을3호증(각 판결), 소갑4호증(확정증명), 소을1호증의 1,2(기록표지), 소을2호증(소장)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발행의 1982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제 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인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와이.엠.씨.에이(Y.M.C.A)빌딩 405호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회장 이)가 장애인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 수강생과 교사들 30여명이 협회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농성 현장사진과 함께 보도되자 신청인은 위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하여 언론기본법 소정의 중재절차를 거쳐 당원 82카27454호 정정보도신청을 하는 한편 1982년 7월 16일 당원 82가합4734호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정정보도신청사건(82카27454)에서는 1982년 11월 4일 당원 합의 제16부가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동년 12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고 그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82나4188)에서도 1983년 11월 7일 신청인이 승소(원판결의 정정보도문 내용이 일부 변경됨)하여 그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반면 위 정정보도청구사건(82가합4734)에서는 신청인은 당초 「정정보도청구」를 소명(訴名)으로 하여 위 동아일보 게재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써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가 그 뒤 사과문의 게재 및 금 10억원의 위자료청구로 변경하였는데 당원 합의 제8부는 1984년 4월 11일 앞서 본건 기사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한국일보에 게재한 본건기사는 당원 82카27454호 정정보도 신청사건 혹은 그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원 82가합4734호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하여 합의 제8부가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발췌 게재한 것이고, 소명(訴名) 내지 사건명은 당해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한번 정해지면 청구원인의 내용 및 그 변동에 관계없이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본건기사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사건명은 정정보도이나 그 내용은 잘못된 기사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청구(사과문 게재)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도한 것임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본건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전반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본건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년 7월 13일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여 상 규

판사 이 형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문내용 : 본보 1984년 4월 15일자 11면 사회면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심증 있으면 책임 없다』 제하의 기사 중 협의회 대표자 회장이
이 씨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합니다.

이 씨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982년 11월 4일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 합의 12부(재판장 김승진 부장판사)에서도 승소, 확정되었으며 동아일보는 이미 1982년 12월 11일 11면에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읍니다.

2審 判決文

사 건 : 84나3255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항 소 인 : 이

서울

피신청인, 피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자 발행인 홍 유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명 기

변론종결 : 1984. 12. 28.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13. 선고, 84카17261 판결.

주 문 :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6단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특호활자(한자)로 우측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 중앙에 이 심장협회장 승소 확정이라는 대제목은 세로 「컷」(한자)으로 6단에 걸쳐 게재하며, 그 좌측에 『본보 84. 4. 15.

협의회 회장 이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1호활자로 2줄로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별지목록 기재의 본문내용을 5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4. 4. 15.자 한국일보 11면에 말미의 별지기사와 같이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심증 있으면 책임 없다』는 제목하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14일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 제목의 기사(1982. 5. 27.자 東亞日報 제11면에 게재된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이며 그로 인해 침해당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과문을 게재하고 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내용 외에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판단기준이 되므로 제목, 기사배치, 활자크기, 사진의 유무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나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진실성이 증명되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사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문제의 기사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된 것이 명백하고 보도기관이 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보도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10 내지 7.5센티미터, 세로7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기사에서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 8부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그 소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이었고, 신청인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심(서울민사지방법원 82

카27454) 및 2심(서울고등법원 82나4188)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양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기사는 위 법원 합의 제8부의 판결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하등의 피해를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3호증(각 신문), 소갑2호증, 소을3호증(각 판결), 소갑4호증(확정증명), 소갑7호증(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 소갑8호증(항소장), 소을1호증의 1,2(기록표지), 소을2호증(소장)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당심 제1차 변론)를 종합하면, 신청외 주식회사 東亞日報 발행의 1982. 5. 27.자 東亞日報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와이.엠.씨.에이빌딩 405호

협의회(회장 이)가 장애인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 수강생과 교사들 30여명이 협회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농성현장사진과 함께 보도되자, 신청인은 위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하여 언론기본법 소정의 중재절차를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신청(82카27454)을 하는 한편, 1982. 7. 16. 같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82가합4734)을 제기한 사실, 위 정정보도신청사건(82카27454)에서는 1982. 11. 4. 같은 법원 합의 제16부가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동년 12. 11.자 東亞日報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고 그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2나4188)에서도 1983. 11. 7. 신청인이 승소(원판결의 정정보도문 내용이 일부 변경됨)하여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반면 위 정정보도청구사건(82가합4734)에서는 신청인은 당초 「정정보도청구」를 소명으로 하여 위 東亞日報 게재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가 그뒤 사과문의 게재 및 금 10억원의 위자료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제8부는 1984. 4. 11. 앞서 본 이 사건 기사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한국일보에 게재한 이 사건기사는 위 법원 82카27454호 정정보도신청사건 및 그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법원 82가합4734

호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합의 제8부가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발췌 게재한 것이고, 소명 내지 사건명은 당초 신청인이 소장에 기재한 대로 된 것이고, 소명이나 사건명은 당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한번 정해지면 청구원인의 내용 및 그 변동에 관계없이 이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라고 한 것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그 사건명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결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기사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사건명도 사실과 같이 정정보도청구라고 표현하였고 그 내용도 잘못된 기사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청구(사과문 게재)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도한 것임을 쉽사리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전반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 18.

재판장 판사 김 문 호
판사 김 명 길
판사 현 순 도

정정보도문

본문내용 : 본보 1984. 4. 15.자 11면 사회면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심증 있으면 책임 없다』 제하의 기사 중 협의회 대표자 회장 이

씨가 東亞日報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합니다.

이 씨가 東亞日報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982. 11. 4.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인 서울고

등법원 합의 12부(재판장 김승진 부장판사)에서도 승소 확정되었으며, 東亞日報는 이
미 1982. 12. 11. 11면에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

廣告는 訂正報道請求權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30.자 판결(84카34374)

事實概要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이에 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林圭雲 부장판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인 卓씨가 基督新報에 게재된 광고의 내용은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라며 기독교신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광고는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 주장만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일 뿐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고, 또 광고는 유료인데 반해 정정보도는 무료이므로,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광고주나 언론기관을 상대로 일반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卓씨는, 基督新報(1984년 8월 25일자) 광고란에 「탁씨가 광고주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노회장 金)의 임시회의장인 수도중앙교회에 불법침입하여 회의를 방해하고 회원을 구타했다. 이 사실을 탁씨가 발행하는 <現代宗教>誌 1984년 9월호에 허위로 왜곡 보도하는 등 고의적으로 교단에 도전하였다」는 내용의 의견광고가 게재되자, 이들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임에도 基督新報는 이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그대로 게재하였으므로, 광고게재에 따른 주의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정보도하라며 1984년 8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 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4호 86면 참조).

중재결과, 쌍방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 신청인은 1984년 9월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1984년 11월 30일 청구가 기각되자 1985년 1월 11일 항소하였으나, 1985년 4월 3일 소를 취하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84카34374 정정보도

신 청 인 : 탁

서울

피신청인 : 기독교신보사 발행인 배 재 운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의 1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변론종결 : 1984. 11. 2.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사과광고문을 기독교신보 1면 아래쪽에 5단 전면의 크기로,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3호활자로, 말미의 기판명과 대표자 이름은 고딕체 2호활자로 하여 2회 게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게재시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로서 구하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4. 8. 25.자 기독교신보(제566호) 제4면 하단 광고란에 광고주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 , 노회임원 및 노회원 일동으로 된 별지2 기재 내용을 담은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기독교신보에 공표된 위 광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사과광고문(언론정정보도청구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과광고문을 정정보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의 게재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허

용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광고는 언론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30.

재판장 판사 임 규 운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별지1〉 사 과 문

본보 1984년 8월 26일자 8면 하단에 전 5단 광고로 게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주류측 평동 노회장 김 씨의 「탁 씨는 공개 사죄하라」는 광고의 내용은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라는 특정 기관의 공신력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탁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는 중요한 내용들로 그 진위를 해명해 드립니다.

1. 「국제종교문제연구소와 월간 현대종교의 대표 탁 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에 불법침입하여 3시간 40분간 난동하고 예배방해하며 집단폭행과 강단 침범하고 모략중상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회회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김 씨의 광고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중상모략임이 밝혀졌고,

2. 현대종교지의 선량하고 충직한 기자들을 「불량폭력배」로, 취재차 노회에 방문한 것을 「불법침입」 등으로 악의에 찬 표현을 하고 있음은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3. 「탁 소장의 이단시비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나 그동안 탁 소장이 이단과 사이비종파를 추적조사 규명하여 교계에 알림으로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교계

침투를 방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우리교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4. 퇴장에 불응했다거나 노회장에게 상식 이하의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조작된 주장은 평소 탁 소장의 성품이나 인격, 그리고 돈독한 신앙심으로 미루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상 몇 가지 열거한 사항 외에도 광고문 전체가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악의에 찬 욕설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날조된 것들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 그리고 탁 소장과 그 직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심대하게 훼손시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1984년 월 일

기독신보사

발행인 배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월간 현대종교

대표 탁

귀하

<별지 2>

1. 신청인은 1984년 7월 23일 하오 2시 50분경 불랑폭력배 7인등과 함께 대한 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에 불법침입하여 3시간 40분간 난동하고 예배 방해하며 집단폭행과 강단침범하고 모략중상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회 회무를 방해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노회원에게 전화로 공갈 협박하였다.

2. 신청인 일행은 본 노회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아울러 본 노회가 초청한 인사도 아니요 또한 취재허가도 한 일이 없음에도 취재자유를 부르짖고 불법으로 노회 회무처리에 개입하고 퇴장을 종용하는 노회원을 집단구타하고 도리어 공갈협박하여 집단으로 강제연행하겠다고 위협하였으니 국제종교문제연구소는 취재권(프레스 카드)이 없는 사설단체이며 기자도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사설기관의 고용원이다.

3. 자칭 교수요 목사(미국에서)인 신청인은 본 교단을 혈투는 강연을 하면서 「큰 교단 목사」는 다 교만하여 「지옥에 가니 목사들 뿐이요 정치꾼 노회장 총회장은 지옥 아랫목에 다 있더라」고 하여 교단과 목사직에 공공히 도전하는 자이다.

4. 신청인은 본 노회 임시노회의 안전에 공연히 개입하여 시시비비를 나누고 사회하

는 노회장에게 이단집단에 가서 안수를 받고 2천5백만원의 돈을 받아 먹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5. 신청인은 그가 즐겨 지적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1981년 2월 19일 목요일 집회에 가서 1시간 30분간 강의하고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라고 입에 침을 흘리며 외쳤고, 거액의 돈과 책을 판 사실을 녹화 필름이 증명하고 있으니 신청인의 이단시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6. 신청인은 노회에서 난동을 부린 후 다시 노회장에게 백주의 대로에서 포니웨곤승용차로 급질주하여 위협하고 「야 이 새끼 저주받아 돼져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펍 꺼꾸러져라」고 저주하고 달아났다.

7. 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현대종교 9월호에 장장 12페이지에 걸쳐 본 교단과 본 노회 및 노회원, 노회장을 중상모략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거기에는 52번 거짓말을 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유포시킨 바, 그 중 위 현대종교 115페이지의 교회간판이란 전혀 거짓으로서 306호의 교회교패와 406호 노회장의 주택을 복합사진술의 기교로 조작한 것이다.

8. 신청인은 음란문서 제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22차례 범죄경력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공명을 세운답시고 전국 기도원 철폐를 주장하고 신학교 난립을 막는다고 하여 각 교단이 운영하는 기존 신학교를 교단이 아닌 문교법에 묶게 하여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신학교 운영으로 전과자의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다. □

廣告는 訂正報道請求權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30.자 판결(84카34375)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임규운 부장판사)는, 1984년 11월 30일 탁 씨

가 教會聯合新報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광고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타 씨는 教會聯合新報(1984년 8월 26일자 2면 광고란)에 대한 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 , 노회임원 및 노회원 일동 명의로 타 에 대한 규탄성명 광고가 게재되자, 이 광고 중에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1984년 8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4호 89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불응, 중재가 불성립되자 1984년 9월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1984년 11월 30일 기각판결을 받았다. 타 씨는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으나, 1985년 4월 3일 이를 취하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84카34375 정정보도

신 청 인 : 타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教會聯合新報 발행인 겸 편집인

서울

변론종결 : 1984. 11. 2.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의 사과광고문을 教會聯合新報 1면 아래쪽에 5단 전면의 크기로,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3호활자로, 말미의 기관명과 대표자 이름은 고딕체 2호활자로 하여 2회 게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게재시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로서 구하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4. 8. 26.자 教會聯合新報(제834호) 제2면 하단 광고란에 광고주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 , 노회임원 및 노회원 일동으로 된 별지 2 게재내용을 담은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教會聯合新報에 공표된 위 광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사과광고문(언론정보도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과광고문을 정정보도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의 게재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 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건대, 광고는 언론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의 게재로 피해를 입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광고는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30.

재판장 판사 임 규 운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별지 1〉 사과문

본보 1984년 8월 26일자 8면 하단에 전 5단 광고로 게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주류측 평동노회장 김 씨의 「탁 씨는 공개 사죄하라」는 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라는 특정기관의 공신력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탁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는 중요한 내용들로 그 진위를 확인 해명해 드립니다.

1. 「국제 종교문제연구소와 월간 현대종교의 대표 탁 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에 불법침입하여 3시간 40분간 난동하고 예배방해하며 집단폭행과 강단 침범하고 모략중상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회 회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김 씨의 광고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중상모략임이 밝혀졌고

2. 현대종교지의 선량하고 충직한 기자들을 「불량폭력배」로, 취재차 노회에 방문한 것을 「불법침입」등으로 악의에 찬 표현을 하고 있음은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3. 「탁 소장의 이단시비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나 그 동안 탁 소장이 이단과 사이비종파를 추적 조사규명하여 교계에 알림으로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의 교계침투를 방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우리 교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4. 퇴장에 불응했다거나 노회장에게 상식 이하의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조작된 주장은 평소 탁 소장의 성품이나 인격, 그리고 돈독한 신앙심으로 미루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5. 특히 중대한 사실은 반공애국정신이 투철한 탁 소장을 공산당으로 모략한 것이다. 분단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특수상황하에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구나 공인으로 활동하는 특정인을 공산주의자로 중상함은 인권이나 명예 이전에 사활에 관계되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이 사실을 엄중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악질적인 모략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제5공화국의 지상과제인 정의사회구현과 국민화합이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부합되는 것으로 마땅히 중시되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몇가지 사항 외에도 광고문 전체가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악의에 찬 폭설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날조된 것들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 그리고 탁 소장과 그 직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심대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1984년 월 일

교회연합신보사

발 행 인 조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월간 현대종교

대표

귀하

□

〈별지 2〉

1. 신청인은 1984년 7월 23일 하오 2시 50분경 불량폭력배 7인등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에 불법침입하여 3시간 40분간 난동하고 예배 방해하며 집단폭행과 강단 침범하고 모략중상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회 회무를 방해하고 그후에도 계속하여 노회원에게 전화로 공갈 협박하였다.

2. 신청인 일행은 본 노회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아울러 본 노회가 초청한 인사도 아니요 또한 취재허가도 한 일이 없음에도 취재자유를 부르짖고 불법으로 노회 회무처리에 개입하고 퇴장을 중용하는 노회원을 집단구타하고 도리어 공갈협박하여 집단으로 강제연행하겠다고 위협하였으니 국제종교문제연구소는 취재권(프레스카드)이 없는 사설단체이며 기자도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사설기관의 고용원이다.

3. 자칭 교수요 목사(미국에서)인 신청인은 본 교단을 헐뜯는 강연을 하면서 「큰교단 목사는 다 교만하여 지옥에 가니 목사들뿐이요 정치꾼 노회장 총회장은 지옥 아랫목에 다 있더라」고 하여 교단과 목사직에 공공히 도전하는 자 이다.

4. 신청인은 본 노회 임시노회에 안전에 공연히 개입하여 시시비비를 나누고 사회하는 노회장에게 이단집단에 가서 안수를 받고 2천5백만원의 돈을 받아먹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5. 신청인은 그가 즐겨 지적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1981년 2월 19일 목요일 집회에 가서 1시간 30분간 강의하고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라고 입에 침을 흘리며 외쳤고 거액의 돈과 책을 판 사실을 녹화필름이 증명하고 있으니 신청인의 이단시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6. 신청인은 노회에서 난동을 부린 후 다시 노회장에게 백주의 대로에서 포니웨곤승용차로 급질주하여 위협하고 「야 이새끼 저주 받아 돼져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펍 꺼꾸라져라」고 저주하고 달아났다.

7. 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현대종교 9월호에 장장 12페이지에 걸쳐 본 교단과 본 노회 및 노회원, 노회장을 중상모략하는 기사를 기재하였는데 거기에는 52번 거짓말을 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유포시킨 바, 그중 위 현대종교 115페이지의 교회간판이란 전혀 거짓으로서 306호의 교회교패와 406호 노회장의 주택을 복합사진술의 기교로 조작한 것이다.

8. 신청인은 1983년 10월 19일과 동 10월 26일 일본 센다이 및 히로시마에서 일본

공산당 대약진회에 공산당 후원 회장과 공산당 위원장의 초청강사로 가서 강연하였다.

9. 신청인은 음란문서 제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22차례 범죄경력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공명을 세운답시고 전국 기도원 철폐를 주장하고 신학교 난립을 막는다고 하여 각 교단이 운영하는 기존 신학교를 교단이 아닌 문교법에 묶게 하여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신학교 운영으로 전과자의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다. □

.....

團體의 長인 個人에 關係된 報道의 訂正報道請求는 團體의 名義로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30.자 판결(84카35089)

事實概要

단체의 장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단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임규운 부장판사)는, 1984년 11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 씨가 월간 現代宗教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월간 現代宗教 1984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는 신청인 노회의 노회장인 소외 김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의 기사일 뿐이지, 단체인 신청인 노회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기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노회명의로 된 신청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 씨는, 월간 現代宗教(1984년 9월호)에 『예장합동측 P노회 이단의 음모에 휘말려!』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1984년 9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4호 94면 참조). 중재결과 중재가 불성립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84년 11월 23일 청구가 기각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84카35089 정정보도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서울

대표자 노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혁 진

피신청인 : 월간 현대종교사 발행인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의 68

변론종결 : 1984. 11. 2.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현대종교」 제1면 표지의 중간부분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호활자로, 그 우측에 『본지 1984년 9월호 예장합동측 P노회 보도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은 3호활자로 3단에 걸쳐 게재하고, 같은 「현대종교」의 목차란 다음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1호활자로, 그 내용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4호활자로 2면에 걸쳐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 월간지인 「현대종교」의 1984년 9월호의 전면표지에 「진상폭로」, 「예장합동측 P노회 이단침투 음모에 휘말려」라고 게재되고, 본문 107면부터 제115면까지에 『예장합동측 P노회 이단 음모에 휘말려!』라는 제목과, 『과연 박 집단은 합동교단에 가입될 것인가? 노회장 지시 받은 폭력전과 목사 취재기자에 폭행』이라는 부제목 아래 「1984년 7월 23일 ××교회(도봉구 수유×동 소재)에서 예장합동측 P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가 열렸는데 흑막이 있었다. 그 흑막이란 노회장 K목사가 대성교회 박 목사에 대한 노회 영입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회장 K목사는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파를 강제로 퇴장시켰다. 박 목사는 이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처분되었다. 노회장 K목사는 돈에 매수되어 이러한 박 목사를 건전한 교단에 가입시키려 음흉한 계획을 꾸민 것이다」라는 요지와 「노회장의 지시를 받은 노회원들이 현대종교지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하였다」

라는 요지와 「K목사는 인간적으로 부도덕한 인물로서 근 20년간이나 같이 살아온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륜한 행각을 했다. 통일교 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통일교 관련사건으로 전에 소속되어 있던 노회에서 징계위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구제책으로 이명을 중용받아 이명했고 목사의 주거 아파트 출입문에는 소속교단도 아닌 다른 교단 교회의 교패가 붙어 있는 등 신앙이 무절조하다. K목사는 박 목사의 중복이다. 정통보수 교단에 K목사와 같은 부실한 목사로 말미암아 여하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할 줄 믿는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기사 중 「P노회」는 신청인 노회를, 「K목사」는 소외 「김 목사」를 가리키는 것임은 편견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또는 위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기사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는 소외 박 및 신청인 노회의 노회장인 소외 김 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의 기사일 뿐이지 단체인 신청인 노회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기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 노회의 대표자인 소외 김 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단체인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이 발행한 「현대종교」 1984년 9월호에 게재된 위 기사의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여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30.

재판장	판사	임	규	운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정정보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에 대하여」

지난 1984년 9월호 현대종교 제107면 내지 제115면에 걸쳐 『예장합동측 P노회, 이단의 음모에 휘말려!』라는 제목 및 『과연 박 집단은 합동교단에 가입될 것인가?』, 『노회장 지시받은 폭력전과 목사 취재기자에 폭행』이라는 소재목 아래, 「대한 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가 1984년 7월 23일 서울 도봉구 세 있는 수도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집회한 제89회 1차 임시노회는 흑막이 있었다. 그 흑막이란 대성교회 박 씨를 노회장 김 목사가 노회 영입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노회장 김 목사는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파를 강제로 퇴장시켰다. 박 목사는 이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처분되었다. 노회장 김 목사는 돈에 매수되어 박 목사를 건전한 교단에 가입시키려 음흉한 꾀계를 꾸민 것이다」라는 요지와 「노회장의 지시를 받은 노회원들이 현대종교지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하였다」라는 요지와 「노회장인 김 목사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김 목사는 인간적으로 부도덕한 인물로서 근 20년간이나 같이 살은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륜한 행각을 했다. 통일교 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통일교 관련사건으로 전에 소속되어 있던 노회에서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구체적으로 이명을 중용받아 이명했고 김 목사의 주거 아파트 출입문에는 소속교단도 아닌 다른 교단 교회의 교패가 붙어있는 등 신앙이 무절조하다. 김 목사는 박 목사의 충복이다. 정통보수교단에 김 목사 같은 부실한 목사로 말미암아 여하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할 줄 믿는다」라는 요지 등이 기사로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대성교회 박 목사는 이단이 아니고 노회장 김 목사는 박 목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일이 없고 박 목사를 평동노회에 영입하려 한 바 없어 아무런 흑막이 있을 수 없는 집회이며, 노회장 김 목사가 회의를 독선적으로 진행한 바 없고 반대파를 강제로 퇴장시킨 사실이 없으며 비공개인 노회에 현대종교지 취재기자가 칭하는 외부인사가 참관하므로 노회장이 퇴장을 명하였으나 불응하고 현대종교지 발행인 탁 과 취재기자가 칭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침입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폭력을 자행한 사실이 있으며, 김 목사에 대한 인신공격기사 중 부도덕하다는 점은 김 목사의 전처 이 김 목사의 당뇨병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함에 불만을 품고 1979년 2월 20일 무단가출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부득이 대구지방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1981년 11월 6일자로 동원의 이혼심판을 받아 호적정리를 하고 위 이혼심판 약 1개월 후에 재혼하였던 것이므로 부도덕하다고 비판받을 이유가 없는 사실,

김 목사는 통일교의 자금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 바도 없고 통일교 관련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바 없는 사실 등이 밝혀졌으며, 특히 김 목사가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출입문에는 교회의 교패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도 출입문에 부착된 406호 사진 위에 다른 사람이 사는 306호실 출입문에 부착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일교회」의 교패사진을 교묘하게 붙여 마치 김 목사의 아파트 출입문에 교패가 붙어 있는 양 사진을 조작하여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1984년 9월호 현대종교지의 이 건 기사는 허위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請求趣旨 變更過程을 구체적으로
報道하지 않았다고 하여 被害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6. 11.자 판결(85카8825)

서울고등법원 1986. 7. 14.자 판결(85나2457)

事實概要

청구취지 변경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일보는 1985년 1월 19일자 11면 『訴訟명칭과 內容 다른 것 확인보도할 義務는 없다』, 『서울高法 抗訴기각』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고법 민사 10부(재판장 金文鎬 부장판사)는 보도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기사화할 때 판결의 내용만 정확히 게재하면 족하고, 소송의 명칭이 내용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 보도할 의무는 없다고, 원고李 씨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신청의 항소를 기각했다.李씨는 1982년 5월 27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

협의회, 불구자에

게 기술 가르쳐 준다면 회비 착복』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이 협회 회장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이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 다시 1983년 7월경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인 서울민사지법에서 패소하였다. 피신청인이 사건명칭은 <정정보도청구소송>이나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 이 사건의 판결을 1984년 4월 15일자에 『지나친 진실 입증요구는 언론자유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李씨는 다시 피신청인인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자신이 패소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고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보도내용 중 모 일간지가 『협의회, 불구자에게 기술 가르쳐 준다면 회비 착복』이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었다는 내용은 『불구자도 서러운데... 장애자에게 기술 가르쳐 준다면 회비 착복』의 잘못이며, 신청인이 모일간지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또 다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낼 때 이와 동시에 사죄광고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피신청인이 법원의 판결을 진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아 신청인협회의 운영과 활동에 장애를 가져다 주고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5호 114면 참조).

그러나 피신청인이 중재기일에 불출석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피신청인이 청구취지 변경과정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보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적 주장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85카8825 정정보도

신 청 인 : 협의회

서울

대표자 회장 이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발행인 홍유선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변론종결 : 1985. 5. 24.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4단 10센티미터 크기로, 정정보도문(訂正報道文)이라는 제목을 초호활자(한자)로 우측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10억원의 위자료 배상 처음부터 동아일보사에 청구한 사실 없다』라는 대제목을 0호활자로 2줄로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지난 『1985. 1. 19. 자 본보 11면의 「소송명칭과 내용 다른 것 확인보도할 의무는 없다」라는 보도기사 중 그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라는 소재목을 4호활자로 3줄로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5호활자로 4단에 걸쳐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당원 84카17261호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4나3255호 정정보도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중복제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제5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당원 84카17261호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4나3255호 정정보도청구사건은 피신청인 발행의 1984. 4. 15. 자 한국일보 11면에 게재되었던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입증 있으면 책임 없다』라는 제목 아래 보도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사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발행의 1985. 1. 19. 자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게재되었던 『소송명칭과 내용 다른 것 확인보도할 의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당원 84카17261호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4나3255호 정정보도청구사건과 정정신청 대상인 기사가 서로 달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1호증(신문기사)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5. 1. 19. 자 한국일보 제11면 중

양에 『소송명칭과 내용 다른 것 확인보도할 의무는 없다』라는 제목 아래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나) 신청인은,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인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협회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협회 회장 이 이 신청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일반 민사사건으로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1982. 11. 4. 신청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위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이 의 간접강제신청에 의하여 당원으로부터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고, 그후에도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과 아울러 신청인협회에 드나들면서 계속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왔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협회 회관건립계획이 좌절되고 신청인협회를 후원하려던 후원자들이 후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이 은 1983. 2.경 일반 민사사건으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위 1985. 1. 19.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위 이 이 위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기화로 다시 언론기관에 대하여 위자료를 요구한 듯이 보도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소갑제5호증,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에 추정되는 소갑제7호증(판결), 소갑제8호증(결정), 소갑제9호증(판결확정증명원), 각 공성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10호증(항소장), 소갑제13호증(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1982. 5. 27.자 동아일보 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인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협회에 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보도되자 신청인협회의 회장인 위 이 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하여 언론기본법 소정의 중재절차를 거쳐 당원 82카27454호로써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한편 1982. 7. 16 당원 82가합4734호로써 「정정보도청구」를 소명(訴名)으로 하여 위 동아일보 게재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정정보도청구사건(당원 82카27454호)에서는 1982. 11. 4. 당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인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하여 위 이 이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당원이 같은 해 12. 10. 간접강제결정을 내

리자 동아일보사가 같은 달 1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으며, 그 뒤 위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법원 82나4188호로써 1983. 11. 7. 신청인 승소판결을 하여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이 은 위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이후인 1983. 2.경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였던 당원 82가합4734호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청구취지를 사과문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하였는데 당원 합의 제8부가 1984. 4.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소명은 원래대로 정정보도청구)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5. 1. 19.자 한국일보의 「위 당원 82카27454호 정정보도 사건에서 승소하자 이씨는 또다시 83년 7월에 이 일간지를 상대로 이번에는 사과문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라는 취지의 기사는 위 이 이 위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1982. 12. 11. 이후인 1983. 2.경 당원 82가합4734호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사과문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함으로써 위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한 기사로 볼 것이며, 위 이 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과정을 일일이 보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신청인은, 위 당원 82가합4734호 사과문게재 및 10억원 위자료청구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인데도 피신청인이 위 소송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인 것처럼 보도하여 위 이 이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사건에서 일반 민사사건인 사과문게재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 이 1982. 7. 16. 제기한 당원 82가합4734호 사건은 위 이 이 「정정보도청구」를 소명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청구취지가 사과문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된 뒤에서 소명은 한번 정하여지면 청구취지 변경이 있어도 변경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소명변경없이 진행되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이 사건 1985. 1. 19.자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으나 사건 명칭은 이씨가 소장 에 기재한 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으로 정해진 채 진행되었다」고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1985. 1. 19.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6. 11.

재판장 판사 유 태 현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제1목록〉 정정보도문

그러자 이씨는 또다시 지난 83년 7월 이 일간지를 상대로 이번에는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청구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으나 사건 명칭은 이씨가 숫장에 기재한 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으로 정해진 채 진행된 이 소송에서는 이씨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가 지난해 4월 15일자에 『지나친 진실 입증 요구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패소내용을 보도하자 이씨는 자신이 패소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고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승소했는데도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사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대표자 회장은 1983년 7월 또다시 동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나 10억원 위자료 배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동아일보사가 정정보도를 내주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보도추구를 위한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결정문이 나가므로 동아일보는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1982. 12. 10. 11면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또 다시 항소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며 신청인이 운영하는 단체를 드나들며 괴롭히므로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건립하려던 세계심신장애자(자활을 위한)선도선교회관 건립이 완전 좌절하게 됨으로 본 단체를 후원하려던 후원자들이 다 물러나므로 신청인은(이씨) 1982. 7. 16. 정정보도신청과 같이 사과문 게재만을 요구했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사죄광고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정정보도 청구인

협의회

대표자 회장

〈제2목록〉

서울고법 항소기각

보도기관이 판결을 기사화할 때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발췌 게재하면 족하며 판결문상의 소송명칭과 소송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까지를 확인해 보도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는 18일 이 씨(서울 영등포구)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원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한국일보사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2년 5월 27일 모일간지에 보도된 『 협의회, 불구자에게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 이 협의회 회장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일간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내 1,2심을 통해 승소가 확정됐었다.

그러자 이씨는 또다시 지난 83년 8월 이 일간지를 상대로 이번에는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청구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으나 사건명칭은 이씨가 숫장에 기재한 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으로 정해진 채 진행된 이 소송에서는 이씨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가 지난해 4월 15일자에 『지나친 진실 입증요구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패소내용을 보도하자 이씨는 「자신이 패소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고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승소했는데도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2審 判決文

사 건 : 85나2457 정정보도

신 청 인, 항 소 인 : 협의회

서울

대표자 회장 이

피신청인, 피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발행인 홍 유 선

변론종결 : 1986. 6. 9.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6. 11선고, 85카8825 판결.

주 문 :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4단 10센티미터 크기로, 정정보도문(訂正報道文)이라는 대체목을 초호활자(한자)로 우측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10억원의 위자료 배상 처음부터 동아일보사에 청구한 사실 없다』라는 대체목을 0호활자로 2줄로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지난 「1985. 1. 19자 본보 11면의 『소송명칭과 내용 다른 것 확인 보도할 의무는 없다』라는 보도기사 중 그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라는 소제목을 4호활자로 3줄로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5호활자로 4단에 걸쳐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17261호 및 그 항소심인 당원 84나3255호 정정보도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중복 제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제5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17261호 및 그 항소심인 당원 84나3255호 정정보도청구사건은 소외 이 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 발행의 1984. 4. 15자 한국일보 11면에 게재되었던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입증 있으면 책임없다』라는 제목 아래 보도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발행의 1985. 1. 19자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게재되었던 『소송명칭과 내용 다른 것 확인 보도할 의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

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17261호 및 그 항소심인 당원 84나3255호 정정보도청구사건과는 그 신청인 및 정정신청대상인 기사가 서로 달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1호증(신문기사)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5. 1. 19자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소송명칭과 내용 다른 것 확인보도할 의무는 없다』라는 제목 아래 별지 제2호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신청인은,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협회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협회 회장 이 이 신청외 주식회사 동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일반 민사사건으로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1982. 11. 4. 신청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위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이 의 간접강제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고, 그 후에도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과 아울러 신청인협회에 드나들면서 계속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왔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협회를 후원하려던 후원자들이 후원을 중단하기에 이르러 신청인 협의회 회관건립계획마저 좌절되었기 때문에 위 이 은 1983. 2경 일반 민사사건으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사과문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위 1985. 1. 19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위 이 이 위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기화로 다시 언론기관에 대하여 위자료를 요구한 듯이 보도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소갑 제5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소갑제7호증(판결), 소갑제8호증(결정), 소갑제9호증(판결확정증명원), 공성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10호증(항소장), 소갑제13호증(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1982. 5. 27자 동아일보 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 협회에 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보도되자 신청인 협회의 회장인 위 이 이 위 동아일보사를 상대

로 하여 언론기본법 소정의 중재절차를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27454호로써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한편 1982. 7. 16. 위 같은 법원 82가합4734호로써 「정정보도청구」를 소명(訴名)으로 하여 위 동아일보 게재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정정보도청구사건(위 같은 법원 82카27454호)에서는 1982. 11. 4.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인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동아일보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하여 위 이 이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 해 12. 10. 간접강제결정을 내리자 동아일보사가 같은 달 1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으며, 그 뒤 위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항소심인 당원에서도 당원 82나4188호로써 1983. 11. 7. 신청인 승소판결을 하여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이 은 위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이후인 1983. 2경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였던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4734호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청구취지를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위 같은 법원 합의 제8부가 1984. 4.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소명은 원래 대로 정정보도 청구)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5. 1. 19자 한국일보의 위 같은 법원 82카27454호 정정보도사건에서 승소하자 이씨는 또 다시 83년 7월에 이 일간지를 상대로 이번에는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라는 취지의 기사는 그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청구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으나 사건명칭은 이씨가 숫장에 기재한 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으로 진행된…」 기사부분과 합쳐 위 이 위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1982. 12. 11. 이후인 1983. 2경 위 같은 법원 82가합4734호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함으로써 위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한 기사로 볼 것이며, 그 일자리는 다소 틀리더라도 위 이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과정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보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신청인은, 위 같은 법원 82가합4734호 사과문게재 및 10억원 위자료 청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인데도 피신청인이 위 소송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인 것처럼 보도하여 위 이 이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사건에서 일반 민사사건인 사과문게재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 이 1982. 7. 16. 제기한 같은 법원 82가합4734호 사건은 위 이 이 「정정보도청구」를 소명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청구취지가 사과문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된 뒤에서 소명은 한번 정하여지면 청구취지변경이 있어도 변경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소명 변경없이 진행되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이 사건 1985. 1. 19자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으나 사건명칭은 이씨가 소장에 기재한 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으로 정해진 채 진행된…」이라고 게재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1985. 1. 19자 한국일보에 기재된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7. 14.

재판장 판사 최 공 웅
판사 이 원 국
판사 오 세 빈

〈제1목록〉 정정보도문

그러자 이씨는 또다시 지난 83년 7월 이 일간지를 상대로 이번에는 사과문 게재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청구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으나 사건 명칭은 이씨가 소장에 기재한 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으로 정해진 채 진행된 이 소송에서는 이씨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가 지난 해 4월 15일자에 『지나친 진실 입증요구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패소 내용을 보도하자 이씨는 자신이 패소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고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승소했는데도 정정보도청구소송

에서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사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대표자 이 ○ ○ 은 1983년 7월 또 다시 동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나 10억원 위자료 배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를 내주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보도촉구를 위한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결정문이 나가므로 동아일보는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1982. 12. 10. 11면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또 다시 항소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며 신청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건립하려던 세계심신장애자(자활을 위한)선도선교회관 건립이 완전 좌절하게 됨으로 본 단체를 후원하려던 후원자들이 다 물러나므로 신청인은(이씨) 1982. 7. 16. 정정보도신청과 같이 사과문 게재만을 요구했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사죄광고 및 10억원의 위자료 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정정보도 청구인

협의회

대표자 회장

〈제2목록〉 〈1심 판결문의 제2목록과 동일〉

□

訂正報道에 기재될 內容과 原文記事에 報道된 內容이 本質的인 核心에 관련되지 못한 경우 訂正報道請求權을 行使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7. 27.자 판결(85카20576)

서울고등법원 1986. 2. 25.자 판결(85나3140)

대법원 1986. 12. 23.자 판결(86다카818)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병후 대법관)는, 신청인 金 ○ ○ (복지중학교 교장)과 동

李 (복지고등학교 교장)가 中央日報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청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中央日報는 1985년 5월 7일자 7면에 『示威 못막은 이유등으로 解任·사표 중용』, 『中·高교사 10명 1週째 斷食농성』, 『議政府 福祉중·고』, 『敎委상황실 찾아가 항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학교 소속 鄭 등 평교사 6명과 洪 등 주임교사 4명이 부당해임을 철회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며 1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는데, ▽평교사 6명은 4월 10일 사회정화위를 찾아가 동료교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진정된 뒤 이 날짜로 해임되었으며, ▽주임교사 4명은 지난 3월에 있었던 학생소요를 못막은 데 대해 간부교사로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라는 학교측의 압력에 불응하자, 직위해제 및 3개월간의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며, ▽학교측은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평교사 6명은 정식교사로 발령을 받지 못한 강사들로서 면직이 아니라 시간배정 중지여 지나지 않으며 주임교사 4명은 학생 소요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 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中央日報가 신청인들에게는 한 차례의 문의나 확인도 없이 교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사실인 양 게재하였고, 「학교측 입장」이라고 하여 게재된 것은 신청인들로서 전혀 얘기한 바 없는 사실이라며 평교사 6명은 평교사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이들은 사회정화위에 진정하였기 때문에 해임된 것이 아니라 집단 근무지 이탈 및 사유서 제출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로서 해직된 것이며, 주임교사 4명은 학생소요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보도하라고 1985년 5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6호 96면 참조).

그러나 中央日報는 게재된 기사가 모두 진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1985년 6월 4일 서울민사지법에 본건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신청인 金 은 사건 당시 이 학교 교장이 아니었고 1985년 5월 4일에야 복지중학교장에 임명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청인 金 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중재신청은 복지중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의 지위에서 제출하였으나, 법원에 대한 소는 개인자격으로 하였음), 신청인 李 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모두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시, 역시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 확정하였다.

신청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 민사부(재판장 김성일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신청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 항소를 기각했으며, 신청인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1審 判決文

사 건 : 85카20576 정정보도

신 청 인 : (1) 김

(2) 이

신청인들주소 :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동양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김태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 9

대표이사 홍진기, 이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변론종결 : 1985. 7. 12.

주 문 :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제7면 중앙부분 중 세로 8단 가로 약 4.5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1)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1호증(신문기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이 발행한 1985. 5. 7.자 중앙일보 제7면 중앙에 『시위 못막은 이유등으로 해임 사표
종용 중·고교 교사 10명 주일째 단식농성』이라는 제목 아래 「북지중학교와 북지고등
학교의 평교사 과 주임교사

등 10명이 학교측의 면직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1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평교사 6명은 4월 10일 하오 6시쯤 사회정화위원회를 찾아가 학교측이 동료교사들을 부당해임시켰다고 진정한 뒤 이날로 학교측에 의해 해임됐었다. 주임교사 홍 등 4명은 부당해임 대기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일 문수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7일까지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2, 23일 학생들이 '교장 물러가라'는 소요를 일으킨 뒤 '간부교사로서 소요를 못 막았으니 책임지라'며 사표를 내라는 학교측에 맞서 3개월간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가. 신청인들은, 첫째 위 기사 중 위 정 등 6명에 대한 보도에서, 위 정 등 6명은 강사에 불과하고 사립학교법 소정의 신분 보장을 받는 정식교사가 아님에도 평교사라고 하여 위 복지중고등학교에서 정식교사를 별 이유 없이 해임한 듯이 보도하였고, 또한 위 학교에서는 위 정 등 6명이 1985. 4. 10. 16:30경 집단으로 무단 이탈하여 그 익일 무단이탈 사실에 대하여 경위를 해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도 그들이 학교측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의 신분보장 각서와 교환하는 조건이 아니면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므로 정식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복지학원 이사장에게 그들의 해직을 요구함으로써 강사직에서 해제된 것인데도 위 기사에서는 학교측이 위 정 등 6명을 그들이 사회정화위원회에 찾아가 학교내의 일에 대하여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직한 듯이 보도하였고, 둘째 주임교사 홍 등 4명에 대한 보도에서, 학교측이 위 주임교사 4명을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해임된 양 보도하였고 가사 이들이 해임되지 않고 직위 해제와 동시에 3개월간의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학교측은 위 주임교사 4명이 주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사립학교법등 소정의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와 동시에 3개월간의 자택대기를 명하였을 뿐이며, 그들에 대하여 1985. 3. 22. 및 같은 달 23. 위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소요의 책임을 물어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거나 그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 직위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위 주임교사들에 대하여 위 학생소요를 막지 못하였으니 사직서를 제

출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들이 이를 거부하자 직위해제 및 3개월간의 자택대기를 명한 듯이 보도하였고, 셋째, 위 정 등 6명은 1985. 5. 1.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홍 등 4명은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4.까지 농성하였을 뿐인데 위 기사에서 1주일째 계속 농성하고 있다고 과장 보도함으로써, 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복지중고등학교의 교장인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1985. 5. 4. 위 복지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각 임명되었으므로 위 사건 발생 당시에는 교장의 직에 있지 아니하여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기사에서 위 정 등 6명이 사회정화위원회에 가서 진정하였기 때문에 위 학교측이 위 정 등을 해임한 듯이 보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학교측이 홍 등 4명에 대하여 위 학생소요를 못 막았으니 책임이라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으며, 위 홍 등이 이에 불응하자 직위해제 및 3개월간의 자택대기를 명한 것과, 위 정 등 10명이 1주일째 농성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고, 위 기사의 끝부분에서 학교측 입장이라고 하여 위 정 등 6명이 강사라고 게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제3호증(복지중고등학교 사안 수습 및 운영정상화 대책추진 상황), 소을제4호증(복지중고등학교 정상화대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정 등 6명이 해직되고 위 홍 등 4명이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명령을 받은 1985. 4.경에는 신청외 인 이 복지중·고등학교의 교장이었고, 신청인 이 가 위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복지학원의 이사장이었는데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 안 이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1985. 5. 4. 신청인 김 이 복지중학교 교장,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던 신청인 이 가 복지고등학교 교장에 각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따라서 신청인 김 은 그가 복지중학교 교장에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보도한 이 사건기사에 의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김 의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신청인 이 는 위 기사에서 보도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있었으므로 이 사건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위 정 등 6명에 대한 기사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소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에서 「평교사 정 등 6명은 4월 10일 하오 6시쯤 사회정화

위원회를 찾아가 학교측이 동료교사들을 부당해임시켰다고 진정한 뒤 이날짜로 학교측에 의해 해임됐었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다음에 이어 「교사들은 수업을 모두 끝낸 뒤 하오 5시 30분쯤 학교측에 알리고 퇴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며 이들을 해임했다」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기사의 끝부분에 「학교측 입장」이라 하면서 「강사 6명은 시간강사였기 때문에 면직이 아니라 시간배정 중지뿐이다. 이들은 퇴근시간보다(하오 6시) 30분 앞당겨 자리를 비워 이를 추궁했을 뿐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정 등 6명을 평교사라고 지칭하였으나 마지막 부분에 학교측 입장이라고 하면서 위 정 등 6명이 강사라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위 「평교사」라는 것은 위 홍 등 4명이 주임교사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주임교사가 아닌 위 정 등 6명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명칭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기사가 위 정 등 6명이 강사가 아니라 정식교사라고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신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정 등 6명의 교사는 정식교사가 아니라 아직 조건부 임용기간에 있는 교사일 뿐」이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함은 이 사건기사에서 사실적 주장으로 보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기사의 사회정화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위 학교분규의 실태를 시간의 선후에 따라 사실적으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 학교 재단측의 해직 사유가 위 정 등 6명이 사회정화위원회에 찾아가 동료교사의 부당 해임사실을 진정하였음을 그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보도한 기사로는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 또한 이 사건기사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일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하는 「1985. 4. 10. 16:30 집단적으로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가 익일 학교로부터 그 경위를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권자에 의하여 해임당하였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기사에서 학교측 입장으로 보도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는 이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홍 등 4명에 대한 기사에 관하여 보면, 위 기사내용 중에 위 학교측이 위 주임교사 4명을 해임시켰다고 보도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위 기사내용은 학교측이 위 주임교사 4명에 대하여 직위 해제와 동시에 3개월간의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에서 본 소을제3,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4,6,7,9호증의 각 1(각 인사발령통지서), 같은 호증의 각 2(각

처분사유 설명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제2호 증(복지 중고등학교 분규내용 및 해직교사에 대한 처리결과), 소을제6호증의 3 내지 6(각 호소문)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85. 3. 22. 같은 달 23. 양일간에 복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시 위 학교 교장이던 신청외 안 의 퇴진등을 요구하며 소요사태를 일으켰는데, 학교측은 위 홍 등 4명의 주임교사에 대하여 간부교사로서 위 소요사태를 막지 못하였고, 또한 사후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한 사실, 그런데 위 홍 등 4명이 사직서의 제출을 거부하자 학교측은 위 주임교사들이 과거 직무에 관하여 학교측에 제출한 바 있는 시말서에 기재된 사유와 위 소요사태에 관련 사후수습에 노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박 에 대하여는 1985. 4. 10.자로, 나머지 주임교사 3명에 대하여는 같은 달 24.자로 각 직위해제 및 3개월간의 자택대기를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신청인 이 의 위 주임교사 4명에 대한 「해임」보도 주장이 이유 없음은 물론 위 학교측이 위 홍 등 4명의 주임교사에 대하여 위 학생소요의 책임을 물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직위해제한 것도 아니며 다만 그들이 주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를 명하였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농성기간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소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해직 및 직위해제, 대기명령 등에 항의하며, 1985. 5. 1.부터 위 정 등 6명은 원도봉산 옥류산장에서, 위 홍 등 4명은 의정부시 소재 문수사에서 각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같은 달 6일경에 위 각 장소에서 나와 수원시 소재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학교측의 해직등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같은 달 9일경 까지도 계속하여 농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소을 제2호증의 일 부기재 및 증인 김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 없는 바, 따라서 이 사건기사에서 위 정 등 10명이 1985. 5. 1.부터 이 사건기사가 실린 같은 달 7.까지 1주일 째 계속 단식 농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씩 단식 농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보도 또한 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7. 27.

재판장 판사 유 태 현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발행의 1985년 5월 7일자 중앙일보 7면 중앙에 『시위 못막은
이유등으로 해임 사표종용 중·고교사 10명 1주일째 단식농성』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
중학교와 복지고등학교의 평교사 등 10명이 학교측의 면직철회를 요구하면서 1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평교사 정 등 6명은 4월 10일 하오 6시쯤 사회정
화위원회를 찾아가 학교측이 동료교사들을 부당해임시켰다고 진정한 뒤 이 날로 학교측
에 의해 해임됐었다. 또 주임교사 홍 등 4명은 부당해임·대기발령철회를 요구하
며, 지난 1일 문수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7일까지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3월 22. 23일 학생들이 교장 물러가라는 소요를 일으킨 뒤 간부교사로서 소요를
못 막았으니 책임지라며 사표를 내라는 학교측에 맞서 3개월간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
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 등 6명의 교사는 정식의 교사가 아니라 아직 조건부 임용기간에 있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1985. 4. 10. 16:30.경 집단적으로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가 익
일 학교로부터 그 경위를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화위원회의 결
의를 거쳐 임용권자에 의하여 해임당하였다. 또 홍 등 교사 4명은 주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1985. 4. 10.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또는 학교법
인 복지학원의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용권자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
지 않음과 동시에 3개월간의 대기를 명령받았다.

그러자 정 등 교사 10명은 1985. 5. 1. 단식 농성을 벌였다. 따라서 복지중학교
와 복지고등학교가 정 등 조건부 임용기간 중의 교사 6명과 홍 등 주임교사 4명
에 대하여 한 신분조치는 법정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고 사회정화위원회를 찾아가 진정

한 뒤 해임되었다거나 간부교사로서 소요를 못 막았으니 책임지라며 사표를 중용한 끝에 해임되고 1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인 양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 김

의정부시

이

위 같은 곳



2審 判決文

사 건 : 85나3140 정정보도

신 청 인 : 김

의정부시

이

위와 같음.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김태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

대표이사 홍진기, 이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변론종결 : 1986. 2. 4.

1 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7. 27 선고, 85카20576 판결.

주 문 :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및 항소의 취지 : 신청인들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될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의 7면 중앙부분에 세로 8단, 가로 약 4.5센티미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인 「정정보도문」은 0호 활자로 우측 4단에 걸쳐, 정정보도의 내용 및 신청인의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

하였다.

이 유 :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85. 5. 4.에야 복지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각 취임하였으므로, 뒤에 실시하는 바와 같이 그 취임 전에 발생한 일에 관한 신문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교장으로 각 취임한 이후인 1985. 5. 7.에 발행된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없다.

2. 피신청인 발행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 1985. 5. 7.자 7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시위 못 막은 이유등으로 해임·사표 종용.

중·고 교사 10명 1주째 단식 농성.

의정부 복지중·고 교위상황실 찾아가 항의.

의정부 복지중·고교 평교사와 주임교사 등 10명이 학교측의 면직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1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의정부 문수사와 원도봉산 옥류산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이들은, 7일 각각 농성장소에서 나와 수원의 경기도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학교측의 면직조치 철회와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단식농성이 계속되면서 박 교사등 3명은 기력을 잃고 병원의 응급치료를 받았다.

평교사 : 지난 1일 단식을 시작한 교사는 :

교사 등 6명.

이들은 4월 10일 하오 6시쯤 사회정화위를 찾아가 학교측이 동료교사들을 부당 해임시켰다고 진정한 뒤 이 날짜로 학교측에 의해 해임되었다.

교사들은 수업을 모두 끝낸 뒤 하오 5시 30분쯤 학교측에 알리고 퇴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이들을 해임했다.

이들은 옥류산장 단칸방 벽에 「부당해임 즉각 철회」, 「교육의 정상화」, 「교권확립」, 「관선이사 파견」 등 4가지 조건을 써 붙여 놓았었다.

이들은 6일 하오 2시쯤 경기도 교위를 찾아가다가 교위측에 의해 하오 11시 20분쯤 탈진한 이 교사가 수원도립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주임교사 : 홍 고교학생주임), 박 중학학생주임), 최 연

구주임), 송 (새마을주임) 교사 등 4명은 부당해임 대기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일 문수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7일까지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2·23일 학생들이 「교장 물러가라」는 소요를 일으킨 뒤 「간부교사로서 소요를 못 막았으니 책임지라」며 사표를 내라는 학교측에 맞서 3개월간 「자택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것.

학교측 입장: 강사 6명은 시간강사였기 때문에 면직이 아니라 시간 배정중지뿐이다. 이들은 퇴근시간보다(하오 6시) 30분 앞당겨 자리를 비워 이를 추궁했을 뿐이다.

주임교사 4명은, 학생들이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데도 이를 막지 못해 직위해제조치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신문기사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별지 정정보도문과 같은 기사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가. 평교사라고 표현된 6명은 교사가 아니라, 조건부 임용의 강사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나. 위 6명이 1985. 4. 10. 근무시간 중인 16:30분께 집단적으로 직장을 무단이탈하였으므로, 다음날 학교측으로부터 그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곧 강사직에서 해직된 것이다. 이들이 사회정화위원회에 찾아갔었는지는 학교측에서 모르고 있었다.

다. 4명의 주임교사들은,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태도의 불성실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58조의2, 국가공무원법 73조의2 1항 2호 및 3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와 동시에 3개월간 대기를 명한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 6명의 강사는 1985. 5. 1. 저녁부터 옥류산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5. 5. 저녁에 중단하였고, 4명의 주임교사들은 1985. 5. 1부터 5. 4.까지 문수사에서 단식농성하였을 뿐이다.

4.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론바 반론권)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의 반대사실의 주장을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위 기사에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학교측의 기사도 게재되었음은, 이미 실시한 바와 같다.

또 1심 중인 이승곤의 일부 증언에다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측에서는 교사들의 단식농성에 관한 일을 취재한 다음, 신청인측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

하여 복지증·고등학교를 찾아 갔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기에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찾아가서 그 동안의 분규를 조사 또는 감사하여 밝혀진 신청인측의 주장을 발췌하여 위에서 말한 학교측 입장의 기사도 게재 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1심 증인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 하며, 그밖에 이를 뒤집을 자료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측에서 반대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신청인측으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측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내용의 기사도 간접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한 특단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항변은 이유있다.

결국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2. 25.

재판장 판사 김 성 일
판사 이 홍 복
판사 최 형 기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발행의 1985년 5월 7일자 중앙일보 7면 중앙에 『시위 못 막은
이유등으로 해임, 사표종용 중·고 교사 10명 1주일째 단식농성』이라는 제목 아래 북
지중학교와 북지고등학교의 평교사

과 주임교사 등 10명이 학교측의 면직철회를 요구하면서 1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평교사 정 등 6명은 4월 10일 하오 6시쯤 사회정화위를 찾아가 학교측이 동료교사들을 부당해임시켰다고 진정한 뒤 이날로 학교측에 의해 해임됐었다. 또 주임교사 홍 등 4명은 부당해임, 대기발령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일 문수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7일까지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

난 3월 22, 23일 학생들이 「교장 물러가라」는 소요를 일으킨 뒤 「간부교사로서 소요를 못 막았으니 책임지라」며 사표를 내라는 학교측에 맞서 3개월간 「자택대기」발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 등 6명의 교사는 정식의 교사가 아니라 아직 조건부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1985. 4. 10. 16:30분경 집단적으로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가 익일 학교로부터 그 경위를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권자에 의하여 해임당하였다. 또 홍 등 교사 4명은 주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1985. 4. 10.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또는 학교법인 복지학원의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용권자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3개월간의 대기를 명령받았다. 그러자 정 등 교사 10명은 1985. 5. 1 단식농성을 벌였다. 따라서 복지중학교와 복지고등학교가 정 등 조건부 임용기간 중의 교사 6명과 홍기상등 주임교사 4명에 대하여 한 신분조치는 법정사⁶⁾를 근거로 한 것이고 사회정화위를 찾아가 진정한 뒤 해임되었다거나 간부교사로서 소요를 못 막았으니 책임지라며 사표를 증용한 끝에 해임되고 1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인 양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985. 6. .

정정보도 신청인 : 김

의정부시

이

위 같은 곳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86다카818 정정보도

신 청 인, 상 고 인 : 1. 김

의정부시

2. 이

의정부시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피신청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 9

대표이사 홍 진 기, 이 종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성 철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 2. 25. 선고, 85나3140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신청인 발행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 1985. 5. 7.자 7면에 그 판시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나서 신청인들의 위 원문기사에 대한 그 판시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 내용과 이에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위 원문기사에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학교측 입장의 기사도 게재되었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측이 교사들의 단식농성에 관하여 취재를 한 다음 신청인들측의 주장을 들어 보기 위하여 학교에 찾아갔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전화를 걸어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서 부득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찾아가서 그 동안의 분규를 조사 또는 감사하여 밝혀진 신청인들측의 주장을 발췌하여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측에게 사실대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신청인들측으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들측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기사도 간접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3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취지는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장하되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함으로써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는 위축을 아울러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중에는 정정보도에 기

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문기사와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유 및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측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으로 항의 농성한 사실과 그 무렵 학교측에서 그들을 해임하거나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이 사건의 본질적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문기사와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중 일부의 시간강사를 평교사로 하고, 그들이 사회정화위원회에 간 사실을 학교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진정한 뒤에 해임된 것으로 하였다거나 그 농성기간을 몇일 달리한 부분들은 위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거기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원문기사에는 학교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기사도 게재되어 있고 또 위 취재와 경위가 그 판시와 같다면 결국 이 사건 신청인들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신문보도에 그 판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특별한 사정을 신청인들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 바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체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12. 23.

□

재판장	대법관	이	병	후
	대법관	오	성	환
	대법관	이	준	승
	대법관	윤		관

記者가 造作한 手記를 假名으로
報道했다라도 特定人의 人的事項과 일치하면
名譽毀損이 되므로 訂正報道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9. 26.자 판결(86카28755)

서울고등법원 1987. 3. 18.자 판결(86나409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는 신청인 와 피신청인 中央日報社(여성中央)의 정정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신청인 中央日報社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

위 신청인은, 中央日報社가 월간 「여성中央」 6월호에서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평소에 공부를 잘하면서도 전체 1등의 압박, 주위의 기대와 자기 스스로의 욕구가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되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중3학생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회고하는 내용의 수기를 보도하자, 이에 대해 「신청인의 2남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자살인지 실족사인지 불명이고, 또 신청인이 기자와 면담하거나 수기를 쓴 적이 없는데 가명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작성한 수기인 것처럼 허위보도하였다며 사실대로 정정하라」고 1986년 6월 17일 중재신청을 하였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22호 77면 참조).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성립되었으며, 신청인은 1986년 7월 7일 서울민사지법에 제소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김주상 부장판사)에서는 수기 필자의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이 신청인과 일치하여 비록 필자의 성명과 사망한 학생의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알거나 위 사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심판결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고 항소하자, 간접 강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 中央日報社는 여성中央 1987 1월호 표지에 「정정보도문게재」라는 표시를 하고 29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1審 判決文

사 건 : 86카28755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변론종결 : 1986. 9. 5.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여성중앙의 앞표지 우측 하단부분에 고딕체 1호활자로 「정정보도문 게재」라고 가로로 표시하고, 위 여성중앙의 목차란에 고딕체 1호활자로 「본지 6월호의 중3생 어머니수기에 대한 정정보도」라고 가로로 표시하고 287면부터 293면까지 사이의 한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상단 중앙부분에 고딕체 특호활자로 정정보도 내용과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명조체 5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앞표지 우측 하단 부분에 『1등 압박에 죽음 부른 중3생 어머니 육필수기』라는 제목이 게재되고 목차 중 애독자 체험수기 특선란에 『1등 압박속에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라는

제목이 게재되고 위 제목에 관한 기사로서 287면부터 293면까지에 걸쳐서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등의 제목 아래 이현선(45세 강남구 도곡동)의 이름으로 필자는 대학생 아들과 중학교 3년생인 쌍둥이 남매 정훈이와 정은이의 어머니인데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한 정훈이가 주위의 기대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성적에 지나친 신경을 쓰면서 불안해 하다가 학교 시험 전날인 1986년 5월 7일 저녁식사 중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필자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맨 윗층에서 투신 자살하였고 필자는 자식들에게 평소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수기가 게재되고 기사 중간에 고민하는 듯한 여자 사진 4장이 삽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3호증(주민등록등본), 소갑4호증의 3,4(각 중재조서), 5(시정권고), 6(명예훼손 내용), 소을1호증의 1,2, 소을3호증의 1,2(각 신문기사), 공성부분의 성립과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소갑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서울

12동 1502호에 살고 있는 45세의 주부로서 대학생 아들과 중학교 3학년생인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인데 쌍둥이 중 이 1986년 5월 7일 19:30경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위 사실이 1986년 5월 9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신청인은 위 여성중앙에 게재된 수기를 쓰거나 여성중앙 기자와 면담한 일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앙 기자가 위 수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여성중앙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신청인이 위 수기로 인하여 피해받았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수기는 신청인 가 아닌 이현선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고 기사 속의 사진도 신청인과 관계없는 사람의 사진이며 사망한 학생의 이름도 신청인의 아들인 최 으로 표시하지 않고 정훈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기가 게재될 무렵에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위 수기를 썼다고 오인될 염려가 없으니 신청인은 피해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수기의 필자의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아파트 맨 윗층에 거주하는 점 등이 신청인과 일치하여 비록 필자의 성명과 학생의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였더라도 신청인을 알거나 위 사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정기간행물인 여성중앙에 게재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신청인은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반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수기는 신청인이 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자살하였다는 기사내용이나 신청인이 평소에 성적을 강조하였다는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 중 신청인이 위 수기를 쓰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소을1호증의 1, 2, 소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기내용을 반박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여성중앙의 앞표지와 목차란에 주문기재와 같은 제목 및 그 내용 중에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9. 26.

재판장 판사 김 주 상
판사 이 재 환
판사 김 용 덕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287면부터 293면까지에 걸쳐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등의 제목 아래 이현선(45세 강남구 도곡동)의 이름으로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한 필자의 아들이 주위의 기대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성적에 지나친 신경을 쓰면서 불안해 하다가 학교시험 전날인 1986. 5. 7. 저녁식사 중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필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맨 윗층에서 투신 자살하였고 필자는 자식들에게 평소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수기가 게재되었다. 위 수기는 진 가 가명을 사용하여 쓴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되어 있으

나 진 는 위와 같은 수기를 쓰거나 여성중앙 기자와 면담한 일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앙 기자가 일방적으로 위 수기를 임의로 창작하여 육필수기인 것처럼 게재한 것이다.

또한 위 수기내용도 사실과 다른 바 진 의 아들은 저녁식사 후 베란다에서 체조를 하다가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모르나 추락한 것이고 진 가 자식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일은 없으며 기사 중간에 삽입된 사진들도 진 과 관계없는 것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決 定 文

사 건 : 86타24988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채 권 자 : 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채 무 자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86카28755호 정정보도게재 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여성중앙의 앞표지 우측 하단부분에 고딕체 1호활자로 「정정보도문 게재」라고 가로로 표시하고 위 여성중앙의 목차란에 고딕체 1호활자로 「본지 6월호의 중3생 어머니 수기에 대한 정정보도」라고 가로로 표시하고 287면부터 293면까지 사이의 한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상단 중앙 부분에 고딕체 특호활자로 정정보도내용과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명조체 5호활자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항의 여성중앙 발행일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986. 12. 18.

재판장 판사 김 주 상
판사 이 재 환
판사 김 용 덕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287면부터 293면까지에 걸쳐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등의 제목 아래 이현선(45세 강남구 도곡동)의 이름으로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한 필자의 아들이 주위의 기대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성적에 지나친 신경을 쓰면서 불안해 하다가 학교시험 전날인 1986. 5. 7. 저녁식사 중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필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맨 윗층에서 투신 자살하였고 필자는 자식들에게 평소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수기가 게재되었다. 위 수기는 진 가 가명을 사용하여 쓴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되어 있으나 진 는 위와 같은 수기를 쓰거나 여성중앙 기자와 면담한 일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앙 기자가 일방적으로 위 수기를 임의로 창작하여 육필수기인 것처럼 게재한 것이다.

또한 위 수기내용도 사실과 다른 바 진 의 아들은 저녁식사 후 베란다에서 체조를 하다가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모르나 추락한 것이고 진 가 자식들에게 평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일은 없으며 기사 중간에 삽입된 사진들도 진 와 관계없는 것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2審 判決文

사 건 : 86나4096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피항소인 : 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신청인, 항 소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변론종결 : 1987. 2. 25.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9. 26. 선고 86카28755 판결.

주 문 :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여성중앙의 표지에 고딕체 1호활자로 『정정보도문 게재』라는 제목을, 목차란에 고딕체 0호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고딕체 1호활자로 『본지 6월호의 중3생 어머니 수기에 대한 정정보도』라는 소제목, 287면부터 293면까지 사이의 한면의 상단 중앙에 고딕체 특호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그 하단에 고딕체 1호활자로 『본지 1986년 6월호에 실린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라는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라는 소제목과 명조체 5호활자로 별지 제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항소취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앞표지 우측하단 부분에 『1등 압박에 죽음 부른 중3생 어머니 육필수기』라는 제목이, 목차 중 애독자 체험수기 특선란에 『1등 압박속에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라는 제목이, 각 게재되고, 위 제목에 관한 기사로서 287면부터 293면까지에 걸쳐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등의 제목하에 이현선(45세, 강남구 도곡동)의 이름으로 위 수기의 필자는 대학생

인 아들 정철이와 중학교 3학년인 쌍둥이 남매 정훈이와 정은이의 어머니인데,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한 정훈이가 주위의 기대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성적에 지나친 신경을 쓰면서 불안해 하다가 학교시험의 하루전인 1986. 5. 7. 저녁식사 중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필자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맨 윗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고, 필자는 자식들에게 평소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수기가 게재되고, 위 기사 중간에 고민하는 듯한 신청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 사진 4장이 삽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소갑제4호증의 3,4(각 증재조서), 5(시정권고), 6(명예훼손내용), 소을제1호증의 1,2, 소을제3호증의 1,2(각 신문기사)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6. 6 당시 45세의 주부로서 남편인 신청외 과 함께 서울특별시 의 맨 윗층인 1502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생인 아들 신청외 과 중학교 3학년생인 쌍둥이 남매 신청외 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위 쌍둥이 중 남자인 이 1986. 5. 7. 19:30경 위 아파트의 15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1986. 5. 9. 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위 사망에 대하여 보도된 사실, 신청인은 위 여성중앙에 사망한 위 최지성에 대한 수기를 쓰거나 위 여성중앙의 기자와 이에 관하여 면담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위 여성중앙의 기자가 위와 같은 제목하에 45세이고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맨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선이라는 가명으로 위 여성중앙에 게재한 사실이 소명되고 달리 반대 소명없다.

그렇다면 위 이현선이라는 가명으로 위 여성중앙에 게재된 수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신청인의 연령, 자녀의 수와 학년, 신청인이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의 맨 윗층에 거주하는 점, 신청인의 쌍둥이 남매 중 남자인 중학교 3학년이 저녁식사 중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떨어져 사망한 점 등이 일치하여 피신청인이 위 여성중앙에 그 필자의 성명과 그의 아들인 사망한 중학교 3년생의 성명을 다르게 게재하여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알거나 그의 아들인 위 의 사망이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은 신청인 자신이 그의 아들의 사망에 대하여 위 수기를 쓴 것이라고 오인하기에 넉넉하다고 할 것이므로(피신청인은 위 수기는 신청인이 아닌 이현선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고 기사 중간에 삽입된 사진도 신청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것이며, 사망한 중학교 3학년생의 이름도 신청인의 아들인 위 기 아

닌 정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수기가 게재된 무렵에 유사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위 가명을 사용하여 위 수기를 썼다고 오인될 염려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여성중앙에 게재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한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정정보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에 성적을 강조하였고, 그의 아들이 자살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됨에 반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위 수기의 내용 모두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수기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울제1호증의 1, 2, 소울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만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과 크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발행한 위 여성중앙에 게재된 위 수기의 내용과 크기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 여성중앙의 앞표지 우측 하단에 고딕체 1호활자로 가로로 하여 『정정보도문 게재』라는 제목을, 위 여성중앙의 목차란에 고딕체 1호활자로 가로로 하여 『본지 6월호의 중3생 어머니 수기에 대한 정정보도』라는 목차를, 287면부터 293면까지 사이의 한면의 상단 중앙부분에 고딕체 특호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그 아래부분에 명조체 5호활자로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과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각 게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3. 18.

재판장	판사	정	만	조
	판사	조	용	무
	판사	오	용	호

〈별지 제1〉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287면부터 293면까지에 걸쳐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기』,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등의 제목 아래 이현선(45세, 강남구 도곡동)의 이름으로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한 필자의 아들이 주위의 기대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성적이 지나친 신경을 쓰면서 불안해 하다가 학교시험 전날인 1986. 5. 7. 저녁식사 중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필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맨 윗층에서 투신자살하였고, 필자는 자식들에게 평소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수기가 게재되었다. 위 수기는 가명을 사용하여 쓴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되어 있으나 진 는 위와 같은 수기를 쓰거나 여성중앙 기자와 면담한 일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앙 기자가 일방적으로 위 수기를 임의로 창작하여 육필수기인 것처럼 게재한 것이다.

또한 위 수기내용도 사실과 다른 바 진 의 아들은 저녁식사 후 베란다에서 체조를 하다가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모르나 추락한 것이고 진 가 자식들에게 평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일은 없으며 기사 중간에 삽입된 사진들도 진 와 관계없는 것이다.

정정보도신청인

〈별지 제2〉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인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287면부터 293면까지에는 『애독자체험수기 특선』, 『그대의 밤을 지키는 아픔 촛불이 되어』, 『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한 중3생 어머니수기』,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라는 등의 제목하에 1986. 5. 7. 자기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중3생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평소에 아들에게 성적을 강조하며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던 자신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수기가 게재되었습니다. 비록 필자의 이름은 「이현선」이라는 가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필자의 나이(45세), 주소(강남구 도곡동), 주거지(아파트), 장남이 재학중인 학교(인대), 가족 구성의 특성(아들, 딸 쌍둥이) 등의 점으로 보아 본인인 진 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

가 「이현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수기를 쓴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 는 위와 같은 수기를 쓴 일이 전혀 없음은 물론 여성중앙지 기자와 위 사고에 관하여 인터뷰조차 한번 한 일이 없는데 여성중앙측에서 신문 기사를 보고 일방적으로 창작한 기사를 욕필수기인 것처럼 게재한 것입니다. 또한 수기내용 중 진 의 아들이 식사 중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 투신하였다는 것과 진 가 자식들에게 항상 성적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진부자의 아들은 저녁식사 후 베란다에서 체조를 하다가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모르나 추락한 것이고 진 의 자식들은 모두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 진 가 자식들에게 평소에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기사 중간 중간에 게재된 사진들도 진 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정정보도신청인

□

一般記事形式의 報道이든, 讀者投稿形式의 報道이든 그 形式을 不問하고 訂正報道請求의 對象이 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자 판결(87카40175)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청인 명 과 피신청인 (주)치학신보사(「현대치학」)의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취재하여 기사화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투고한 글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신청인은 현대치학紙 1987. 7. 10.자 제3면 하단부분의 「현미경」란 및 1987. 7. 24.자 제3면 우측 상단부분의 「 칼럼」란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담당이사가 평상시에 선배도 몰라보고 우쭐대기만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기를 생활화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감히 남의 큰 공로를 그다지도 깔고 뭉갤 수 있을까 아무리 감투가 좋

아 아무나 뒤집어 쓰고 좌충우돌 마구 날뛰는 꼴이 가관스럽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하자, 신청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담당이사는 신청인을 지칭한 것이며,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중재신청을 하였다(중재신청 내용 「언론중재」 통권 제26호 103면 참조).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성립되었으며, 신청인은 1987. 8. 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하여 1987. 12. 11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신청인이 1심 판결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1988. 2. 19자 현대치학紙에 1심 판결문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988. 2. 23 항소를 취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87카40175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명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광 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치학신보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143

대표이사 서 정 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성 환

변론종결 : 1987. 11. 27.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현대치학」 제8면 우측 상단부분 중 세로 3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4호 고딕체활자로, 정정보도내용과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명조체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피신청인이 격주로 발행하는 현대치학 신문 1987. 7. 10.자 제3면 하단부분의 「현미경」란 및 1987. 7. 24.자 제8면 우측 상단부분의 「칼럼」란에 대한 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담당이사가 평상시에 선배도 몰라보고 우쭐대기만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기를 생활화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감히 남의 큰 공로를 그다지도 깔고 뭉

겔 수 있을까 아무리 감투가 좋아 아무나 뒤집어 쓰고 좌충우돌 마구 날뛰는 꼴이 가관스럽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게재된 사실, 신청인이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담당이사로서 동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의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1호증의 1-3, 소갑제2호증, 당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중재신청사건기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각 보도내용 중의 담당이사라는 표현은 신청인을 지칭하고 따라서 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위 보도들이 피신청인이 직접 취재하여 기사화한 것이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회원이 피신청인에게 투고한 글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는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그 보도의 형식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위 보도의 내용이 전부 진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소명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 치의신보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6차 정기 대의원 총회와 관련하여 부당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또 편집상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치의신보의 제호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무분별한 처사를 하여 치과관계 전문지인 현대치학에서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2호증(치의신보), 소을제1호증(무등치의보), 소을제2호증(치의신보)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6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1987. 4. 18. 광주직할시 치과의사회의 후원으로 광주에서 열렸는데 같은 달 25.자 치의신보가 『정기총회 낙수』라는 제목으로 위 대의원 총회의 진행과정, 프로그램의 내용, 성과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광주직할시 치과의사회 기관지인 무등치의보가 치의신보의 위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 위 치의신보 제1면의 편집에 있어서 「치의신보」라는 제호 위에 광고주가 표시되도록 하여 발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현대치학에 게재된 위 보도

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2. 11.

재판장 판사 박 만 호
판사 백 창 훈
판사 강 형 주

정정보도문

본지 1987. 7. 10.자 「현미경」란 및 1987. 7. 24.자 「칼럼」란에 대한치과 의사협회 치의신보 담당이사가 평상시에 선배도 몰라보고 우쭐대기만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기를 생활화하지 않은 다음에야 감히 남의 큰 공로를 그다지도 깔고 뭉갤 수 있을까 아무리 감투가 좋아 아무나 뒤집어 쓰고 좌충우돌 마구 날뛰는 꼴이 가관스럽다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하였는데 위 보도 중 치의신보 담당이사는 명 씨를 지칭한 것으로서 위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1987. 12. .

정정보도 신청인 명



게재된 記事중 申請人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眞實이라고 立證할 근거가
없으므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3.자 판결(88카39283)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법 제16부(재판장 金憲武 부장판사)는 1989년 1월 13일 파스퇴르유업

(주)가 中央日報社를 상대로 낸 두건의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中央日報에 실린 기사로 인해 파스퇴르유업측이 피해를 입은 데다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中央日報측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여 파스퇴르유업(주)의 신청을 인용했다.

中央日報는 1988년 6월 11일자, 22일자, 29일자에 『파스퇴르우유 부도덕 상행위 말썽, 영양가 논쟁 7개월 상대방 것은 모두 가짜 악선전』, 『파스퇴르우유 너무 비싸다』, 『파스퇴르유업 집 유권역 어기고 마구 사들여』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파스퇴르유업(주)는 中央日報의 기사들이 일방적인 기사로 모략기사라며 1988년 7월 9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 30호 79면에 참조).

이에 파스퇴르유업(주)는 中央日報를 상대로 위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 中央日報社가 1심 판결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자 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는 판결에 의한 집행을 하기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中央日報 1989년 3월 4일자 15면, 1989년 3월 6일자 14면에 판결내용대로 각각 보도했다.

判 決 文

사 건 : 88카39283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1988. 12. 23.

-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제15면의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 지면에 세로 3단, 가로 약 9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4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우측에 3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은 본문활자로 그 좌측에 3단에 걸쳐,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9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1단에 걸쳐 각 세로로 게재하고, 그 다음날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제14면의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 지면에 세로 3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5목록 기재 정정보도를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우측에 3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은 본문활자로 그 좌측에 3단에 걸쳐,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9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1단에 걸쳐 각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 제15면의 기사란 중 우측 최상단에 별지 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파스퇴르 우유, 유질 개선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되 제목 제1행 『파스퇴르 우유』는 1단반 크기의 겹으로, 제목 제2행 『유질 개선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은 특호활자로, 기사는 본문활자로, 지면크기는 5단으로 하여 1회 게재하고, 그 다음날 위 신문 제14면의 기사란 중 우측 최상단에 별지 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파스퇴르우유 기존 우유와 영양가가 다르다』는 제목으로 게재하되, 제목 제1행 『파스퇴르우유』는 1단반 크기의 겹으로, 제목 제2행 『기존 우유와 영양가가 다르다』는 특호활자로, 기사는 본문활자로, 지면크기는 5단으로 하여 1회 게재하고, 그 다음날 위 신문 제14면의 기사란 중 우측 최상단에 별지 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집유권이란 법령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되, 제목은 1단반 크기의 겹으로, 기사는 본문활자로, 지면 크기는 5단으로 하여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

이 유: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의 1988. 6. 11.자 제15면 우측 최상단에 『「파스퇴르 우유 부도덕」 상행위 말썽』이라는 제목과 『영양가 논쟁 7개월 상대방 것은 모두 가짜 악선전』 『일 만화까지 표절해 비방』 『선의 경쟁 외면 소비자 유제품 불신 조장』이라는 소제목 아래, 「파스퇴르유업」(대표)이 자기네 제품인 파

스퇴르우유의 선전을 위해 일본 광고만화를 표절, 선전팸플릿까지 대량으로 만들어 뿌리면서 상대방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악선전을 하는 부도덕 상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다. 자사 제품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제품을 가짜라고 몰아 붙이는 일방적인 선전은 업체간의 단순한 판촉홍보전 차원을 넘어 소비자 시민들에게 유제품 일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낙농·영양학자들은 파스퇴르측의 자기네 제품만이 진짜 우유라는 주장은 실제와는 다른 과장이며 기존 시음제품과 영양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10단, 가로 약 3.5-20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과 중앙일보 같은 달 22.자 제14면 우측 최상단에 『파스퇴르 우유 너무 비싸다』라는 제목과 『기존 우유와 영양가 비슷한데도 가격은 2배나 받아』라는 소제목 아래, 「자기네 제품만 <진짜>고 기존제품은 모두 가짜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과대선전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국산 유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파스퇴르유업>(대표)은 영양가에서 기존 시유와 큰 차이가 없는 자사 제품 파스퇴르우유를 기존 시유보다 2배나 비싼 값에 팔아 고급품 선전에 약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폭리상술이란 지적과 함께 국민 위화감 조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파스퇴르측의 선전과는 달리 유럽등 낙농 선진국에서도 음용우유의 대량 제조를 위해 파스퇴르식 저온 살균보다 오히려 초고온 살균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략)

독일의 경우 77년에 초고온 처리 1천94t에 파스퇴르식 저온처리 1천7백83t이던 것이 86년에는 1천7백14t 대 1천7백95t으로 초고온처리가 더 늘어났다. 프랑스는 77년에 초고온 7백95t에 저온 1천6백7t이 10년만인 86년에는 2천6백85t 대 9백29t으로 반전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7단, 가로 약 4 내지 17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되고, 위 기사 왼쪽 옆에 약 3단 크기의 사진과 아울러 「파스퇴르유업의 축사에서 쏟아내는 가축 분뇨가 인근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켜 농민들과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다」는 해설기사가 게재된 사실 및 중앙일보 같은 달 29.자 제14면 우측 최상단에 『파스퇴르유업 집유권역 어기고 마구 사들여』라는 제목과 『자체 생산 모자라자 일반 농가 손빨래 다른 지역 원유까지 매입』 『춘천 축협등 도에 행정조치 요구』라는 소제목 아래, 「자기네 제품만 <진짜>라며 경쟁제품을 가짜로 몰아붙여 부도덕 상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파스퇴르 유업>(대표)이 이번에는 집유권역을 지키지 않고 축산 농가들로부터 원유를 마구 사들이면서 집유질서까지 문란시키고 있다. 집유권역제는 유가공 업체간의 원유수집경쟁으로 인한 분규를 막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신선한 우유를 모으기

위해 농림수산부가 76년 11월부터 실시해 오는 것으로, 위반시는 축산물처리법(18조 및 22조)에 의거 작업장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조치를 내리게 된다.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해 7월 1일 자영목장 자체생산 원유(현재 월1백2t)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강원도로부터 집유장허가를 받은 뒤 이를 어기고 일반 시중우유의 원유를 마구 사들여 가공한 뒤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6단, 가로 약 4 내지 18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 단서등에 정해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중앙일보에 공표된 위 각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청구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사유 중의 대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투나, 위 각 기사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신청인은 또한, 위 각 기사는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정정보도에 상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하에서 위 각 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1988. 6. 11.자 기사내용 중,

첫째로, 신청인이 일본의 광고 만화를 표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8호증(선전만화), 제16호증(무서운 우유 좋은 우유), 소을제1호증(선전팸플릿), 제2호증의 1,2(일본책자표지, 내용; 소갑제16호증의 일부이다), 제3호증의 1, 2(만화책자 표지, 내용; 소갑제8호증의 일부이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일본국인 다까마쓰(高松修)가 지은 「무서운 우유 좋은 우유」라는 책자(소갑제16호증)의 50,51면에 있는 삽화를,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번안하여 선전팸플릿에 사용하는 한편 일본국인 기리야 데쓰(雁屋哲)원작, 하나자끼 아끼라(花咲戸キラ)그림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만화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한 다음, 그 원작자와 그림 이를 표지에 밝히고 「우유가 싫은 아이」라는 소책자(소갑제8호증)로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우유가 싫은 아이」라는 만화에 관한 한 신청인이 일본의 광고 만화를 표절하였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로, 신청인이 경쟁 시판우유를 가짜라고 매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제1호증(선전팸플릿)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자사 제품을 선전하면서 그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이 디 에프(I.D.F.)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 최초 탄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표현의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달리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경쟁시판우유를 가짜라고 매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파스퇴르우유와 기존 시음제품이 영양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사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17호증의 1, 2(과학동아 표지, 내용), 소을제5호증(신문), 제16호증의 8(보건사회부 의견), 같은 호증의 9(한국과학기술원 유전공학센터 의견), 같은 호증의 10(서울대학교 의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소갑제9호증의 1 내지 5(농업기술연구보고 표지,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자사 제품인 파스퇴르우유를 선전하면서 「아이 디 에프(I.D.F.)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 국내 최초 탄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계기로, 국내 우유업계에는 우유의 제조방법에서부터 세균의 숫자, 영양소의 변질 및 우유의 균질화 문제 등 우유와 관련된 전부분에 걸쳐 이른 바 「진짜우유」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유의 살균방식에 따른 영양소 파괴(혹은 변성)」문제에 관한 국내 유가공학계의 견해를 보면, 성균관대 대학원 낙농학과 은 「우유의 가열조건에 따른 영양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유성분 중 지방, 비타민 에이, 지용성 비타민 등은 가열온도의 고저, 가열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소실되지 않고, 다만, 열에 의해 변성이나 파괴되기 쉬운 성분은 단백질 및 수용성 비타민의 일부와 칼슘의 용존상태 등으로서, 특히 유단백질 중 라이신의 유효성이 감소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의 영양가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유전공학센터는 신청인이 사용하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L.T.L.T; 섭씨 63도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은 우유의 풍미와 색, 영양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고온 살균법(U.H.T; 섭씨 135도 내지 150도의 온도로 0.5초 내지 5초간 가열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0-30퍼센트의 비타민의 파괴와 60-80퍼센트의 유청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청단백

질의 변성은 파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유청단백질의 변성은 소화율을 높여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저온 장시간 살균법에 의한 우유가 초고온 살균법의 우유보다 더 부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 우유살균법으로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과 고온 단시간 살균법 (H.T.S.T: 섭씨 72도로 15초간 가열하는 방법)을 포함한 패스처리라이제이션(Pasteurization)과 초고온 살균법이 모두 사용되고 권장되고 있다.

패스처리라이제이션 방법은 영양소가 덜 파괴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장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고, 초고온 살균법은 영양소의 일부 파괴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저장기간이 긴 장점이 있어 어떠한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 농대에서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및 초고온 살균법에 있어 모두 단백질의 함량, 아미노산 등 영양소의 효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카세인도 거의 변화가 없다. 고온 단시간 살균법과 초고온 살균법에서는 유청단백질의 일부가 변성되나, 이로써 소화는 오히려 쉬워지고, 또한 열처리에 의해 칼슘의 함량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으나 그 존재형태는 바뀔 수 있으며, 고온 단시간 살균법과 초고온 살균법에 의해 일부 비타민이 10~25퍼센트 정도 감소된다. 쥐의 생육 실험에서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생장률은 초고온 살균, 살균(HTST, LTST), 멸균우유 순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충남대 농대 교수는 「우유의 가열 처리에 따라 단백질, 지방, 유당 및 회분 등은 변화가 거의 없고, 가열온도의 상승에 따라 칼슘과 비타민 C의 함량은 감소하였으나, 인공 소화율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등 대체적으로 신청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실, 특히, 국립보건원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만드는 파스퇴르 우유에는 다른 우유와는 달리 대장균 이외의 세균과 유산균이 살아 있으나, 그밖의 성분에 있어서는 다른 우유와 큰 차이가 없는 사실(신청인은 국립보건원이 유기분석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할 것을 무기분석방법으로 시험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험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시험결과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자신도 유기분석방법에 의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소갑제4호증(신문), 제10호증의 1,2(식품 위생상의 문제점과 대책 표지, 내용), 제11호증(동경대학교 의학학보 논문), 제16호증(무서운 우유 좋은 우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대의 소명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파스

퇴르유유와 기존 시음제품의 영양가 차이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위와 같은 학계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으로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1988. 6. 22.자 기사내용 중,

첫째로, 신청인이 영양가에서 기존 우유와 큰 차이가 없는 자사 제품을 기존 우유보다 2배나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파스퇴르우유와 기존 우유의 영양가 차이에 관한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은 국내 유가공학계등의 대체적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한편, 증인 김 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회사의 제품인 파스퇴르우유는 500밀리리터 짜리가 750원이고, 1000밀리리터 짜리가 1300원이어서, 1000밀리리터에 650원 내지 700원씩 하는 다른 우유에 비하여 가격이 최고 2배나 비싼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파스퇴르우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기존 우유회사들이 유지방 3.4를 기준으로 리터당 322원씩에 원유를 매입함에 반하여, 신청인은 세균과 단백질 기준을 하하여 리터당 500원씩에 원유를 매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양질의 원유를 수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의 행정지시로 각 유업체별로 고정화된 집유권역과는 관계없이 원유를 수거하는 까닭에 수송비가 많이 드는 등 생산원가가 비싼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자사제품을 기존 우유보다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로써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둘째로, 유럽등 낙농 선진국에서 음용 우유의 대량 제조를 위해 파스퇴르식 저온 살균보다 초고온 살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기사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10호증의 1, 2(식품위생상의 문제점과 대책 표지, 내용), 제16호증(무서운 우유 좋은 우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소갑제5호증(이이씨 연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초고온 살균법은 1951년 스위스에서 개발된 방식으로서, 냉장고가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주로 보존식 및 조리용과 가공용, 휴대용 그리고 나중에는 수출용으로 쓰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및 덴마크 등의 국가에 있어서는 초고온 살균 우유에 비하여 패스처리제이션

방식의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및 이태리 등 3개국에서는 우유가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 저장하면서 과자, 빵, 요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한 외국에 원조를 주거나 수출하고, 선박이나 열차, 군부대 등 냉장시설이 부족한 곳에 공급하기 위하여 초고온 살균 우유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 초고온 살균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한 위 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신청인의 측사에서 쏟아내는 가축 분뇨가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켜 농민들과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증인 김 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1988. 6. 29.자 기사내용 중,

첫째로, 신청인이 경쟁 제품을 가짜로 몰아 붙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1988. 6. 11.자 기사에 관한 판단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 6. 11.자 기사내용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허용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나머지 기사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2호증(허가증), 소을제7호증의 1(원료수급계획서), 같은 호증의 2(유가공 공장설립취지서), 제8호증의 1, 2(각 조건부 영업허가 협조의뢰), 제9호증(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 제10호증(집유질서확립), 제11 내지 14호증(각 원유유통질서확립), 제15호증의 1(집유질서 확립요청), 같은 호증의 2(집유질서확립결과 회신요청), 같은 호증의 3(집유질서 확립요청)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6. 9.경 강원도 당국에 유가공품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의 우유처리공장은 자영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만을 처리 가공하여 시유를 생산코자 한다는 내용의 원료수급계획서(소을제7호증의 1)와 자영목장 우유만을 원료로 한 유가공공장 설립취지서(소을제7호증의 2)를 제출한 바 있는데, 강원도 당국은 1987. 7. 1. 신청인에 대하여 집유장 설치 허가를 함에 있어, 위 집유장은 위 유가공품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시 제출된 원료수급계획에 의거한 원유만을 처리토록 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그의 시장 규모가 점차로 커짐에 따라 자영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

게 되어, 농림수산부장관의 행정지시에 의해 각 유업체별로 고정화된 집유권역과는 관계없이 다른 축산 농가들로부터도 원유를 수거함으로써 기존 유가공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으로부터도 다른 유업체 집유선 내의 낙농가로부터 수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에 의하면 「농수산부 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육과 원유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집유권역을 정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행정지시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같은 법 제18조 1항 7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2조 4호에 의하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그렇다면,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4, 5 목록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 13.

재판장	판사	김	현	무
	판사	백	창	훈
	판사	강	형	주

〈1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중앙일보사는 본지 6월 11일자 사회면(15면) 톱 기사를 통해서 파스퇴르우유가 부도덕한 상행위로 말썽을 빚고 있다는 객관성이 결여된 왜곡보도를 실음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해치고 해당 기업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파스퇴르유업과 기존 유가공업체 사이에 영양가 논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국내 식품영양기관이나 학계의 두 우유에 대한 명확한 임상실험결과 발표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기존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유와 파스퇴르우유의 영양가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건강 평론가 「가리야 대스」씨가 원작하고 「하나사끼 아끼라」가 이것을 만화화한 「우유가 싫은 아이」라는 책은 전후 최고의 기록을 올리면서 일본 유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책입니다. 이것을 번역하여 출판한 것을 「일방적인 악선전을 하는 부도덕행위」로 간주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앞장서야 할 공익성을 갖고 있는 본지가 심층취재를 하지 않은 채 특정기업이 소비자에게 전한 「알 권리」를 부도덕행위로 속단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식생활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피해를 본 파스퇴르유업에 심심한 사의를 보냅니다.

〈2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중앙일보사는 본지 6월 22일자(14면) 기사를 통해서 파스퇴르유업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기존 우유와 비교해서 영양가가 다른 데도 비슷하다고 왜곡보도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기에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또한 파스퇴르우유는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유가공업체보다 약 2배 정도가 비싼 값으로 수거하고 전국에서 질 좋은 우유만을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수송비가 들며 제조공정이 기존 유가공업체에 비해서 손이 많이 들며 청결한 제조처리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다른데도 일방적으로 「폭리상술」이라고 지적인 점을 시정합니다.

본지가 선진국에서 파스퇴르식 저온 살균보다 오히려 초고온 살균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가격비교-기존 우유는 낙농가로부터 1리터당 322원에 수거하고 있으나 파스퇴르우유는 1리터당 500원씩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원가도 높을 뿐더러 제조원가도 다르다.

○외국의 사례-국내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온처리 우유는 일본을 비롯해 서 그 제조기술을 수입한 한국, 대만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뉴우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유. 에이치.

티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가축분뇨, 방뇨도 말썽-동일자에 우유의 가격면을 다투면서 그 옆에 가격과는 하등 관계없는 사진을 게재하고 파스퇴르유업의 축사에서 가축 분뇨가 나와 인근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다고 쓴 바 있으나 이로써 파스퇴르에서 사용하는 원유가 마치 불결한 원유라는 인상을 주어 파스퇴르 회사에 누를 끼친 바 있으나 보상문제로 말썽은 고사하고 가축 분뇨가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시정합니다.

〈3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중앙일보사는 본지 6월 11일자(15면)와 6월 29일자(14면)의 기사를 통해서 파스퇴르 유업이 부도덕한 상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원유의 집유질서까지 문란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파스퇴르유업이 부도덕 상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정정기사를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소위 기존업자들이 운운하는 집유권이란 원유수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들끼리의 분장을 막자는 의미에서 생긴 카르텔로서 농림수산부가 유통질서를 조용히 한다는 명목으로 농림수산부 내규로 규정하여 이것을 뒷받침하여 주었던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같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파스퇴르유업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끼친 점을 정중히 사과합니다.

〈4목록〉 정정보도문

1988. 6. 11.자 본지 제15면에 『파스퇴르우유 부도덕 상행위 말썽』이라는 제목과 『영양가 논쟁 7개월 상대방 것은 모두 가짜 악선전』 『일 만화까지 표절해 비방』 『선의 경쟁 외면 소비자 유제품 불신 조장』이라는 소제목 아래, 「〈파스퇴르 유업〉(대표 최명재)이 자기네 제품인 파스퇴르우유의 선전을 위해 일본 광고 만화를 표절, 선전팸플릿까지 대량으로 만들어 뿌리면서 상대방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악선전을 하는 부도덕 상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다. 자사 제품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제품을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일방적인 선전은 업체간의 단순한 판촉홍보전 차원을 넘어 소비자 시

민들에게 유제품 일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파스퇴르 유업은 일본국인 가리야데쓰 원작, 하나자끼 아끼라 그림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만화를 판촉부에서 번역하여, 원작자와 그림 이를 표지에 밝히고, 원작의 표지까지 삽입하여 「우유가 싫은 아이」라는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하였을 뿐, 위 만화를 표절한 사실이 없고, 또한, 파스퇴르유업은 자사 제품의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I.D.F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 국내 최초 탄생」이라는 표현을 써서 광고를 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경쟁사 제품을 가짜 우유라고 매도한 사실은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5목록〉 정정보도문

1988. 6. 22.자 본지 제14면 『파스퇴르우유 너무 비싸다』라는 제목과 『기존 우유와 영양가 비슷한 데도 가격은 2배나 받아』라는 소제목 아래, 「자기네 제품만 진짜이고 기존 제품은 모두 가짜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과대선전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국산 유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은 영양가에서 기존 시유와 큰 차이가 없는 자사제품 파스퇴르우유를 기존 시유보다 2배나 비싼 값에 팔아 고급품 선전에 약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폭리상술이란 지적과 함께 국민 위화감조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위 기사의 왼쪽 옆에 사진이 게재되고, 그 아래에 「파스퇴르유업의 축사에서 쏟아내는 가축 분뇨가 인근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켜 농민들과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다」는 해설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첫째 파스퇴르우유의 값이 다른 우유에 비하여 최고 2배가 비싼 것은 사실 이되, 그 이유는 파스퇴르유업이 낙농가로부터 수거하는 원유의 값이 기존유가공업체 보다 약 2배 정도 비싸고, 또한 파스퇴르유업은 양질의 원유를 수거하기 위하여 집유 권역과는 관계없이 원유를 수거하므로 수송비가 많이 드는 등 생산원가가 비싼 때문이며, 둘째, 파스퇴르유업은 그 축사에서 가축 분뇨를 쏟아 내어 인근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이로 인하여 농민들과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

不道德商行爲를 是認한 사실이 없는데도 申請人이 認定한 것처럼 報道한 부분에 대해서는 訂正報道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3.자 판결(88카43429)

서울고등법원 1989. 7. 12.자 판결(89나7209)

事實概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할 의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中央日報은 1988년 7월 23일자에 『허위광고 파스퇴르우유, 보도한 新聞 되레 비방』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파스퇴르유업(주)는, 이 기사는 근거없는 허위기사라고 주장 하면서 1988년 8월 6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0호 110면 참조).

이에 파스퇴르유업(주)는 中央日報社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김현무 부장판사)는 1989년 1월 13일 「中央日報에 실린 기사로 인해 파스퇴르유업측이 피해를 입은 데다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하여 파스퇴르유업(주)의 신청을 인용했다.

그런데 피신청인 中央日報社가 1심 판결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자 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는 판결에 의한 집행을 하기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中央日報 1989년 3월 4일자 8면에 판결내용대로 보도하고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 민사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는 1989년 7월 12일 피신청인 中央日報社의 항소를 기각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88카43429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 1988. 12. 2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제8면의 기사란 중 좌측 5단부분 지면에 세로 1단, 가로 약 16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파스퇴르우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9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과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본문활자로 각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의 제8면 좌측 최상단에 별지 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파스퇴르우유 보도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되, 제목은 1단 크기의 겹으로, 기사는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의 1988. 7. 23.자 제8면 취재수첩란 중 좌측 4, 5단 부분에 『출두조차 안했다 선전』이라는 9포인트 고딕체 활자의 소제목

아래, 「자기네 제품만 <진짜 우유>라는 허위·비방·과장 광고로 물의를 빚어오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6일 시정 명령을 받았던 <파스퇴르유업>(대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내용과 비슷한 질의 우유를 2배값으로 파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를 (중략)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서울 강남일대등에… 대량으로 뿌려 근거없는 모략상술을 또한번 실증, 파스퇴르측은 이 유인물에서 ‘16일의 언론중재위 첫 심의에 중앙일보는 출두조차 않았다’고 크게 선전(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우편물 송달이 늦어 참석할 수 없었던 데서 빚어진 것뿐. 21일 2차 심의에서 파스퇴르유업은 중앙일보가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를 들어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부도덕 상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합의 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이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총 2단 39행에 걸쳐 본문활자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중앙일보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신청인이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터무니 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서울 강남일대등에 대량으로 뿌려 근거없는 모략상술을 또 한번 실증했다」는 부분과 「21일 2차 심의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부도덕 상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합의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하였다」고 함으로써, 신청인이 마치 그의 부도덕 상행위를 인정한 듯이 보도한 부분에 의하여는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겠으나, 반면에 「신청인은 강남일대에 뿌린 유인물에서 ‘16일의 언론중재위 첫 심의에 중앙일보는 출두조차 않았다’고 선전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우편물 송달이 늦어 참석할 수 없었던 데서 빚어진 것뿐」이라는 부분은, 피신청인이 단지 그의 입장을 해명한 내용의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거부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중앙일보에 게재된 위 기사 중 신청인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관한 한, 별지 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 13

재판장 판사 김 헌 무
판사 백 창 훈
판사 강 형 주

〈1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보 7월 23일자 칼럼란에 기재된 파스퇴르우유에 관한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정정하고 파스퇴르 회사에 정중히 사과합니다.

기일 출두서는 우편송달이 늦어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과 다르며 「지금부터라도 절대 다수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는 허위, 비방, 과장, 광고로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 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은 발설한 사람조차도 없는 사실무근한 기사이니 이를 전면 취소합니다.

〈2목록〉 파스퇴르우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1988. 7. 23.자 본지 제8면 취재수첩란에 『출두조차 안했다 선전』이라는 소제목 아래, 「〈파스퇴르 유업〉(대표)이 중앙일보를 터무니 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서울 강남일대등에 대량으로 뿌려 근거없는 모략상술을 또한번 실증했다. 1988. 7. 21.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2차 심의에서 파스퇴르사는 중앙일보가 1988. 6. 11, 6. 22, 6. 29자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를 들어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부도덕 상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지적과 함께 합의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파스퇴르유업이 근거없는 모략상술을 하였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지금부터라도 부도덕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중앙일보의 지적에 묵묵부답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決 定 文

사 건 : 89타기1608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채 권 자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채 무 자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88카43429호 정정보도게재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가 발행하는 「중앙일보」 제8면의 기사란 중 좌측 5단부분 지면에 세로 1단, 가로 약 16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목록 기재 정정보도문(판결문의 <제2목록> 정정보도문과 동일-편집자 註)을, 제목 『파스퇴르유업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9포인트 고딕체활자로, 정정보도내용과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본문활자로 각 세로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989. 2. 28.

재판장 판사 김 현 무

판사 백 창 훈

판사 강 형 주

2審 判決文

사 건 : 89나7209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피항소인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신청인, 항소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 1988. 5. 24.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3. 선고 88카43429판결.

주 문 :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의 제8면 좌측 최상단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파스퇴르 우유보도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되, 제목은 1단 크기의 겹으로, 기사는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의 1988. 7. 23.자 신문 제8면에 실린 「취재수첩」란 중 좌측 4, 5단 부분에 「출두조치 안했다 선전」이라는 9포인트 고딕체 활자의 소제목 아래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총 2단 39행에 걸쳐 본문 활자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위 기사 중 첫번째 부분의 모략상술을 또한번 실증이라는 취지의 기사와 두번째 부분의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일출석관계기사와 세번째 부분의 부도덕 상행위를 그만두라고 충고하고 합의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신청인이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게재된 별지 제1목록 기재내용에 의하여 보면 그

전체내용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서울 강남일대등에 대량으로 뿌려 근거없는 모략상술을 또한번 실증」이라는 기사내용과 「21일 2차 심의에서 파스퇴르 사는 중앙일보가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를 들어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절대 다수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는 허위·비방·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합의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이라는 기사는 그 전체의 취지가 마치 신청인 회사가 모략상술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이와 같은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그 기사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회사의 명예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둘째부분인 「신청인은 강남일대에 뿌린 유인물에서 ‘16일의 언론중재위원회 첫심에 중앙일보는 출두조차 않았다’고 선전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우편물 송달이 늦어 참석할 수 없었던 데서 빚어진 것뿐」이라는 기사내용은 피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첫번째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담고 있는 기사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문제된 위 기사는 진실에 합치된 기사이고 오히려 청구된 정정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3호증(전단), 소갑제5호증의 4(중재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신청인 회사에서 중앙일보가 아닌 다른 일간신문에 낸 광고를 문제삼는 기사가 게재되자 신청인 회사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후 피신청인측에서 그 첫 중재기일에 출석치 않자 『파스퇴르유업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앙일보를 제소』라는 제목 아래 「타일간지에서는 볼 수조차 없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기사로서 파스퇴르유업을 매도하고 독자들의 지식수준까지 무시하려는 중앙일보가 파스퇴르측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 7월 16일 그 첫 심의가 열렸으나 신문사측에서는 출두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파스퇴르를 비난하는 기사를 연재함으로써 타일간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어린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아래부분에 동아일보 1988. 7. 16자 신문기사 중 신청인 회사의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신청인 회사의 제품광고와 유가공협회측의 반박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안의 경과를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를 그대로 첨부하여 전단을 만든 후 이를 돌린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별지 제1목록 기사 중 위

에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기사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중앙일보에 게재된 별지 제1목록 기사 중 신청인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원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제8면의 기사란 중 좌측 5단 부분 지면에 세로 1단 가로 약 16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 『파스퇴르우유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9포인트 고딕활자체로, 정정보도내용과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본문활자로 각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7. 12.

재판장 판사 이 용 훈
판사 김 형 태
판사 김 이 수

〈별지 제1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보 7월 23일자 칼럼란에 게재된 파스퇴르우유에 관한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정정하고 파스퇴르회사에 정중히 사과합니다. 기일출두서는 우편송달이 늦어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부터라도 절대 다수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는 허위·비방·과장 광고로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은 발설한 사람조차도 없는 사실무근한 기사이니 이를 전면 취소합니다.

〈별지 제2목록〉

자기네 제품만 「진짜 우유」라는 허위·비방·과장 광고로 물의를 빚어 오다가 경제

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6일 시정명령을 받았던 「파스퇴르유업」(대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내용과 비슷한 질의 우유를 2배 값으로 파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를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기사」라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데 이어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서울 강남일대등에 판매조직을 통해 대량으로 뿌려 「근거 없는 모략상술」을 또 한번 실증.

파스퇴르측은 이 유인물에서 「16일의 언론중재위 첫심의회 증앙일보는 출두조차 않았다」고 크게 선전 마치 중앙일보 기사가 잘못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썼으나 이는 단순히 우편물 송달이 늦어 참석할 수 없었던 데서 빚어진 것뿐.

21일 2차 심의에서 파스퇴르사는 중앙일보가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를 들어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절대 다수 소비자를 불안케 하는 허위·비방·과장 광고로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행위를 그만 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합의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

〈별지 제3목록〉 파스퇴르우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1988. 7. 23.자 본지 제8면 「취재수첩」란에 『출두조차 안했다 선전』이라는 소제목 아래, 「〈파스퇴르유업〉(대표)이 중앙일보를 터무니 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서울 강남일대등에 대량으로 뿌려 근거없는 모략상술을 또 한번 실증했다. 1988. 7. 21.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2차 심의에서 파스퇴르사는 중앙일보가 1988. 6. 11. 6. 22. 6. 29.자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를 들어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부도덕 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합의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파스퇴르유업이 근거없는 모략상술을 하였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지금부터라도 부도덕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중앙일보의 지적에 묵묵부답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警察記錄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報道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記事에 관련된 申請人에게는 이를 反論할 權利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7.자 판결(89카11518)

서울고등법원 1990. 2. 6.자 판결(89나30506)

事實概要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옮겨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사에 관련된 당사자는 반론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신문은 1989년 2월 4일자의 『장애 아들 죽음 비판 한가족 동반자살-아들 사망 진단서는 가짜』 제하의 기사와 2월 5일자의 『일가족 자살, 가짜 사망진단서 발급 여의사 입건, 이모 출두 요구』 제하의 기사에서 죽은 소년의 이모인 신청인이 소년의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고, 또 신청인이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도 경찰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989년 2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하였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2호 98면 참조).

이에 신청인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김현무 부장판사)는 1989년 7월 7일 이 씨가 주식회사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의 기사가 경찰기록 또는 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한겨레신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했다.

그런데 피신청인 한겨레신문사가 1심 판결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자, 이에 신청인은 판결에 의한 집행을 하기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1989년 8월 27일자 11면에 판결내용대로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990년 2월 6일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89카11518 정정보도계재

신 청 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동 옥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대표이사 송 건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김정천

변론종결 : 1989. 6. 16.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 제11면의 기사란 중 가운데 상단부분에 가로 2단, 세로 8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왼쪽에 가로로 2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9. 2. 4.자 한겨레신문 제11면 기사란 중 가운데 상단부분에 『장애 아들 죽음 비판 한가족 동반자살-아들 사망진단서는 가짜』라는 제목 아래 「숨진 김 군의 이모 이 씨가 의사 전 씨에게 김군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으며, 경찰은 이 씨가 허위사망진단

서 발급을 부탁한 점에 비추어 이 씨가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불러 조사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3단 세로 약 5센티미터 크기로 게재하였으며, 또한 1989. 2. 5.자 한겨레신문 제3면 기사란 중 가운데 상단부분에 『일가족 자살, 가짜 사망진단서 발급 여의사 입건, 이모 출두 요구』라는 제목 아래 「경찰은 전 씨에게 숨진 김 군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군의 이모 이 씨를 불러 진단서 발급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출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2단, 세로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한겨레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결론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이외의 다른 신문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당시의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기사화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고의로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후일 경찰기록의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경찰기록이 부정확하여 피해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신청인의 기사가 경찰기록 또는 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한겨레신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가 있는 후 경찰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1989. 3. 14.자 한겨레신문에서 신청인은 위 사건과 무관함을 속보형식으로 이미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이상이 없는 소갑제4호증의 19(진술조서), 소갑제4호증의 28(종합수사보고), 소을제1호증(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1989. 2. 10.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게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찰수사결과 앞서의 기사내용과 다른 수사결과가 나오면 속보형식으로 이를 게재해 줄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게재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함으로써 중재 불성립으로 끝났으나, 그 후 경찰수사결과 전 씨에게 김 군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 김

의 다른 이모인 신청외 이 영이었으며 김 -의 일가족은 모두 동반자살한 것임이 밝혀지자, 피신청인은 1989. 3. 14. 한겨레신문 제10면에 속보형식으로 「경찰은 교통 사고로 투병생활을 하다 숨진 막내 김 -군의 죽음을 비관한 나머지 일가족이 동반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진단서 발급경위에 대한 수사결과 전 -에게 전화로 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 이 영임 이 드러났고, 이 영도 전 -에게 단순히 사망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 허위진 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당초 보도한 기사에서는 신청인이 의사에게 김 -의 사망진단서 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 점에 비추어 경찰은 신청인이 사건해결의 열 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소환에 불응하고 출 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경찰이 신청인을 위 일가족 변사사건의 피의 자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속보에서 앞 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 기사가 정확하지 못했다고 정정하여 보도하거나 또는 앞서의 보도내용 중 잘못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으으로써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인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 한 것은 아니라고만 보도하여 앞서 보도한 기사 일부와 상치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하였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앞서의 기사 전부에 대해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 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달리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7. 7.

재판장 판사 김 현 무
판사 성 백 현
판사 임 준 호

정정보도문

한겨레신문은 지난 1989. 2. 4.자 신문 제11면에서 『장애 아들 죽음 비관 한가족

동반자살-아들 사망진단서는 가짜』라는 제목 아래 숨진 김 군의 이모 이 씨가 의사 전 씨에게 김군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의 발급을 부탁하였으며, 경찰은 이에 비추어 이 씨가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였으며, 1989. 2. 5.자 신문 제3면에서는 『일 가족 자살 가짜 사망진단서 발급 여의사 입전, 이모 출두 요구』라는 제목 아래 경찰은 숨진 김 군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군의 이모 이 씨를 불러 진단서 발급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출두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씨는 전 씨에게 김 군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경찰도 이 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일이 없고, 이 씨도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하였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 신청인

決 定 文

사 건 : 89타기11984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신 청 인 : 이

서울

대리인 변호사 강 영 훈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대표이사 송 건 호

대리인 변호사 박 원 순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89카11518호 정정보도게재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 제11면의 기사란 중에서 상단부분에 가로 2단, 세로 8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고딕체활자로 윗쪽에 가로로 2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활자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의 익일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하루 금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989. 8. 21.

재판장 판사 김 현 무
판사 성 백 현
판사 임 준 호

2審 判決文

사 건 : 89나30506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피항소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신청인, 항소인 :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대표이사 송 건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 순, 김 경 천

변론종결 : 1990. 1. 16.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7 선고 89카 11518 판결

주 문 : 1.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 제11면의 기사란 가운데 상단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가로 2단, 세로 8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1호 활자로 윗쪽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그 아래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판결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 제11면의 기사란 가운데 상단부분에 가로 3단, 세로 5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와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1989. 2. 4.자 제11면 기사란의 가운데 상단부분에 『장애아들 죽음 비관 한가족 동반자살, 아들 사망진단서는 가짜』라는 제목 아래 「의사 전 씨는 숨진 김 군의 이모 이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점에 비추어 이 씨가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3단, 세로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게재하였으며, 또한 1989. 2. 5자 제11면에 기사란의 가운데 상단부분에 『일가족 자살, 가짜 사망진단서 발급 여의사 입건, 이모 출두 요구』라는 제목 아래 「경찰은 의사 전 씨에게 김 군의 사망진단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 군의 이모 이 씨를 불러 진단서 발급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출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2단, 세로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한겨레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먼저 위 기사는 당시의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기사화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고의로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경찰기록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경찰기록이 부정확하여 피해를 입은 것뿐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신문기사가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옮겨 보도하였다 하여도 일단 그 내용이 정기간행물인 한겨레신문에 공표되어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면 그 기사에 의해 피해를 받은 신청인은 이를 반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음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가 있는 후 경찰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1989. 3. 14자 한겨레신문에 신청인이 위 사건과 무관함을 속보형식으로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3호증(중재불성립증명서), 소갑제4호증의 19(진술서), 28(종합수사보고), 소을제1호증(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1989. 2. 10.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게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찰수사결과 앞서의 기사내용과 다른 수사결과가 나오면 속보형식으로 이를 게재해 줄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게재할 수 없다고 거절함으로써 중재가 불성립으로 끝났으며, 그후 경찰수사결과 전에게 김군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 김군의 다른 이모인 신청외 이영이었으며 김군의 일가족은 동반 자살한 것임이 밝혀지자 피신청인은 1989. 3. 14.자 한겨레신문 제10면에 속보형식으로 「경찰은 김 씨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투병생활을 하다 숨진 막내 김군의 죽음을 비관, 자살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진단서 발급 경위도 수사한 결과 의사 전에게 전화로 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 이영 씨임이 드러났으나 그도 단순히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했음이 밝혀졌다」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속보만으로는 앞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 기사가 정확하지 못하였다고 정정보도하거나 또는 앞서의 보도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 잘못된 기사 전부를 바로 잡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피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 제11면의 기사란 가운데 상단부분에 가로 2단, 세로 8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1호 활자로 윗쪽에, 정정보도내용 및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그 아래에 게재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6.

재판장 판사 한 대 현
 판사 김 남 태
 판사 이 교 림

〈별지〉 정정보도문

한겨레신문은 지난 1989. 2. 4자 신문 제11면에 『장애아들 죽음 비관 한가족 동반

자살, 아들 사망진단서는 가짜』라는 제목 아래 의사 전 씨는 숨진 김 군의 이모 이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점에 비추어 이 씨가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불러 조사중이라고 보도하였으며, 1989. 2. 5.자 신문 제11면에 『일가족 자살 가짜 사망진단서 발급, 여의사 입건 이모 출두 요구』라는 제목 아래 경찰은 숨진 김 군의 사망진단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 군의 이모 이 씨를 불러 진단서 발급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출두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씨는 의사 전 씨에게 김 군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 신청인 이



公表된 事實的 主張과 申請人 사이에 直接的 關聯性이 없어 被害를 입었다고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으므로 訂正報道를 要求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8. 18.자 판결(88카62228)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김현무 부장판사)는 1989년 8월 18일 파스퇴르유업(주)가 주식회사 中央日報社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정정보도 신청인과의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기사내용만으로는 기사와 신청인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中央日報는 1988년 10월 24일자 5면 「국감중계」란에 『파스퇴르 최사장 고함지르며 샷대질 증언』이라는 제하로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문제로 국회농수산위의 국정감사에

출두한 파스퇴르우유의 (주)성진낙농 대표 최 씨는 초지조성과정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느냐는 모의원의 질의에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질을 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질의에서는 통명스럽게 답변하는 등 거만한 태도가 계속되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국회모독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주의를 주었으나 최씨는 재멋대로 일관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988년 11월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1호 102면 참조).

이에 신청인은 中央日報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다.

判 決 文

사 건 : 88카62228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현

변론종결 : 1989. 7. 21.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의 제5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파스퇴르 최사장 상세하게 진지한 태도로 증언』이라는 제목 부분은 1단 크기의 겹으로, 정정보도 내용은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8. 10. 24.자 중앙일보 제5면 우측 상단부분의

「국감중계」란에 『파스퇴르 최사장 고탐지르며 샷대질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24일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문제로 국회 농수산위의 국정감사에 출두한 파스퇴르우유의 (주)성진낙농 대표 최 씨는 의원질의 도중 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고성을 내질러 의원들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다. 최씨는 ‘토지조성과정에서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박 의원의 질의에 ‘박의원께서 법률을 잘 모른다’ ‘무언가 착각을 일으킨 것 아니냐’며 되레 고탐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해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의원들로부터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느냐’는 질책을 받기도, 최씨는 또 ‘지난 13일 강원도 감사에서 강원도지사가 분명히 성진낙농은 형질변경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2명 중 1명이 위증을 한 셈’이라고 박의원이 따지는 순간 ‘그러시오’라고 통명스럽게 내뱉어 의원들로부터 ‘반드시 답변 요구때만 답변을 하라’는 지적을 또 다시 받았다. 최씨의 거만한 태도가 계속되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국회모독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주의를 주었으나 최씨는 제멋대로의 자세로 일관」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위 기사가 사실을 왜곡 내지 과장한 허위의 주장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정정보도의 게재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신청인이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정정보도 신청인과의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기사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활동 중 신청외 최 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동 신청외인의 답변에 관한 기사로서 동 기사 중 「파스퇴르」라는 말이 들어 있으나 이는 최 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질 뿐 위 기사내용만으로는 동 기사와 신청인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4호중(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최 는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신청외 주식회사 성진낙농의 대표이사인데 동 성진낙농이 개간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소재 토지로부터 인근 오원저수지로 토사가 유입되어 동 저수지의 저수량이 줄어들게 된 사안에 대하여 위 국정감사가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사실 및 위 기사내용을 종합하면 위 기사는 신청외 주식회사 성진낙농 및 그 대표이사인 위 최 에 관한 기사일 뿐 신청인에 관한 기사가 아님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그외 위 기사가 신청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 의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8. 18.

재판장 판사 김 현 무
판사 성 백 현
판사 임 준 호

정정보도문

제목 : 파스퇴르 최사장 상세하게 진지한 태도로 증언

본지 10월 24자 파스퇴르 우유에 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국회 증언 도중 박 의원이 손가락질을 하며 질의하자 최사장도 같이 손가락질하였으며 마이크에다가 진지한 태도로 상세히 증언을 하였다.

강원도 감사에서 강원도지사가 성진낙농은 형질변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고 박의원이 말하자 최사장은 초지법상 5년이 경과된 토지는 사료, 작물포로 전환하는 데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박의원이 두 명 중 한명은 위증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

.....

申請人이 訪北後 歸國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報道되어 被害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申請人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9. 22.자 판결(89카28545)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김현무 부장판사)는 1989년 9월 22일 문 씨가

주식회사 朝鮮日報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방북후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잘못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은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했다.

피신청인은 朝鮮日報 1989년 4월 5일자 1면(5판)에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귀국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도했다.

신청인은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1989년 5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하였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3호 126면 참조).

이에 신청인은 朝鮮日報社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朝鮮日報 1989년 9월 28일자 1면(5판)에 판결에 따른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28545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문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조현수, 정주교

변론종결 : 1989. 8. 18.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제5판 제1면의 기사란 중 상단부분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1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명조체 활자로 우측에 세로로 2단에 걸쳐, 그 좌측에 『문 목사 방북 관련 기사에 대하여』라는 소재목은 5호 고딕체 활자로 세로로 2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본문화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본 사건 판결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 「조선일보」의 초판인 제5판부터 게재당일자 최종판인 15판까지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 지면에 가로 17.7센티미터, 세로 4.3센티미터 크기로 별지 2 정정보도문 중 제목 『문목사 회견기사의 정정보도』를 고딕체 2단 컷으로, 제목 바로 밑에 가로 13.8센티미터, 세로 0.7센티미터크기로 위 정정보도문 중 소제목 1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오보』는 명조체 초호화자로, 제목 우측에 위 정정보도문 중 소제목 2 『법원의 정정보도판결에 따라』를 세로로 고딕체 0호화자로 5단에 걸쳐 게재하며, 정정보도내용은 본문 5호화자로 소제목 2 좌측에 총 7단으로 하되, 제1, 2, 3단은 7행, 제4, 5단은 15행, 제6단은 13행, 제7단은 6행으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9. 4. 5.자 조선일보 제1면 기사란 중 우측 최상단부분에 「평양방문을 마치고 북경에 도착한 문 목사는 북경 시내 국제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귀국 후의 체포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솔직히 말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심경을 피력하고 ‘그러나 만약 붙잡힌다면 그 기회를 정부와 막힌 대화를 트는 기회로 삼겠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18.5 내지 5센티미터, 세로 7단의 크기로 게재하면서 그 제목으로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목을 컷으로 붙여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방북 후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잘못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은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조선일보에 보도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의 제목을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로 선정한 것은 당시 신청인의 귀국 여부를 의심하는 국내외의 시각이 상당히 있었고 신청인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였으며 편집 마감시간에 쫓겨 이를 정확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격을 훼손할 의도하에 고의로 위와 같은 기사제목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채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 정기간행물 발행인의 인격훼손 의도나 고

의성 유무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피신청인은 또, 위 보도 이후 피신청인이 조선일보를 통하여 충분한 정정보도를 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이미 귀국하여 동인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기사로 말미암아 신청인의 당시 귀국의사를 의심할 만한 독자는 없을 것이니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율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 1989. 4. 5.자 조선일보의 초판인 제5판에 위 제목을 선정 게재하였다가 그 다음에 발행되는 같은 날짜 제10판부터는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부분을 『문씨 「김일성 대남편지 없어」』로 바꾸어 보도하였고 다음날인 1989. 4. 6.자 조선일보 제1면에 『내주 초췌 귀국』이라는 소제목 아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북경을 거쳐 동경에 도착한 문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의 귀국이 내주 초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보도하였으며 같은 달 9.자 조선일보 제1면에 『문씨 일 망명설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문 목사는 자신의 망명설을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13일 오전 10시 10분 동경 노스웨스트편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보도하였고 같은 날짜 조선일보 제4면에 『문씨 가족 항의』라는 제목 아래 「조선일보의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문씨 가족들이 본사에 알려 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2센티미터, 세로 3단의 크기로 게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신청인이 이미 귀국하여 동인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나, 위 각 기사는 앞서 보도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 기사가 정확하지 못하였다고 정정하여 보도하거나 또는 동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동일기사의 제목을 동일자 제10판부터 바꾸어 보도하거나, 신청인의 이 사건 북경기자회견 내용이 아닌 그 이후의 일본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또 이 사건 기사보다 그 지면의 위치 및 크기로 보아 훨씬 비중이 적은 기사로써 신청인 가족들의 항의내용을 간단히 게재한 것으로서 이러한 각 기사의 보도사실 및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이후 귀국하였고 그것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그 후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기사로 말미암아 신청인의 당시 귀국의

사를 의심할 만한 독자가 없어 신청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다만 위와 같은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그 외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붙이게 된 경위, 그 이후 신청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도한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 기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9. 22.

재판장 판사 김 헌 무
판사 성 백 현
판사 임 준 호

〈별지 1〉 정정보도문

문 목사방북 관련기사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지난 1989. 4. 5.자 신문 제1면에 신청인이 평양방문을 마친 뒤 북경 시내 국제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게재 보도하면서 그 제목을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로 붙였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일본 교오또오통신 기자로부터 귀국 후의 체포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감옥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번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붙잡아 들인다고 하면 저는 그 기회를 막힌 정부와의 사이의 대화를 트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체포되지 않고 싶다는 뜻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표현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에서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을 뽑아 게재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귀국을 원치 않는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정정보도신청인

〈별지 2〉

제 목 : 문목사 회견기사 정정보도

소제목 1 :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오보

소제목 2 :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따라』

내 용 : 본보는 지난 4월 5일 발행한 제5판의 1면 머리기사로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 아래 평양방문을 마치고 북경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보낸 문 목사가 4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북경 시내 국제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위 회견에서 문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들 셋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충격을 빨리 벗어나서 이성을 찾고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제 성의 또 국민들의 염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와 같이 민족통일의 길에 나서 줄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문제인데요, 요새 그 동안에 우리가 투쟁한 결과로 감옥에 있는 양심수등이 신문을 읽을 수 있고 매일 편지도 쓸 수 있고 누구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감옥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돌아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다시 붙잡혀 들어가면 남북의 대화를 트려고 하는 내 노력이 일단 성사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붙잡아들인다고 하면 저는 그 기회를 막힌 정부와의 사이에 대화를 다시 트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회견에 참석했던 본사의 박 특파원은 위 회견문을 「한국 정부가 충격에서 벗어나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 사실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만약 붙잡힌다면 그 기회를 정부-막힌 정부와 대화를 트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축약 송고해 왔고 이는 본보 동일자 4면에 실렸다. 이 송고내용을 보고 작성했던 문제의 1면 머리기사에서 본보는 그는 귀국후의 체포가능성에 대해 「솔직히 말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심경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그러나 만약 붙잡힌다면 그 기회를 정부와 막힌 대화를 트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라고 썼고 이 기사의 솔직히 말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부분에서 제목을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로 뽑았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임을 바로 잡는다. 문목사는 본보 1989년 4월 5일자 보도내용에 대해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는데 동 법원의 인용판결에 의하여 본 기사를 싣는다.

정정보도 신청인



신청인이 노점단속을 위해 단속원을 고용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 1989. 11. 3.자 판결(88카1616)

事實概要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주형 부장판사)는 1989년 11월 3일 최 씨가 주식회사 江原日報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단속원을 고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신청인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했다.

崔씨는 江原日報 1988년 9월 5일자 10면 「신호등」란에 『개인商街 단속원의 횡포』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1988년 9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1호 92면 참조).

이에 신청인은 춘천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신청인의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判決文

사 건 : 88카1616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광 정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일보 (江原日報)

춘천시 중앙로1가 53

대표이사 강 표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석 명

변론종결 : 1989. 9. 29.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강원일보」 제10면 좌측 상단부분지면에 세로 1단, 가로 8센티미터 크기의 사각테두리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3호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내용과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본문활자로 각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 강원일보의 1988. 9. 5.자 제10면 신호등란 가로 9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의 사각테두리안에 『개인상가 단속원의 횡포』라는 3호 고딕체 활자의 소재목 아래 신청외 이 춘천시 후평2동 1단지 아파트 주변 노점상들을 완력과 욕설로 심하게 단속하는 모습을 묘사한 다음 「대림상가 소유주인 최모가 위 황 을 지난 5월부터 고용하여 노변 쓰레기상들을 단속시켜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총 3단 57행에 걸쳐 본문활자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임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도내용 중 대림상가 소유주인 최모 라는 표현은 신청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신청인은 위 황 을 신청인이 고용하였다고 잘못 보도됨으로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황 을 고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신청인이 위 황 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을제1호증(탄원서), 소을제2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니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강원일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1. 3.

재판장 판사 김 주 형
판사 안 승 국
판사 홍 진 원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강원일보는 1988. 9. 5.자 제10면 신호등란에 『개인상가 단속원의 횡포』라는 제목 아래 대림상가 소유주인 최모 는 단속원 황 을 고용하여 완력으로 위 대림상가 주변의 노점상들을 단속시켜 오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 보도 중 대림상가 소유주 최모 는 최 를 지칭한 것으로써 최가 단속원 황 을 고용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紛爭過程을 보도하면서 한쪽의 主張만을
기사화하였으니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9. 11. 7.자 판결(89카599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정극수 부장판사)는 1989년 11월 7일 주

식회사 中央日報社가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청인은 일요신문 1989년 3월 12일자 9면에 『「파스퇴르·중앙일보」 자존심 싸움 9개월...「정정보도」 신기까지』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1989년 4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2호 117면 참조).

중재결과, 쌍방 주장이 엇갈려 불성립되자 신청인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 게재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決 定 文

사 건 : 89카5999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株式會社 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서예교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요신문사(株式會社 日曜新聞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김정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요신문」 제9면 기사란 좌측 최상단에 가로3단, 세로 약 17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좌측 상단에, 정정보도내용은 본문 활자로 그 하단에,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본문 활자로 그 하단에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

한 「일요신문」 제9면의 기사란 좌측 최상단에 가로 4단, 세로 17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고딕체활자로 좌측 상단에,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본문활자로 1단에 걸쳐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1989. 11. 7.

재판장 판사 정극수
판사 조해현
판사 문영화

〈1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1989년 3월 12일자 본지 제9면에 『딩치 민다 「다윗 돌팔매」 맞은 썸』이라는 제목과 『「파스퇴르·중앙일보」 자존심 싸움으로 9개월 「정정보도」 신기까지』, 『광고 푸대접 「기사폭격」…유업측』, 『150억원 「손배」청구계획 분쟁불씨 남아』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첫째, 「파스퇴르유업(주) 최 대표이사는 …중앙일보측에서도 광고문제로 자신을 찾아왔고 광고게재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근거없는 일방적인 기사로 자신의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어떤 신문사에는 광고를 주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안주느냐 식의 단순논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 중앙일보 광고국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중앙일보측이 광고섭외 문제로 파스퇴르(주)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광고국측이 광고도 독자에게 공급하는 정보 중의 하나이므로 타신문에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중앙일보도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광고를 부탁한 바 있다.

그러나 광고게재 거절을 이유로 중앙일보에서 파스퇴르(주)를 비방한 것이라고 하나 광고와 편집권은 독립되어 있으며 편집권은 편집국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광고게재 거절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본지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벌레 취급당한 것」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중앙일보측은 광고를 부탁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광고주를 벌레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파스퇴르유업(주)측에 광고주에 대한 관례적인 예우를 하였으므로 본지의 보도 내용은 파스퇴르(주)측의 감정적 주장만을 기사화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셋째, 「월요일 아침 9시에 중앙일보 광고국에 달려가서 광고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간다면 광고를 주겠다고 광고도안까지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중앙일보의 경우 기사취급을 광고국에서 알 수 없는 것이며, 편집권은 편집국 고유의 영역으로서 기사와 광고는 서로 독립된 권한에 속하므로 광고문제의 압력수단으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또한 파스퇴르유업(주)측이 광고도안을 주었다고 하나 광고도안이라 하면 광고업계에서 통상 광고동판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앙일보 광고국이 파스퇴르유업(주)로부터 어떠한 광고도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지의 중앙일보에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넷째로, 「그러나 중앙측에서는 광고국 이모차장등이 조선, 동아에 그 동안 10번 냈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10번 광고를 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까지 쓰고 나왔다는 것」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당시 중앙일보 광고국에는 이모차장이라는 간부가 재직 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 광고영업사원은 동아, 조선을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타사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이며, 동시에 파스퇴르(주)측이 중앙일보에 대한 어떠한 각서도 쓴 일이 없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다섯째, 「중앙측 광고국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국장은 국장이고, 나는 나다 왜 광고를 안 내느냐고 공격해 왔고 이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는 설명이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어느 회사든 광고국은 광고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이므로 파스퇴르(주)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타사에 광고가 나갔든 안 나갔든 광고게재를 의뢰한 광고영업측 면에서 광고세일영업행위를 한 것이므로 본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여섯째, 「아무튼 파스퇴르(주)측은 지난 7월 16일 언론중재위에 중앙일보사가 고의적으로 파스퇴르(주)를 파산시키기 위해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회복과 재산상의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중앙일보측이 언론중재위 불출석으로 호지부지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측에서는 파스퇴르측이 중재를 신청한 언론중재위원회의 1차 중재기일에는 우편송달 관계로 불출석하였으나 고의로 불출석한 사실이 없고 2차 중재기일에는 사회부 권순용 부장이 출석, 중재절차에 응하였으므로 본지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제2목록〉 정정보도문

1989년 3월 12일자 본지 제9면에 게재된 『덩치 밋다 「다윗 돌팔매」 맞은 샘』이라는 제목과 『「파스퇴르·중앙일보」 자존심 싸움으로 9개월…「정정보도」 실패까지』, 『광고 푸대접 「기사폭격」…유업측 제소』, 『150억원 「손배」청구계획 분쟁불씨 남아』라는 소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중앙일보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므로 이를 게재합니다.

첫째, 「파스퇴르유업(주) 대표이사는… 중앙일보측에서도 광고문제로 자신을 찾아왔고 광고계재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근거없는 일방적인 기사로 자신의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어떤 신문사에는 광고를 주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안주느냐 식의 단순논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 중앙일보 광고국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사에서는 광고섭외문제로 파스퇴르(주)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광고국측이 광고도 독자에게 공급하는 정보 중의 하나이므로 타신문에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중앙일보도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광고를 부탁한 바는 있지만, 편집권은 광고와는 분리, 독립되어 있는 만큼 광고계재 거절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한 것」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사에서는 파스퇴르유업(주)에 광고주에 대한 관례적인 예우를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셋째로, 「월요일 아침 9시에 중앙일보 광고국에 달려가서 광고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간다면 광고를 주겠다고 광고도안까지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에서는 파스퇴르유업(주)로부터 광고도안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넷째로, 「그러나 중앙측에서는 광고국 이모차장등이 조선, 동아에 그 동안 10번 냈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10번 광고를 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까지 쓰고 나왔다는 것」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사에서는 당시 중앙일보 광고국에는 이모차장이라는 간부가 재직한 사실이 없고, 또한 관례상 타언론사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경우는 없으며, 파스퇴르유업(주)가 중앙일보에 대한 어떠한 각서도 쓴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섯째, 「중앙측 광고국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국장은 국장이고, 나는 나다. 왜 광고를 안내느냐’고 공격해 왔고, 이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는 설명이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사에는 광고계재를 의뢰한 것은 광고영업측면에서 광고세일영업행위

를 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섯째, 「아무튼 파스퇴르(주)측은 지난 7월 16일 언론중재위에 중앙일보사가 고의적으로 파스퇴르(주)를 파산시키기 위해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회복과 재산상의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중앙일보측이 언론중재위 불출석으로 호지부지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사에서는 파스퇴르유업(주)가 중재를 신청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제2차 중재기일에 중앙일보사 사회부 부장이 출석, 중재절차에 응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言論社가 誤報를 인정「고침」또는 속보형식의
기사를 통해 解明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분치 못하므로 다시 완벽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9.자 판결(89카4615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김현무 부장판사)는 1989년 12월 29일 연 씨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기사에서의 연모씨는 그 정확한 나이와 출신대학의 첫머리글자가 상이하지만 객관적으로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사에서 신청인을 신청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성남지역 간사로 보도한 점에서 신청인 연합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침』 제하의 기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일부만 정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신청을 인용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신문 1989년 7월 5일자 15면에 『「民靑聯」 간부 延모씨 추적』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1989년 8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4호 93면 참조).

이에 신청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서울신문 1990년 1월 6일자 15면에 판결에 따른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46152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1. 연

서울

2.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서울

대표자 공동의장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이재명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서기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변론종결 : 1989. 12. 15.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서울신문」 제15면의 기사란 중 상단부분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1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명조체 활자로, 『연 씨 및 민청련 임양방북사건관련 기사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은 5호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서울신문 15면 우측 상단에 9단 크기로, 제목은 가로 18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컷으로 음각표시하고, 부제는 0호, 1호, 2호 활자로 하여 별지2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성립에 다툼없는 소갑제1호증(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9. 7. 5.자 서울신문 제15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초호 고딕체 활자의 『전대협 배후 수사박차』 특호 고딕체 음각활자의 『「민청련」 간부 연모씨 추적』, 0호 명조체활자의 『상부지시 따라 자금, 입북지침 전달』이라는 각 제목 아래 「민청련 성남지역 간사인 연모씨 가 북한의 국내공작조직의 일원으로서 용인, 성남지역의 노동현장 및 대학가 운동권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청의 임수경과 여러차례 접촉하여 방북비용을 전달하는 등으로 위 임수경의 출국 및 밀입북 사건에 깊이 개입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20 내지 2.5센티미터 세로 7단 크기로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성립에 다툼없는 소갑제11호증(공소장)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신청인 연 은 생으로서 서울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에 관여하였고 1988. 7.경부터 성남노동자민주투쟁연합의장으로, 1989. 2.경부터 성남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같은 해 6. 30. 경부터 성남민주노동자연합 의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와 같이 위 신청인이 30대로서 대학학생운동에 관여한 바 있고 현재 성남지역의 노동운동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씨가 희성(稀姓)이라는 점에서 위 기사에서의 「연모씨」는 그 정확한 나이와 출신대학의 첫머리글자가 상이하지만 객관적으로 위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신청인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기사에서 위 신청인을 신청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신청인 연합이라 한다)의 성남지역 간사로 보도한 점에서 신청인 연합도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서울신문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보도 이후 서울신문을 통하여 위 보도에 관한 충분한 정정보도를 하였으니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

니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소갑제5호증(신문), 소을제1 내지 6호 증(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보도 이후 1989. 7. 6.자 서울신문 사회면에 『북한동조 신문제작 「노민투」 의장 구속』이라는 5호 고딕체활자 제목 아래 신청인 연 이 같은 날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판매)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2 내지 6센티미터 세로 2단으로 게재하고, 이어 같은 달 16.자 위 신문 사회면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위 신청인등에 대한 변호인 접견허용결정을 하였음을 보도하면서 위 신청인이 「성남지역노동자민주투쟁 연합」을 결성한 뒤 「성남민주노동」이라는 유인물등을 퍼내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같은 달 18.자 위 신문 제15면에 『고침』이라는 5호 고딕체활자 제목 아래 위 신청인은 신청인 연합 소속이 아니고 임수경 밀입북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단으로 게재하고, 같은 달 20. 21. 22. 위 신문 사회면에서 위 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접견에 관하여 각 보도하면서 위 신청인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같은 달 26. 위 신문 사회면에 위 신청인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1989. 7. 18.자 『고침』기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위 신청인이 국내공작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임수경에게 방북비용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크기 및 배치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기사보다 훨씬 비중이 작은 기사라 할 것이고, 또한 나머지 위 각 기사는 위 신청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내지 동법상의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혐의로 구속되었음을 보도한 것일 뿐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위 각 기사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달리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다툼은 이유 없다.

다만 신청인들이 신청한 정정보도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기사가 진실에 반함을 시인하고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신청은 주문기재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2. 29.

재판장 판사 김 현 무

판사 임 준 호

판사 박 정 훈

〈별지 1〉 정정보도문

연 씨 및 민청련 임양방북사건 관련 기사에 대하여

서울신문은 지난 89년 7월 5일자 제15면에서 『민청련 간부 연모씨 추적』이라는 제목 아래 「민청련 성남지역 간사인 연모씨 가 북한의 국내공작조직의 일원으로 서 신청외 임수경과 여러차례 접촉하여 방북비용을 전달하는 등으로 위 임수경의 출국 및 밀입북사건에 깊이 개입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연모씨」로 지칭된 신청인 연 은 북한의 국내공작조직의 일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임수경과 접촉하여 방북비용을 전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신청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소속도 아니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별지 2〉 신청인들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민청련 연 씨 임양방북사건과 무관

2. 부 제 : (1)정정보도문 (0호)

(2)국내공작원 운운 허위기사 판명 (1호)

(3)임양에 자금, 입북지침 전달한 사실 없어 (2호)

3. 내 용 : 본지 1989년 7월 5일 15면 『민청련 간부 연모씨 추적』의 기사가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에서 「경찰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청련 성남지역 간사인 연 씨가 성남용인지역 운동권학생 및 노동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이 지역 평양축전 준비위 정책기획실장이던 임양과도 여러차례 접촉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씨가

임양밀입북사건이 공개된 직후 잠적한 사실을 중시 연씨가 국내공작조직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공작조직이 연씨를 통해 임양에게 여비를 지원해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추측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씨는 민청련 성남지역 간사가 아닐 뿐 아니라 민청련과 전혀 무관하며, 연씨는 물론 민청련은 임양의 밀입북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연씨가 국내공작조직의 한 사람으로 국내공작조직의 치밀한 계획하에 임양과 수차례 접촉하고 평양축전참가여비를 지원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전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였습니다.

성남노동자민주투쟁연합 의장으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을 뿐인 연 씨 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

記事속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言行이 언급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9.자 판결(89카52256)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김현무 부장판사)는 1989년 12월 29일 이 씨가 주식회사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정에산관계자간담회 관련기사 중에 신청인 및 신청인 언행이 언급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李씨는 東亞日報 1989년 8월 8일자 14면에 『제2 싹쓸이 발언 분노의 소리』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1989년 9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으나 불성립되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34호 120면 참조).

이에李씨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52256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남

변론종결 : 1989. 12. 15.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제14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 부분에 가로 6.5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1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고딕체활자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본문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14면 좌측 상단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5단의 크기로 제목은 0호 고딕체활자로 하여 별지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 성립에 다툼없는 소갑제7호증(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9. 8. 8.자 동아일보 제14면 기사란에 『제2 싸늘이 발언 분노의 소리』라는 제목과 『김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소제목 아래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인 김 의원이 당정예산관계자간담회에서 전라북도 90년도 예산에 관하여 특

별 대책을 세워달라는 지구당위원장들의 요청에 대하여 ‘전원 야당을 뽑았으니 뜨거운 꼴을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전라북도에서의 총선패배에 대한 여권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전남북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면 평민당이 생색을 낼 우려가 있다’ 지역개발이 그렇게 급하면 민정당 후보를 좀 뽑아 줘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전북도민들은 이러한 김 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싹쓸이발언에 이은 ‘제2의 싹쓸이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꼴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은 전북도민들의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제된 신청인의 소위 「싹쓸이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김 의원의 위 발언들과 같은 취지라는 내용으로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기사가 김 의원의 발언에 관한 기사 속에 포함된 것이지만 신청인 및 신청인의 언행이 언급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것이고 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이 위 전체기사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소감제7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단 크기로 김 의원의 발언요지 및 전북도민의 반응을 보도하는 기사 속에 1단 7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기사가 그 분량에 있어 위 전체기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정정보도문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사건 발언은 위 김 의원의 발언과는 같은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인 만큼 이 사건 기사의 기본취지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어서, 그 반론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다툼은 이유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언행은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관한 보도 및 비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니 이 사건 기사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시 건설부 장관이던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이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보도 및 평가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은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보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다툼도 이유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기재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2. 29.

재판장 판사 김 현 무
판사 임 준 호
판사 박 정 훈

〈별지 1〉 정정보도문

89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제14면 기사란에 『제2 싸늘이발언 분노의 소리』 『김용태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도민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싸늘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싸늘이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제된 신청인의 발언(87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창」란 보도)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써 김용태 의원의 위 발언과는 그 취지가 같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별지 2〉 신청인들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1989. 8. 8. 『제2 짝썰이발언 분노의 소리』 『김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도민들은 김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규호 전 건설부 장관의 짝썰이발언에 이은 제2 짝썰이발언으로 간주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1987. 12. 12. 동아일보가 「창」란에 보도한 이 의 발언은,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며 전라도민 또는 전라도 지역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1987. 12. 10.자 발언에 관한 고소사건에서 서울지방 검찰청이 관계증인(동아일보의 취재기자 포함)등을 조사한 결과 분명하게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의 1987. 12. 10.자 발언내용은 1989. 8. 4.자 김 의원의 발언 내용과 전혀 취지가 같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발언내용을 보도하면서 제2의 짝썰이발언이라고 표현하여 이 의 발언은 김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취지라고 오해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

학원재단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報道에 대한 申請人の 訂正報道申請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 2. 20.자 판결(89카118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1990년 2월 20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주식회사 의정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월간잡지 「입법평론」 1989년 9월호 84~87면에 『비리의 복마전 한국관광대학』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1989년 10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하였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34호 135면 참조).

중재결과, 쌍방 주장이 엇갈려 불성립되었고,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1188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학교법인 원석학원

경주시 충효동 191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의정신문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의 90

대표이사 신 부 응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입법평론」 제84쪽 이하에 별지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정정보도문』은 견출고딕체 중 장체 1번 활자로 제84쪽 상단에 정정보도내용은 신명조체 14급 활자로 그 하단 이하에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신명조체 18급 활자로 정정보도문 말미에 각 가로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할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매월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월을 기준으로 「입법평론」의 다음 월호 제84쪽에서 제87쪽에 걸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정정보도문』은 견출고딕체 중 장체 1번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6센티미터의 활자로 제84쪽 상단에 정정보도내용은 신명조체 14급 크기 활자로 그 하단부터 제87쪽 전면에 걸쳐,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견출고딕체 중 장체 1번 100급 활자로 정정보도문 말미에 각 가로로 게재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게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할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 까지 매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재판.

1990. 2. 20.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판사 김 홍 우
판사 문 용 선

〈별지1〉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보 1989년 9월호 84쪽에서 87쪽에 걸쳐 보도된, 『비리의 복마전 한국관광대학』 제하의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첫째, 「김 의원이 간사로 소속돼 있는 국회 문공위에서도 이 문제를 몇차례 거론한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김의원과 민정당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이 문공위 소속 야당의원 측근의 말이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김의원과 민정당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 운운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둘째, 「이 3개 학교가 모두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뒤엉켜 연일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셋째, 「특히 한국관광대학의 경우, 대학설치 기준령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과 교원 확보는 물론, 강의실 한칸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 경주전문대의 교실 3개를 빌어 강의를 시작해」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었음이 밝혀졌다.

넷째,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조건에 맞게 개선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 학생들은 건축중인 교실에서 망치소리를 들으며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다.

다섯째, 「6년 동안 끌어오던 설립인가신청을 김 씨가 국민당에서 민정당으로 당적을 옮기자마자 내렸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실질적으로 학교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설립계획승인(내인가)은, 김 씨가 당적을 옮긴 87년 11월 10일보다 두달 전인 87년 9월 5일자로 났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학생들의 항의농성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학교발전계획서를 제출,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경주시청이 단지 학교부지로 책정해 놓은 땅을 이미 확

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학교발전계획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경주시청이 학교부지로 책정해 놓은 땅을 확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다.

일곱째, 「교지, 체육장 설치기준이 122,905평방미터인데 비해, 224,695평방미터를 확보해 101,790평방미터를 초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기준의 반을 조금 넘는 68,879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교지, 체육장의 기준면적이 32,637평방미터인데 비해 54,478평방미터를 확보하여 21,841평방미터를 초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덟째, 「학교측은 학생들의 과격시위로 이교수가 강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강의를 개설하고도 한번도 나타나지 않아 문제삼은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 교수의 과목은 3학년때부터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의 개설조차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홉째, 「관광대학의 88년 3-5월분 교원 봉급지급명세서에는, 7명의 교수 중 유독 이 교수만 장기근속수당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이 순자 교수는 채용은 되어도 강의가 없으므로, 월급이나 더군다나 장기근속 수당이 나간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째, 「은행 대여 장학생 2명을 포함하여 학과당 4명에 불과한 장학금 수혜상황이 아쉬웠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각종 장학금 수혜자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열한째, 「지난 4.26총선때는 김이사장의 직접지시로 교사들이 경주 시내 유지들의 현황과약을 해야 했으며」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김이사장이 지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두째, 「지난 5월 도교위 감사에서 발각된 비리사실만 해도, 유령 교직원 존재, 교직원 봉급과 실험실습비 등 육성회비 횡령, 학교차량과 기사의 당무이용, 부정입학을 통한 기부금 횡령 등」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결과도 유령 교직원이나 공금 및 기부금 횡령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셋째, 「교장에게 정직 3개월, 교무과장 정직 1개월, 서무주사 감봉 3개월, 교감 경고 등으로 끝났으며, 그나마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내용은 왜곡된 것이며,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89년 8월 7일자로 조치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정보도신청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별지 2〉 정정보도문

본보 1989년 9월호 84쪽에서 87쪽에 걸쳐 보도된, 『비리의 복마전 한국관광대학』 제하의 기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원석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므로 이를 게재합니다.

첫째, 「김 의원이 간사로 소속돼 있는 국회 문공위에서도 이 문제를 몇차례 거론한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김의원과 민정당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이 문공위 소속 야당의원 측근의 말이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김 의원이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으로 재임시 문공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특히 「김의원과 민정당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운운은 사실무근이다.

둘째, 「이 3개 학교가 모두 비리와 부실운영으로 뒤엉켜 연일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학내문제등으로 몇차례의 소요가 있었을 뿐이다.

셋째, 「특히 한국관광대학의 경우, 대학설치 기준령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과 교원 확보는 물론, 강의실 한칸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 경주전문대의 교실 3개를 빌어 강의를 시작해」부분은 과장된 표현이며 88년 제1학기에 이미 정규교실 5실등과 학장 포함 7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였다.

넷째,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조건에 맞게 개선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 학생들은 건축중인 교실에서 망치소리를 들으며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며 건물 3개동을 신축하였으며 교수도 추가로 확보하였다.

다섯째, 「6년 동안 끌어오던 설립인가 신청을 김 씨가 국민당에서 민정당으로 당적을 옮기자마자 내렸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실질적으로 학교설립인가 효력이 발생하는 설립계획승인(내인가)은 김 씨가 당적을 옮긴 87년 11월 10일보다 두달 전인 87년 9월 5일자로 났다.

여섯째, 「학생들의 항의농성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학교발전계획서를 제출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경주시청이 단지 학교부지로 책정해 놓은 땅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학교발전계획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경주시청이 학교부지로 책정해 놓은 땅을 확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도 없다.

일곱째, 「교지, 체육장 설치기준이 122,905평방미터인데 비해, 224,695평방미터를

확보해 101,790평방미터를 초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기준의 반을 조금 넘는 68,879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교지, 체육장의 법정 기준면적이 32,637평방미터인데 비해, 54,478평방미터를 확보하여 21,841평방미터를 초과 확보하고 있다.

여덟째, 「학교측은 학생들의 과격시위로 이교수가 강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강의를 개설하고도 한번도 나타나지 않아 문제삼은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 교수의 과목은 3학년때부터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의 개설조차 한 사실이 없다.

아홉째, 「관광대학의 88년 3~5월분 교원봉급지급명세서에는 7명의 교수 중 유독 이 교수만 장기근속수당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 교수는 채용은 되어도 강의가 없으므로 월급이나 장기근속 수당이 나간 일이 전혀 없다.

열째, 「은행대여 장학생 2명을 포함하여 학과당 4명에 불과한 장학금 수혜상황이 아쉬웠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89년 제1학기의 각종 장학금 수혜자가 총 87명에 이르는 등 각종 장학금 수혜자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

열한째, 「지난 4.26총선때는 김이사장의 직접지시로 교사들이 경주 시내 유지들의 현황과악을 해야 했으며」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김이사장이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

열두째, 「지난 5월 도교위 감사에서 발각된 비리사실만 해도, 유령 교직원 존재 교직원봉급과 실험실습비 등 육성회비 횡령, 학교차량과 기사의 당무이용, 부정입학을 통한 기부금 횡령 등」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결과도 유령교직원이나 공금 및 기부금 횡령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셋째, 「교장에게 정직 3개월, 교무과장 정직 1개월, 서무주사 감봉 3개월, 교감 경고 등으로 끝났으며, 그나마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89년 8월 7일자로 조치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정보도 신청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